

월간

재정포럼 9

월호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2008년 9월호 제147호

현안분석 ·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박노욱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원종학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김지영

특집 · 2008 세제개편(안) · 2008년 세제개편(안)의 주요내용 및 평가

정책흐름 · 2008년 세제개편(안) 외

재정통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외

CONTENTS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권두칼럼

02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로 정권 정체성 찾아야 · 추창근

현안분석

06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 박노욱

19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 원종학

35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 김지영

특집 · 2008 세제개편(안)

51 2008년 세제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 최영록

57 2008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 손원익

주요국의 조세동향

63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외

정책흐름

71 2008년 세제개편(안)

104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105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107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108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 시행

재정통계

11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 외

이슈 & 포커스

122 부동산 투기 잡는 데 세금 쓰면 곤란 외

규제철폐,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로 정권 정체성 찾아야



추창근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

이명박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이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60년의 비전으로 제시한 데 이어 경기회복과 민생안정, 국가균형발전 등을 겨냥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택공급 기반 확충과 거래 활성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신도시 건설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은 부동산 대책을 비롯하여, 총 1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감세(減稅)와 함께 세제를 저세율 구조로 전환하고 부동산세와 상속세를 축소키로 한 세제개편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경제 및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등의 다양한 과제를 개선하겠다는 생활공감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광역경제권 개발에 주안점을 둔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와 권역별 선도산업 육성 계획, 녹색성장의 기반 조성을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 전략도 내놨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겨우 제자리를 찾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감도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여망을 업고 기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지만, 지난 6개월은 국정 난맥과 사회 혼란만 부각됐던 시기였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외교·대북관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진 게 없었다. 한 마디로 '잃어버린 6개월'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정권 출범 초기의 내각 및 청와대 참모진 인사 실패와 미국 쇠고기 파동 등에 따른 정부의 신뢰 상실로 국정 리더십이 크게 손상된 탓이다. 결국 개혁 과제들은 뒤로 밀려나고,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대외 여건마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물가 급등과 성장 정체로 민생 또한 고통만 가중되고 만 것이다.

지금 상황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다. 국정을 몇달째 마비시켰던 ‘촛불정국’에서 일단 벗어났고, 한때 배럴당 140달러선을 넘나들던 국제 유가가 100달러까지 내려오는 등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한풀 꺾였다. 미국 금융시장이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메릴린치 인수 등으로 일대 혼란에 빠지면서 우리 금융시장도 크게 충격을 받는 모습이지만, 이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스스로 국정의 전환점으로 삼아 경제 살리기 드라이브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가장 시급한 일이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산적인 개혁 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살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갖추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 핵심이 감세와 함께 공기업 개혁, 규제 혁파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처음부터 경제 살리기를 위한 아젠다로 내건 ‘MB노믹스’의 상징이기도 하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및 수도권 규제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새로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 등의 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그럼에도 아직은 성과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과제들이다.

그 이유로 지금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환경이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경제 둔화와 함께 중국경제의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정부의 경제운용을 제약하고 있는 점을 우선 손꼽을 수 있다. 공기업 개혁에 대한 노조 등 이해집단의 반발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완화, 감세 등 개혁 정책에 대한 국론이 분열돼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자칫 개혁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게다가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채 안팎으로 최악의 여건에 봉착해 선진국 진입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 또한 쉽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물가 급등, 성장률 추락, 경상수지 적자, 실업자 증가 등 경제 전반은 이미 속병이 깊어져 있다. 어디 그뿐인가. 60년전 온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었던 시대착오적 좌우 대립과 분열상이 지금 되살아난 모습이고, 지난 몇달 촛불시위에서 드러났듯 법과 질서는 실종됐다.

그런 만큼 보다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발휘해 이들 걸림돌을 극복하

.....
 가장 시급한 일이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산적인 개혁 과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과 기업가 정신을 살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기반을 갖추고, 서민경제의 고통을 해소하는 일이 최우선적인 과제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시급한 것은 그동안의 ‘모방과 추격’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창의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샌드위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전 모델과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지 않으면 안된다.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그 전제조건이다.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부(國富)의 증대, 법·질서가 지켜지는 공정한 사회가 전제되지 않은 선진화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그래서 당장 서둘러야 할 것은 공기업 개혁과 규제철폐의 속도를 더 높이는 일이다. 감세와 규제개혁을 통한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공기업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正體性)을 가름하는 사안이다. 이미 약속했던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를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물리고, 공기업 민영화는 개념이 불분명한 ‘공기업 선진화’로 이름을 바꾼 채 온갖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각 소관부처에 맡겨 알아서 추진하라는 식은 애초 국민이 기대한 것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규제 개혁만 하더라도 그 핵심인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가 지방의 반발에 밀려 아직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패러다임 구축을 위해 시급한 것은 그동안의 ‘모방과 추격’ 전략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음을 인식하고, 창의적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샌드위치적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발전모델과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일이다. MB노믹스의 핵심 또한 성장의 핵심주체인 기업의 활력과 기업가 정신을 회복해 투자활성화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근거도 분명치 않은 ‘9월 위기설’에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빠진 것도, 따지고 보면 특히 경제분야의 국정운영 컨트롤 타워의 기능 부재(不在)에 기인한 탓이 크다. 특히 환율정책을 놓고 당국자들이 서로 엇갈리는 소리를 내는 등 혼선을 빚은 데서 비롯된 신뢰의 상실에 따른 문제에 다름아니라는 얘기가. 해법을 찾기 위해 경제정책을 책임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갈 경제부총리 제도의 부활이라는 시스템적인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P**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안분석 |

■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원종학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김지영 ·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예결산 분석

- 우리나라 성과관리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연계 문제를 중심으로 -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npark@kipf.re.kr)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또는 사업비 10% 절감을 추진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I. 들어가는 말

2008년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 절감이 중요한 국가의 과제로 부각되었다. 예산 절감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는 민영화나 민자사업을 통해 일시적으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 지출의 일률적인 절감 방안을 실행함으로써 재정의 여유를 확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단기간에 일시적으로 정부의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감 방안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추후에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정부 지출의 효과적인 절감 방식 중 하나는 예산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사업은 중단하는 것이다.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구조조정을 실행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경상경비 또는 사업비 10% 절감을 추진하는 것보다 의미 있게 실질적으로 정부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부작용이 작고 효과적인 방식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지려면, 일률적인 경상경비 절감이나 사업비 절감의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효과가 있는 사업과 없는 사업을 구분해 내고, 필요 없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캐나다의 예를 들면, 1990년대 재정적자 탈피를 위해 재량적 지출의 일률적 삭감 방식을 시도했으나, 최근에는 성과정보를 활용하여 예산 삭감을 시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예산사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예산 편성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8년여가 지났다. 외국의 경우, 1960년대 미국에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이 시도된 이후 일부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초창기 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한동안 정체기를 가진 이후, 1980년대 중후반부터 다시 전 세계적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시작된 계기는 뉴질랜드 정부의 재정 개혁이다. 뉴질랜드의 재정개혁을 계기로 신공공경영(New Public Management)이라는 흐름 아래 OECD국가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이미 경험이 있는 국가도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실행한 경험이 있는 캐나다의 경우,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실효성이 미약한 성과관리제도를 개선하고, 매년 25% 정도의 주요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제도를 2007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외에,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새롭게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등지에서도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는 OECD, World Bank 등의 국제기구의 활동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최근 2년간을 살펴보더라도, 프랑스, 미국, 중국, 브라질, 멕시코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개최되었다.

한 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던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왜 다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듯이 채택되고 있는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거역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국가에 있어서는 재정 여건의 악화와 시민 사회에서의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에 대해 거세지는 비판이 이런 외부적 압력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런 외부 환경의 변화에 의해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유행처럼 도입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의문은 남아 있다. 과연 이번에는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예산 배분과 예산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제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초창기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지금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새로이 도입되고 있는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정부의 기본적인 재정운영의 수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다시 전 세계적으로 경쟁하듯이 채택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가 거역하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정보를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첫째,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에 대해 이전보다는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과정이며 성과정보는 많은 변수 중의 하나라는 현실에 대한 인정이 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므로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목표를 성과정보와 예산 편성의 연계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다. 성과정보를 예산사업의 운용을 위해 필요한 일종의 하부 구조로 보고, 성과정보의 활용을 통해 예산 배분뿐 아니라 사업 운영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을 제도의 성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OMB의 경우, 부시 행정부의 대통령 5대 경영과제(President Management Agenda) 중의 하나인 예산과 성과의 연계(Budget and Performance Integration)를 최근에는 예산사업의 성과개선(Program Improvement)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예산사업의 성과개선을 위한 담당자(Program Improvement Officer)를 각 부처에 두고 정기적으로 사업이 성과개선을 위해 부처 내부의 의사 소통과 대안 모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통하여 평가 결과의 활용을 통한 예산 배분뿐 아니라 정부의 예산사업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과 활용을 위해 필요한 IT를 비롯한 지원 기반의 비용이 저렴해지고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 있는 성과정보를 생산하면 작은 비용으로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정보이다.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는 성과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성과정보를 국가의 중요한 하부 구조의 하나로 인식하여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면 성과정보의 기획과 생산과정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의미 있는 성과정보의 생산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점검을 해보고자 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목적이 사업 자체의 개선이라는 목적을 포함하지만,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정보를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 활용하는 것이다.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성과정보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유용한 정보가 생산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에서 생산되는 성과정보에 대해 점검해 보고자 한다. 포괄적으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를 하기 위한 하부 구조는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므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현행 성과관리 예산제도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II. 성과관리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연계 문제

우리나라의 성과관리 예산제도는 중앙 부처에서 예산당국의 주도로 2000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중심으로 부처 전체 예산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그리고 선정된 소수의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평가를 실시하는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다. 예산당국 중심의 이러한 성과관리제도 이외에도 다양한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예산당국 내에서도 균형발전영향평가와 기금평가가 있으며,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구) 과학기술부의 R&D 평가, (구) 교육부의 HRD 평가, (구) 정보통신부의 정보화 평가 등이 있다. 이러한 평가들은 평가 대상에서 중복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평가 대상의 중복은 아니지만, 정부의 예산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기존의 일반 예산사업 평가와 다른 별도의 평가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가능한 제도들이다. 2008년 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을 제외하고는, 다른 평가제도가 일반 예산사업의 평가제도와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평가제도의 일원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성과관리제도 중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정보 문제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성과목표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제도로서 해당 부처나 기관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예산당국과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상징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으므로 현황 파악과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일종의 신호등 체계로서 부처 전체의 전략체계와 연계된 예산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수단이므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성과정보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성과목표관리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부처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와 예산당국이 예산 편성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와의 일관성 문

성과목표관리제도는 일종의 신호등 체계로서 부처 전체의 전략체계와 연계된 예산사업의 성과를 점검하는 수단이므로, 예산사업의 성과관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의
 목적은 정책의 목적과 예산을
 연계시켜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제이다. 예산편성의 근간이 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자체가 성과계획서 체계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계획서의 성과 정보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활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의 성과정보 자체가 프로그램의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지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의 성과정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성과정보보다는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성과계획서의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 체계를 일치시키고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정보를 프로그램의 성과정보로 활용하더라도, 여전히 성과정보의 향상을 위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 프로그램 단위의 비용 정보가 적절히 생산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계획서 체계를 일치시킨다고 가정해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성과정보로서의 한계가 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예산 배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비용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예산 사업의 비용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성과계획체계와 프로그램 체계의 일관성 문제

이상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는 성과계획서상에 분류된 예산사업 체계(전략목표, 성과목표, 관리과제)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일치하는가의 문제와 양 체계가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의 문제이다. 성과계획서는 각 부처가 향후 5년간에 달성할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의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존의 품목별 예산체계가 지출의 성질별로 정부 예산을 분류하던 것을, 지출의 목적별로 재분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르면, 부처 수준의 예산항목이 부문, 프로그램, 그리고 단위사업의 순으로 계층적으로 분류된다.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의 목적은 정책의 목적과 예산을 연계시켜 특정 정책목적을 위하여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성과관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적인 하부 구조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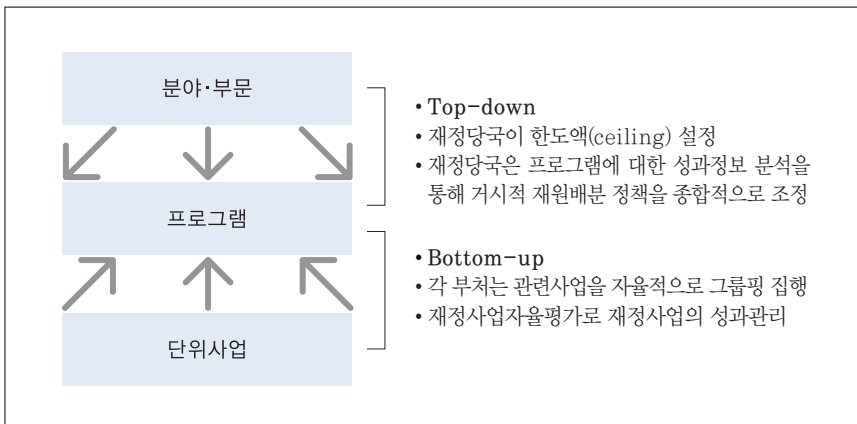
[그림 1]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에서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설정 방식을 요약한 것이다. 프로그램 예산에서 프로그램이 예산 편성과 성과관리의 기본 단위의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그램 구성의 원칙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



되는 관련 사업들을 묶어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 재정운용계획과 단기 예산 편성의 기본적 틀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성과정보와 예산 편성의 연계를 위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본적으로 한 부문에 대해 하나의 소관 부처가 있고, 한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 내의 한 실 또는 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1]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의 설정방식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원칙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다.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성과관리, 책임성 제고 등의 목적에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본적인 원칙만이 제시될 뿐이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본적으로 한 부문에 대해 하나의 소관 부처가 있고, 한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 내의 한 실 또는 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구성되었다¹⁾. 이러한 구도는 책임성 강화의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존의 정부 조직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구성되었다.

이상적인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정부 차원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기존의 조직 구조가 적정인지에 대한 판단을 기반으로 출발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조직 구조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구성되고 기존의 정부 조직이 그에 따라 재편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각 부처의 임무와 역할이 재평가 되고, 각 부처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조직과 사업을 재편하는 과정이 수반되어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주어진 조직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면,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전략계획은 3년 또는 5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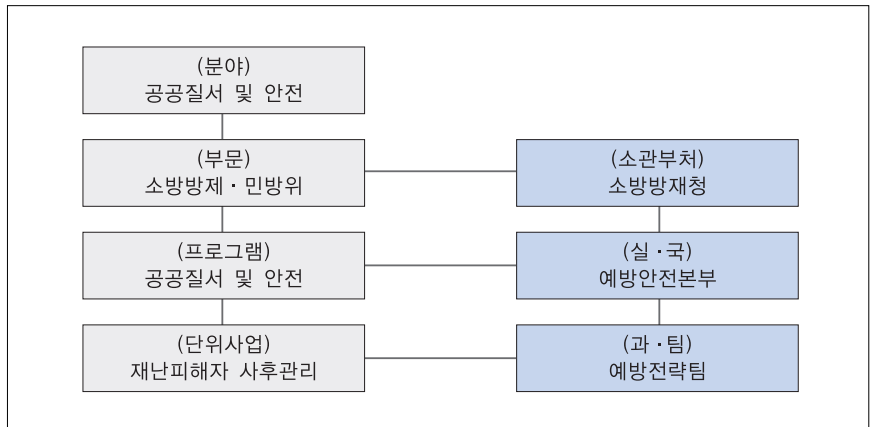
1) 2008년 신정부의 부처의 조정에 따라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고 있다.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하에서의 예산 편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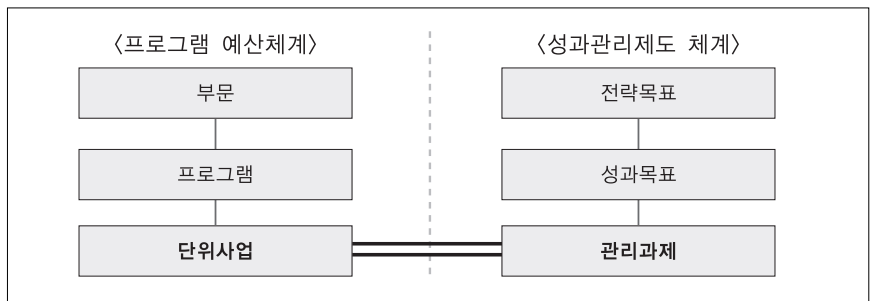
의 주기로 수정되므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정부 조직도 그 주기에 맞추어 수정의 필요가 발생하면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²⁾. [그림 2]는 소방방재청의 예를 들어 부문, 프로그램, 그리고 단위사업과 조직과의 연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2]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조직체계 사례 : 소방방재청



성과관리 예산제도에 의해 생산되는 정보가 프로그램 예산체계하에서의 예산 편성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바탕으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체계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목표체계가 별도의 추진 주체에 의해 수립되는 과정에서, 서로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림 3]에서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상의 연계 문제를 도식화하고 있다. 2008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에는 성과계획서상의 관리과제와 프로그램 예산서의 단위사업이 일치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즉 하부 단위인 관리과제와 단위사업은 일치하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림 3]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제도 체계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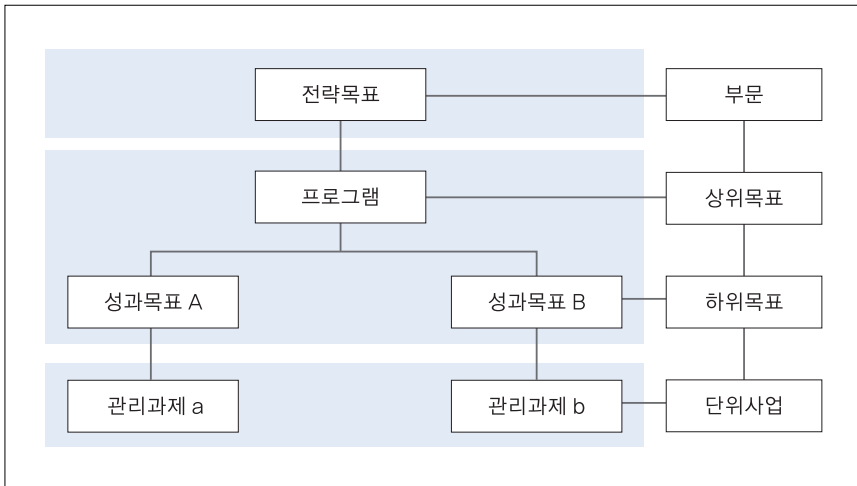


2) 정치적인 주기를 고려하면 새로운 행정부의 구성과 함께 이런 전략적인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나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간의 연계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프로그램과 성과목표가 일대일로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프로그램의 목적이 성과계획서상의 어떤 관리과제나 성과목표를 통해 달성되는지는 파악될 수 있도록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 4]와 같이 하나의 프로그램 하부에 복수의 성과목표가 포함될 수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검토해 보면, 프로그램 예산의 단위사업이 성과계획서상의 복수의 전략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4]와 같이 성과목표 A와 성과목표 B가 동일한 전략목표하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상이한 전략 목표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경우, 프로그램이 하나 이상의 정책 목표와 연계되어서 프로그램의 성과 달성을 통해 어떤 정책 목표가 달성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체계를 검토해 보면, 프로그램 예산의 단위사업이 성과계획서상의 복수의 전략 목표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4] 프로그램과 성과목표의 연계



그러므로 성과계획서상의 성과목표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아래의 지침을 준수하여 세 가지 방법에 따라 각 부처별로 기존의 성과관리 및 프로그램 체계를 점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 즉 성과목표가 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물이나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된 비용 정보이다.

■ 지침

- 프로그램 예산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점검하여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단위사업 또는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가 있는지의 여부 확인한 후, 재조정
- 프로그램 및 성과목표가 실·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확인한 후,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실·국 단위에 맞게 재조정

【방안 1】: 분할
- 지나치게 포괄적인 프로그램(또는 성과목표)을 분할하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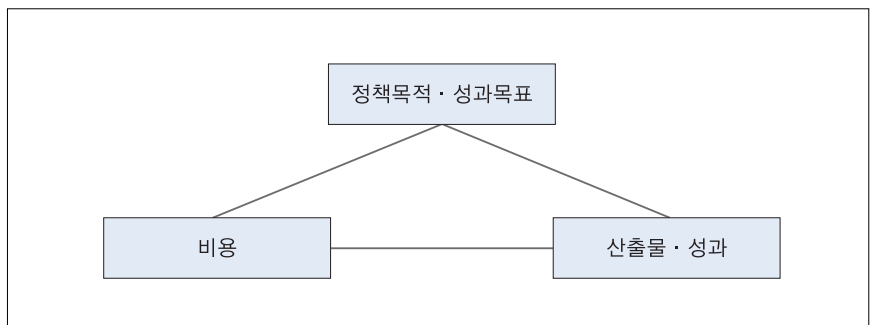
【방안 2】: 통합
- 세분화되어 있는 성과목표(또는 프로그램)를 통합하여 연계

【방안 3】: 분할 및 통합
- 프로그램과 성과목표를 모두 조정(분할 및 통합)하여 연계

2. 성과정보와 비용 정보의 문제

이상과 같이 성과관리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일관성 있게 설정되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성과정보의 문제이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프로그램은 [그림 5]와 같은 세 가지 정보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프로그램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적, 즉 성과목표가 있으며, 성과목표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산출물이나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 그리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된 비용 정보이다. 이 중에서 현행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성과지표와 비용정보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5] 개별 프로그램의 정보





먼저 성과지표의 문제를 살펴보자. 성과관리 체계를 담아내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정보 자체도 아직은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성과목표나 관리과제의 성과를 의미 있게 반영하는 지표 자체도 제대로 개발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으며, 지표의 목표치 설정에도 여전히 근거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필자가 다른 곳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성과정보 문제를 지적하는 데 국한하고자 한다.

현행 프로그램 체계상의 성과정보 문제는 성과정보의 개발 부족이라는 일반적인 문제 외에, 크게 두 가지 유형의 문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예산편성의 주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고 지표가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성과지표와 성과계획서 상의 관리 과제를 대표하는 지표가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성과계획서상의 관리과제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단위사업이 일치하고,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다수의 단위사업/관리과제의 성과를 포괄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관리과제/단위사업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도 상위목표인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리과제/단위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와 상위목표인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동일하다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관리과제/단위사업 활동의 적정성을 상위 목표와 연계하여 평가할 수가 없게 된다. 굳이 프로그램과 관리과제/단위사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자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와 관리과제 수준의 성과지표가 동일하다면, 프로그램을 위한 포괄적인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프로그램의 설정 자체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성과지표가 성과계획서상의 관리과제의 성과지표를 나열하는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이 경우도 역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 자체가 결핍되어서 발생한 문제라고 판단된다.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는 하위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한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하위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과지표를 나열하여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 경우도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하위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관리과제/단위사업의 성

예산편성의
주요 기준이 되는
프로그램의 성과지표 설정 시
성과관리를 염두에 두고
지표가 설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간접비 배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 수준에서 간접비를
배분하고 추후 단위사업
수준에까지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과를 포괄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관리체계를 담고 있는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참조할 사항이 있다면,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를 출발점으로 프로그램의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의 중요한 정보 중의 하나인 비용정보의 문제를 살펴보자.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도입하는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예산을 정책의 목표와 연계시키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비용을 보다 의미 있게 설정하자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논할 때 비용회계가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포함된다. 그뿐 아니라, 성과관리예산제도의 관점에서 볼 때도, 예산 사업 성과정보의 중요 요소 중 하나가 비용 정보이다. 어떠한 비용으로 어떠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가 결합되어야만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에 결과지표가 강조되면서 비용 측면에 대한 논의가 간과되는 측면이 있으나, 예산편성을 하는 의사 결정자의 관점에서는 비용 대비 산출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정보이다. 특정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예산 편성 시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 정보 없이 단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달성되었다는 것 정도의 성과정보만으로는 예산 편성에 활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비용 정보의 문제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에 있어서 간접비 배부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직접 사업비는 비교적 용이하게 비용으로 파악이 되지만, 여러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공통 인건비, 시설비 등의 간접 경비를 어떻게 각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배부할 것인가의 문제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구축의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비용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구축 과정에서 간접비 배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원 경비를 일괄적으로 행정지원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여 묶어놓고 있다. 다시 말해, 간접비 배부를 포기한 것이다.

간접비 배부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 수준에서 간접비를 배분하고 추후 단위사업 수준에까지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일단 프로그램 수준에서라도 점진적으로 간접비를 배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원칙적으로 실·국 단위와 일치하도록 설정되었으므로, 실·국 단위의 자체 인건비나 기본 사업비를 일단 해당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조치를 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획관리실, 총무과 등 지원부서의 경비도 사업부서인 실·국의 프로그램별로 배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의 문제는 간접비 배부의 원칙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기준은, 고정자산 규모, 사업비 규모, 인건비 규모 등이다. 부처의 성격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간접비 배부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간접비 배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비용 문제와 관련한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년도에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을 위해 준비가 진행 중이다.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의 기록을 하는 시점을 현금 출납시점이 아니라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가 발생한 시점으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보다 정확한 비용이 추계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 자체는 또 하나의 큰 논쟁거리이므로,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간단히 주의사항을 언급하고 본고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이상적으로 도입된다면, 정부의 재정 상태와 예산사업의 비용을 보다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나 발생주의 회계는 회계 담당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를 확대시키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회계의 복잡성에 따른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지에 대해 논란을 포함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인해 후발 국가들에게 점진적이고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권하고 있다.

비용정보와 관련하여서는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되면 보다 정확한 비용이 추계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III. 결론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성과관리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연계 문제를 성과정보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이며,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정부의 예산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하는 제도이므로, 상호간의 연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성과정보를 활용한 예산편성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를 위한 기초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양 제도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

이상에서 성과정보의 개선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의 합리성 제고를 논했다면, 마지막으로 성과정보를 활용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성과정보의 수준과 성과정보의 활용은 상호 선순환을 이룰 수도, 악순환을 이룰 수도 있다. 성과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고, 예산사업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한다면 의사결정에



고위 의사결정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활용될 가능성이 높고, 또 실제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면, 사업 담당자의 입장에서 성과정보의 생산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반면에 성과정보가 활용되지 않는다면, 성과정보의 생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의미 없는 성과정보만 생산되고, 그 결과로 성과정보의 수준이 좋아지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다.

성과정보의 수준과 성과정보의 활용 간의 선순환을 창출해 낼 수 중요 요소는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다. 고위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과정보를 활용하면 성과정보의 수준은 향상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면에 고위 의사결정자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과정보보다는 다른 요소들을 더욱 중요시하면 성과정보의 수준이 향상되기 어렵다. 결국 고위 의사결정자가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성과관리 예산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정착과 발전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 또는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정치인과의 관계 설정이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정착과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08년 신정부의 등장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내에서 다양한 정책과 예산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성과정보와 연계되어 추진되고 평가되도록 성과관리 예산제도가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고위 의사결정자의 리더십이 중요한 관건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KIPF



보세판매장제도 개선방안

-사후면세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jweon@kipf.re.kr)

I. 서론

보세판매장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 출국장에 있는 면세매점과 시내면세점, 국내 주재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면세매점에 관한 권고(1960. 6. 16)에서 면세매점은 부정수입의 위험이 크므로 항만 및 공항 이외의 장소에는 설치하지말 것과 면세매점에서는 외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에게만 물품을 판매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에는 국제공항 및 항만 출국장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출국장 면세점은 1962년 김포공항 면세점 개점을 필두로 현재 인천공항을 비롯한 16개의 출국장에 면세점이 설치되어 있으며, 1979년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고 외자지출 유도 및 관광산업 진흥 등을 목적으로 시내면세점이 도입되었다. 이후 시내면세점은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증가하여 한 때는 28개에 달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서울, 부산, 제주의 3지역에 10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내국인 출국자 수 증가, 보세판매장 매출액 2조원 초과 등으로 보세판매장 영업에 대한 유통업계의 관심 증가를 배경으로 서울 및 지방의 대형 호텔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은 국제공항 및 항만 출국장에 있는 출국장 면세점과 시내면세점, 주한 외국공관의 외교관에게 외국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서 외교관 면세매점 등이 있다.



시내면세점은
현재 서울에 6개,
제주와 부산지역에
2개씩 모두 4개가
운영되고 있다.

및 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이 급증하고 있다¹⁾. 그러나 시내 면세점은 보세판매장 설립의 세계적 기준(global standard)라 할 수 있는 WCO의 권고와 배치될 뿐 아니라, 설립 취지가 외국인 쇼핑 편의 도모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국인 수요의 증대를 이유로 시내면세점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면세점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면서 WCO의 권고에도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후면세제도의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우리나라의 면세점 현황, 시내면세점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3절은 사후면세제도의 소개와 그 장단점 대해 설명한다. 제4절은 요약 및 결론이다

II. 보세판매장

1. 개요

보세판매장에는 출국장 면세점, 시내면세점, 외교관 면세점 등이 있음은 이미 설명하였는바, 이 절에서는 이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출국장 면세점은 1962년 11월 1일 김포공항 면세점 개점을 필두로 하여 현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대구공항, 청주국제공항에서 공항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부산 국제여객부두 외에 평택, 인천, 군산, 속초 지역의 항구에서도 한국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외교관 면세점은 서울에 한 곳이 있다.

시내면세점은 서울의 경우 1979년 호텔롯데 및 동화면세점을 시작으로 1970년대 2개, 1980년대 20개, 1990년대 1개, 2000년대 1개의 시내면세점이 신규 개점되었으나 지방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해 현재 총 6개 면세점이 운영중이다.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는 1980년대 제주, 경주, 부산 지역에 6개의 면세점이 설립되었고, 서울의 남문 면세점이 부산으로 이전 개점하였으며 그 후 1995년과 2000년에 부산과 제주에 2개의 면세점이 추가로 설립되었으나, 현재 대부분이 폐업되고 제주와 부산 지역에 2개씩 총 4개의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2008년 현재 영업중인 보세판매장 현황을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2>는 우리나라 면세점 제도의 종류 및 관련법령, 이용자격, 구매한도, 면세 종류 등을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종합보세구역 보세판매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제외

1) 관세청에 따르면 2004~2007년 사이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상담 건수는 33건에 달하고 있다.

〈표 1〉 전국 보세판매장 현황

(2007년 9월 현재)

관할세관	면세점명	위치
서울	(주)동화면세점 보세판매장	시내
서울	(주)호텔롯데 면세점본점	시내
서울	(주)호텔신라 보세판매장	시내
서울	롯데월드 면세점	시내
서울	AK코엑스 면세점	시내
서울	(주)위커희 보세판매장	시내
서울	(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세판매장	외교관
평택	한국관광공사 평택항 면세점	출국장
인천	한국관광공사 인천 제1영업소	출국장
인천	한국관광공사 인천 제2영업소	출국장
부산	한국관광공사 국제여행객부두	출국장
부산	롯데부산 보세판매장	시내
용당	(주)파라다이스 글로벌 면세점	시내
인천공항	DFS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인천공항	롯데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인천공항	한국관광공사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인천공항	디피엔에프(주) 인천공항 면세점	출국장
김포	디피엔에프(주) 김포공항	출국장
군산	한국관광공사 군산항 면세점	출국장
목포	한국관광공사 목포항 면세점	출국장
제주	롯데 제주공항 면세점	출국장
제주	(주)호텔롯데 제주 면세점	시내
제주	(주)호텔신라 신제주 면세점	시내
속초	한국관광공사 속초항 출국장면세점	출국장
대구	파라다이스 대구공항 출국장면세점	출국장
김해	한국관광공사 김해영업소	출국장
청주	한국관광공사 청주국제공항 면세점	출국장
합계	총27개(시내: 10개, 출국장 16개, 외교관: 1개)	

외국인 관광객
면세판매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전면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고는 모두 사전면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국장 및 시내면세점에 더하여 우리나라에 있는 특이한 제도로 지정면세점이 있다. 이는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에 의해 2002년 12월 24일 제주공항 및 제주항(2개)에 설치된 것으로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다.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주체이며 술, 담배, 화장품 등 16개 품목을 취급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출항하는 19세 이상의 내·외국인이다. 지정면세점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보세판매장과 동일하나, 근거법이나 지정권자 등이 보세판매장과 달라 보세판매장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²⁾.

2) 지정면세점의 역할 및 기능, 면세점 제도로서의 존재 형태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기로 한다.



지정면세점의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보세판매장과 동일하나,
근거법이나 지정권자 등이
보세판매장과 달라
보세판매장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표 2〉 우리나라 면세점제도

종 류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판매사업장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소	지정면세점
관련 법령	관세법 제196조	관세법 제199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1항 내지 제4항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례규정(大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바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의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제주특별자치도여행 객에 대한 면세점 특 례규정(大令)
지정 (특허)	세관장	세관장	세무서장	시·도지사	제주세관장
이용 자격	출국인, 환승객, 외교관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외국인관광객, 출국내국인 (*06. 7. 1시행)	19세 이상 & 제주도 여행객 (제주도민 포함)
구매 한도	외국인: 제한없음 내국인: USD 30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회 판매가 5만원 미만시 비적용)	제한 없음	1회 40만원, 연간 4회
판매 조건	출국인: 외국 반출 외교관: 외교관 사용	외국 반출	외국 반출	외국인: 외국인 사용 내국인: 외국 반출	제주도의 지역 반출
판매 가격	세전가격	세포함가격	세포함가격	세전가격	세전가격
면세 종류	관세, 내국세, 지방세	관세, 내국세, 지방세	부가가치세(영세율), 특별소비세(면세)	부가가치세(영세율)	관세, 내국세, 지방세
면세 시기	판매시점	국외반출시점	국외반출시점	판매시점	판매시점
제세 환급 (영세 율)	보세판매장 반입시	세관장의 국외반출 확인 시	세관장의 국외반출 확인시	외국인 사용 (국내사용 포함) *내국인은 세관장의 국외반출 확인시	지정면세점 반입시
설치 현황 (*06)	27	0	2,006	118	3

2. 매출액

1999년 이후 국내 보세판매장의 매출액 규모 및 증가율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1999년 11억 4,857만달러였던 매출액은 2006년 23억 4,655억달러로 7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매출액 증가율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 9.11테러,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발병 등으로 인하여 한국 방문객 수 및 내국인 해외여행이 감소한 시기의 매출액 증가율은 미미하거나 감소한 반면,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내국인 해외여행 증가세와 더불어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허용(2004. 11. 1), 내국인 구매한도 3,000달러로 상향조정(2006. 1. 1) 등의 조치에 힘입어 2005년에는 면세점 매출액이 최초로 2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06년에는 전년대비 약 16%가 증가한 23억 4,655만달러의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출국일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구비해놓고 정기세일을 실시하는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출국장면세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매출액	1,148,572	1,399,034	1,398,516	1,430,843	1,468,289	1,673,514	2,022,999	2,346,553	1,224,221
증가율		21.81	-0.04	2.31	2.62	13.98	20.88	15.99	

자료: 관세청

면세점 매출을 면세점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출국일정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쇼핑이 가능하며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구비해놓고 정기세일을 실시하는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출국장면세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출국장면세점의 매출액 증가속도가 시내면세점보다 빨라 이들 간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표 4〉 면세점 유형별 매출액 현황

(단위: 천달러,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외교관	791	859	774	1,103	1,270	1,107	1,221	1,333	608
	(0.07)	(0.06)	(0.06)	(0.08)	(0.09)	(0.07)	(0.06)	(0.06)	(0.05)
시내	920,697	1,018,119	971,528	911,366	911,126	982,180	1,147,503	1,289,799	658,543
	(80.16)	(72.77)	(69.47)	(63.69)	(62.05)	(58.69)	(56.72)	(54.97)	(53.79)
출국장	227,084	380,056	426,214	518,374	555,893	690,228	874,276	1,055,421	565,069
	(19.77)	(27.17)	(30.48)	(36.23)	(37.86)	(41.24)	(43.22)	(44.98)	(46.16)
합계	1,148,572	1,399,034	1,398,516	1,430,843	1,468,289	1,673,514	2,022,999	2,346,553	1,224,221

주: () 안은 각 유형별로 매출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관세청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내국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기별 매출액 변동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면세점 매출액은 해외여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이 경우 면세점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줄어서인지 아니면 내국인 출국자가 감소하여 매출액이 변화하였는지 국적별 면세점 이용객 및 구입액을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면세점 전체 매출액의 내/외국인별 구매 현황을 살펴보면(〈표 5〉), 총 구매자 중 내국인 구매자의 비중은 1999년 35.4%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6월 현재 7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6월 기준 1인당 평균 구매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의 경우 1999년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110달러에 이르고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1999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246달러에 머물고 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여행은 비약적인 증가세를 나타내 내국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5〉 내/외국인 구매 현황

	내국인			외국인			합계	
	구매자 (천명)	구매액 (천달러)	평균 구매액 (달러)	구매자 (천명)	구매액 (천달러)	평균 구매액 (달러)	총 구매자 (천명)	총 구매액 (천달러)
1999	2,182	126,731	58	3,973	1,021,841	257	6,155	1,148,572
2000	3,567	200,776	56	5,916	1,198,258	203	9,484	1,399,034
2001	4,367	373,227	85	5,644	1,025,289	182	10,011	1,398,516
2002	5,939	565,828	95	4,791	865,015	181	10,730	1,430,843
2003	6,949	707,245	102	3,314	761,044	230	10,263	1,468,289
2004	9,339	812,803	87	4,348	860,712	198	13,687	1,673,514
2005	11,865	1,142,017	96	3,876	880,982	227	15,741	2,022,999
2006	14,438	1,562,201	108	3,183	784,352	246	17,620	2,346,553
2007.6	7,835	858,140	110	1,407	366,080	260	9,242	1,224,221

자료: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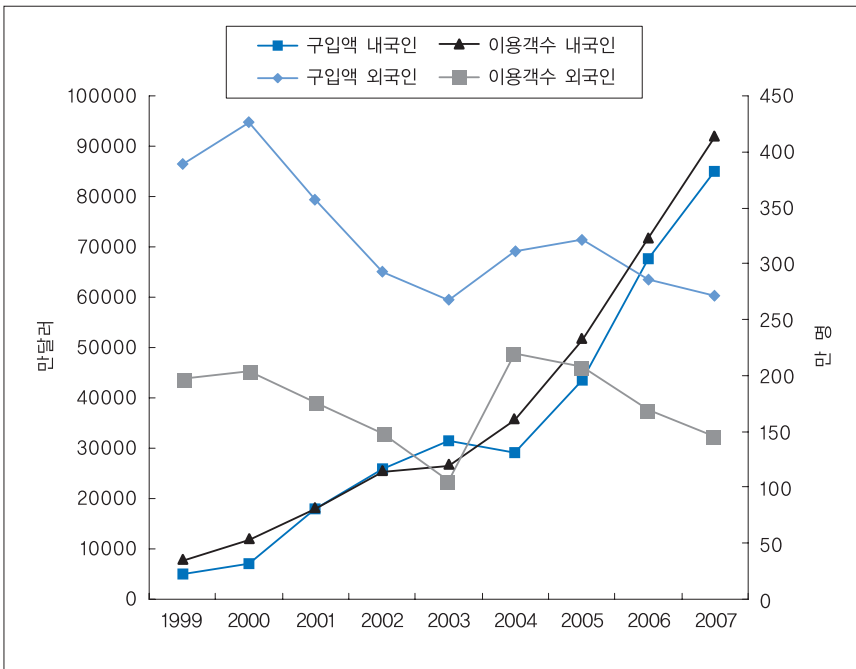
3. 보세판매장 이용 현황

우리나라의 보세판매장의 전반적인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여기서는 보세판매장 중 시내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을 중심

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시내면세점 이용 현황

[그림 1] 국적별 시내면세점 이용객 및 구입금액



내국인 이용자 수 및 구입총액은 19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이후는 내국인 이용자 수가 외국인 이용자 수를 상회하고 있다.

외국인 이용객 수는 (오른쪽 눈금) 1999년에서 2003년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2004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05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구입총액은 외국인 이용자 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한편, 내국인 이용자 수 및 구입총액은 199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2003년 이후는 내국인 이용자 수가 외국인 이용자 수를 상회하고 있으며³⁾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도 내국인 이용자 수가 외국인 이용자 수보다 많아질 것이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입자 수의 차이를 반영하여 2006년에는 내국인의 구입총액이 외국인의 구입총액을 상회하였으며, 구입총액 역시 앞으로는 내국인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로부터 2004년 이후는 시내면세점의 주 고객이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6〉은 외국인 입국자, 내국인 출국자 가운데 어느 정도의 비율로 시내면

3) 2004년은 제외



내국인 출국자가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4년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어,
내국인의 시내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점을 이용하는가를 계산한 결과이다.

〈표 6〉 시내면세점 이용률

(단위: 명, %)

	외국인 입국자수	내국인 출국자수	외국인 이용자 수	이용률	내국인 이용자 수	이용률
1999	4,659,785	4,341,546	1,970,951	0.42	343,479	0.08
2000	5,321,792	5,508,242	2,037,333	0.38	533,615	0.10
2001	5,147,204	6,084,476	1,756,662	0.34	812,953	0.13
2002	5,347,468	7,123,407	1,488,100	0.28	1,137,337	0.16
2003	4,752,762	7,086,133	1,063,658	0.22	1,188,689	0.17
2004	5,818,138	8,825,585	2,195,634	0.38	1,600,329	0.18
2005	6,022,752	10,080,143	2,072,761	0.34	2,322,408	0.23
2006*	6,155,047	11,609,879	1,690,665	0.27	3,205,683	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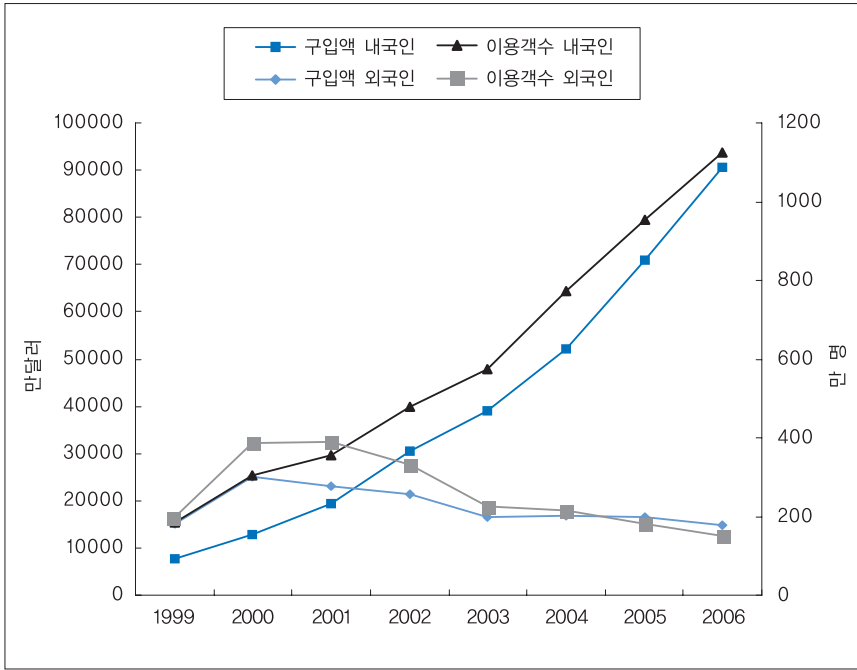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 이용률은 1999년 42% 이후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2004년, 2005년 증가 후 다시 감소하여 2006년에는 2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2005년에 외국인의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한류 붐을 타고 일본인 입국자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내국인 출국자가 시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1999년 8%에서 2006년에는 28%로 7년 사이에 약 20%포인트 증가하였으며, 2004년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증가하고 있어, 내국인의 시내면세점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출국장 면세점 이용 현황

출국장 이용자 수 및 금액의 추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경우 2000년을 정점으로 구입 총액, 구입자 수 모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은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수, 구입 총액 모두 2002년 이후는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는 출국장 면세점의 주 고객이 내국인임을 확연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2005년까지 외국인의 구입액이 내국인에 비해 많았던 시내면세점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 국적별 출국장 면세점 이용객 및 구입금액



출국장 면세점의
이용자 수, 구입총액 모두
2002년 이후는 내국인이
외국인을 상회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시내면세점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국장 면세점 이용률을 계산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출국장 면세점 이용률

(단위: 명, %)

	외국인 입국자수	내국인 출국자수	외국인 이용자 수	이용률	내국인 이용자 수	이용률
1999	4,659,785	4,341,546	1,999,617	0.43	1,838,498	0.42
2000	5,321,792	5,508,242	3,876,893	0.73	3,033,560	0.55
2001	5,147,204	6,084,476	3,885,460	0.75	3,554,367	0.58
2002	5,347,468	7,123,407	3,301,363	0.62	4,801,315	0.67
2003	4,752,762	7,086,133	2,248,075	0.47	5,760,099	0.81
2004	5,818,138	8,825,585	2,150,733	0.37	7,738,580	0.88
2005	6,022,752	10,080,143	1,801,457	0.30	9,542,445	0.95
2006*	6,155,047	11,609,879	1,489,907	0.24	11,231,825	0.97



당초 시내면세점에
기대하였던 역할의 축소는
시내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외국인 입국자가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율은 2001년의 75%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의 경우 입국자의 24%만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내국인 출국자의 경우 1999년 42% 수준이었던 출국장 면세점 이용자가 2006년에는 97%로 상승한 것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1999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물론 출국장 면세점 이용률은 한 사람이 여러 번 면세점을 이용한 경우도 모두 계산되므로 97%라 하여도 전원이 이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용출국자의 대부분이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한다고 간주하여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시내면세점의 문제점

보세판매장으로서 시내면세점은 1999년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한 이래 2007년 현재 매출액이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면세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내면세점의 주 고객이 내국인이라는 점이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5년 시내면세점의 이용객의 52.8%가 내국인이었으나, 2006년에는 65.6%, 2007년에는 74%로 내국인의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내면세점 도입 당시의 취지였던 외국인 쇼핑 편의라는 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변화에 따른 시내면세점 역할의 변화이다. 시내면세점을 도입할 당시인 1979년 31조 7,319억원이었던 국내총생산은 2007년 901조 1,886억원으로 약 28배 정도 증대되었다. 1979년 당시에는 외국인의 쇼핑 편의를 도모하여 외화획득을 하는 것이 중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나 이미 경제 규모가 당시에 비해 30배 정도 커진 현 상황에서 시내면세점을 통해 획득하는 외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당초 시내면세점에 기대하였던 역할의 축소는 시내면세점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셋째, 시내면세점업의 독과점적 영업형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하면 특정 산업의 상위 1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CR1)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상위 3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CR3)이 75% 이상을 차지할 경우 독점적 시장지배자로 규정하고 있다. 아래의 <표 8>은 1999년부터 2007년 6월까지의 매장별 내외국인 이용실적을 이용하여 시내면세점의 집중도를 특정 산업의 상위 1개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CR1) 및 상위 3개



사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CR3)로 계산한 것이다⁴⁾. 시내면세점의 집중도를 보면 CR1은 61~66%, CR3은 80~8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은 1999년 이후 계속하여 독점적 시장 지배자가 존재하는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시내면세점업이 지속적으로 독점적 시장 지배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시내면세점업이 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여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정요건을 갖추고, 시내면세점 신규허가를 충족한 기업만이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므로 경쟁의 원리가 작용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독점적 시장 지배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시내면세점이라는 형태의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에 관한 WCO의 권고에 배치된다.

〈표 8〉 시내면세점 집중도(1999~2007)

연 도	CR1	CR3
1999	52.5	82.2
2000	52.0	80.1
2001	51.5	80.5
2002	52.4	81.1
2003	53.6	80.3
2004	54.3	82.6
2005	54.0	84.5
2006	53.8	84.5
2007.6	55.1	82.5

자료: 관세청

넷째, 시내면세점이라는 형태의 보세판매장은 보세판매장에 관한 WCO의 권고에 배치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내면세점을 보세구역으로 제도화한 우리나라 외에 미국(하와이·괌), 호주, 뉴질랜드, 대만, 태국 정도이며 나머지 나라는 출국장에 한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듯이 시내면세점은 특수한 형태의 보세판매장으로 세계적인 추세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형태이다.

다섯째, 과세의 형평성 문제이다.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품목을 살펴보면,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화장품, 향수, 주류, 담배 등 소모성 물품이 주를 이루는 데 반해 시내면세점에서는 내구소비재인 패션, 피혁제품, 시계, 액세서리 등 유명 브랜드 위주의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내구소비재의 경우 대부분이 국내로

4) 집중도 계산에는 JDC가 운영하는 제주도 면세점 및 보훈복지매장은 제외하였다.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형태이며, 시내면세점을 대신하여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반입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단지 구입하는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상품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은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상의 요인을 고려할 때 보세판매장의 한 형태로서 시내면세점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할 형태이며, 시내면세점을 대신하여 사후면세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Ⅲ. 사후면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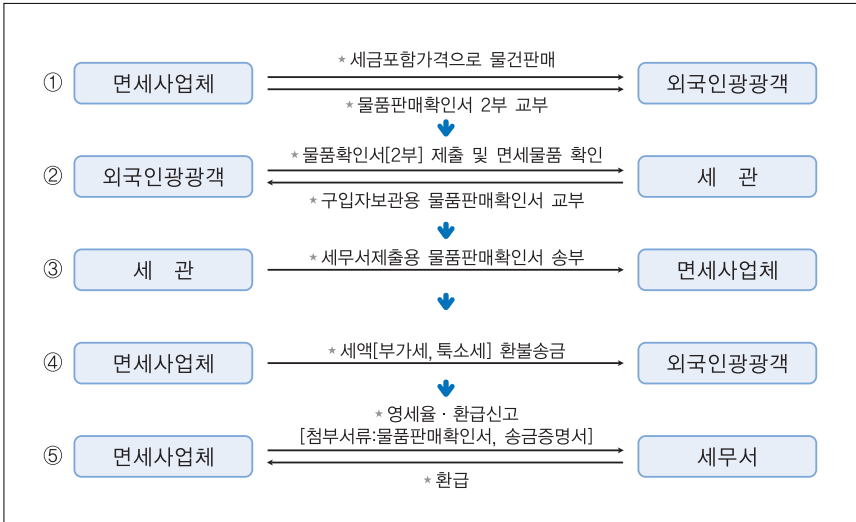
1. 사후면세제도의 형태 및 현황

사후면세제도란 세금이 부과된 상태로 물건을 구입하고, 부과된 세금을 사후에 환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사후면세제도라 하더라도 이용 대상을 외국인에 한정할 것인가 내국인을 포함할 것인가, 환급대상 세금을 내국세에 한정할 것인가 관세를 포함하는가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게 된다.

사후면세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사후면세제도는 그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국내주재 외교관, 군인은 제외)에 한정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한하고 있다. 이러한 사후면세제도는 유럽,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형태이며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세 번째로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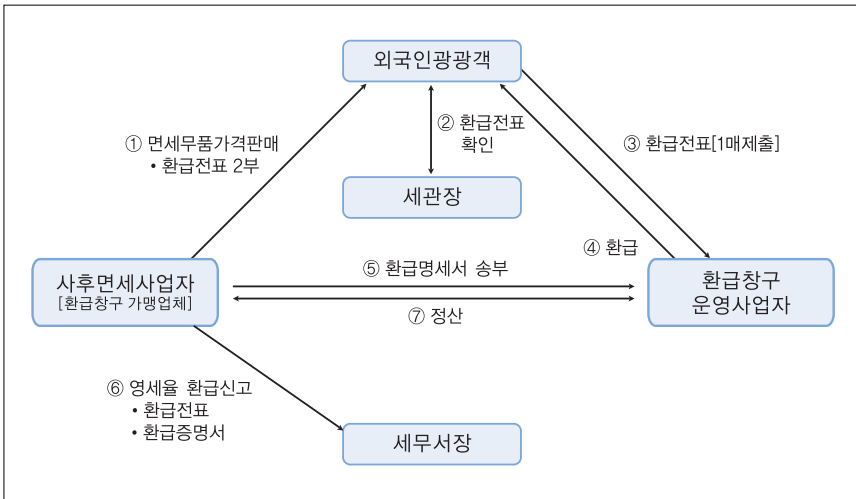
현행 사후면세제도 규정상 환급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송금형식의 환급과 출국장에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두 방식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각각의 환급절차는 [그림 3]와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그림 3] 송금형식의 환급절차



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사후면세제도는
그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에
한정하고 있으며, 환급대상이
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에
한하고 있다.

[그림 4] 출국장에서의 환급절차



〈표 9〉는 1999년 이후의 사후면세점 수, 환급액, 판매장 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999년 56개에 불과했던 사후면세점 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성장하여 2007년 2,006개로 같은 기간 동안 약 40배 정도로 증대하였다. 2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매출액은 약 3.3배 환급액은 4.1배로 증대할 정도



사후면세제도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판매장 형태로
WCO의 권고와도
상반되지 않는다.

로 사후면세점업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표 9〉 사후면세점의 매출액, 환급액, 판매장 수

(단위: 억원, 개)

연 도	매출액	환급액	판매장 수
1999			56
2000	122	9.8	141
2001	192	16.2	761
2002	216	18.5	1095
2003	319	28.9	1321
2004	328	28.2	1876
2005	349	30.5	2126
2006	340	30.3	2006
2007.6	403	40.2	

주 1. 판매장수 : 글로벌리펀드코리아 1,237, 코리아텍스리펀드 769 (국세청)

2. 매출액과 환급액은 글로벌리펀드코리아에 속한 부분만 집계한 것임.

2. 사후면세제도의 장단점

사후면세제도는 대상을 외국인 한정할 것인지 내국인을 포함할 것인지, 환급하는 세금을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와 같은 내국세에 한정할 것인지 관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따라 특징과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시내면세점을 대신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와 같이 외국인에 한정하여 내국세를 환급하는 형태의 사후면세제도를 중심으로 그 장단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단, 현행 사후면세제도의 대상 품목은 국산품에 한하고 있으나 시내면세점을 대체하는 형태로 사후면세제도를 확대한다는 것을 가정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사후면세제도하에서는 해외 브랜드 품목도 취급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사후면세제도의 장점을 살펴보면, 첫째, 사후면세제도는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보세판매장 형태로 WCO의 권고와도 상반되지 않는다. 둘째, 사후면세제도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누구나 손쉽게 진입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시내면세점과는 달리 완전 경쟁에 가까운 형태의 시장구조를 띠게 된다. 따라서 기존의 시내면세점의 경우와 같이 설영허가를 둘러싼 특혜시비 문제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에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환급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후면세제도에 대한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행정비용의 증대이다. 사후면세점이 확대되어 시내면세점을 대체한다고 가정하면 출국장에서의 환급절차가 급증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사전면세제도하에서도 부정유출의 예방 및 적발을 단속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있음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행정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면세품목의 매출액 감소이다. 이는 관세마저도 환급하는 시내면세점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약하며,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면세품의 구입을 기피하게 되어 면세품목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하여 한·EU FTA 등 관세의 벽을 낮추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관세 환급에 따른 가격 경쟁력은 향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면세품목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으나, 현재의 사후면세제도와 시내면세점 이용객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⁵⁾ 사후면세제도를 선호하는 집단의 만족도가 시내면세점을 선호하는 집단의 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9>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사후면세제도의 매출액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고 하겠다.

셋째, 시내면세점의 외화유출방지 효과이다. 이는 사후면세제도는 급증하는 내국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결국 내국인이 해외의 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함에 따라 외화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시내면세점의 수요의 많은 부분은 출국장 면세점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국장 면세점으로서의 대체를 고려할 때, 결국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해외에서 구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해외 브랜드 품목의 내구성 소비재 일부에 한정되어 외화유출방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시내면세점의 관광객 유치효과이다. 이는 시내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나,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실증분석을 한 연구에 따르면⁶⁾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입국자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제도의 매출액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환급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

5) 노해정(2004)

6) 원종학(2007)




현행의 시내면세점을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IV. 결론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자 수 급증을 배경으로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이 증대됨에 따라 유통업계에서 시내면세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규 특히 상담건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시내면세점은 진입규제로 인한 독과점적 시장구조, 내국인 위주의 영업 행태, 과세 형평성의 저해라는 문제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시내면세점을 대체할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후면세제도, 즉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 그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내면세점을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할 경우 환급 절차 증대에 따라 행정 비용이 증대할 수 있다는 점과, 내국인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후면세제도는 보세판매장에 대한 WCO의 입장과 일치한다는 점, 시내면세점 설영허가를 둘러싼 특혜시비를 없앨 수 있다는 점, 면세점 제도에 경쟁이 도입된다는 점 등 많은 장점이 있어 현행의 시내면세점을 사후면세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국세를 환급하는 사후면세제도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시내면세점을 대체하는 방안으로서 사후면세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경우 내국인을 포함하는 경우와 관세도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의 장단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둔다. 

<참고문헌>

노해정, 「면세점 선택속성이 면세점에서의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전·사후면세를 비교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원종학, 『시내보세판매장 특히 여부 타당성 및 신규 특히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7



한국 지방상수도사업의 광역화 논의에 대한 실증 분석: 비용함수 추정과 규모의 경제



김지영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jykim@kipf.re.kr)

I. 서론

현재 지방상수도사업은 164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독점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1개 특별시, 6개 광역시, 77개 시, 79개 군 및 1개의 특별자치도가 직영공기업 또는 일반행정기관의 직영체제 형태로 지방상수도사업을 운영중이다. 상수 공급에 관한 모든 업무와 결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며, 국가는 물 서비스의 공공성을 보호하고 지역 간 격차를 조정하는 재정기능을 수행한다¹⁾. 급수구역이 생활권역별이 아닌 행정기관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의 경우 급수인구가 적고 시설규모가 영세하여 생산원가가 높다. <표 1>에 본 연구에서 고려할 104개 지자체의 급수인구와 급수량에 대한 간략한 통계를 정리하였다²⁾. 시·군 지역 상수도사업자의 평균 급수인구는 광역시의 15%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 급수량 역시 이와 비슷하다. 58개 시 가운데 16개 시와 38개 군 모두에서 급수인구가 10만명 이하로 집계되었다³⁾. 이러한 지자체 간 사업규모의 격차는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의 격차로 이어진다. 상수도 물 생산원가의 전국평균이 997원, 최저원가는 구미시의 413원인 데 반해 영월군의 생산원가는 2,894원에 달한다. 지역 간 재정능력의 차이와 지리적 특성은 특히 도시지역과 산간 지역 사이의 요금 및 물 서비스에 대한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도시지역의 급수율은 90%를 넘고 있지만 급수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는 지역도 존재

급수구역이 생활권역별이 아닌 행정기관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는 점은 높은 생산원가, 관리부실, 과잉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군 단위는 상수도사업소 또는 과·계 단위에서 담당하고 있다. 지방상수도 외에 1개의 광역상수도가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2) 통계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요소 가격이 과대, 과소한 경우 등 공개된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60개 지역은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19개 시와 31개 군이 이에 해당한다.
3) 전체 79개 군단위의 평균급수인구는 2만~3만명이다.



대한상수도학회(2006)는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다. 대체로 급수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생산원가가 높고 수도요금 역시 높게 책정되어 있다. 급수인구의 규모가 지역마다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급수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마다 하나의 상수도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수도사업에서 존재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한다.

〈표 1〉 지역별 급수인구와 급수량

(단위: 천명, 천m³)

지자체(수)	평균 급수인구	총 급수인구	평균 급수량	총 급수량(비중)
특별시(1)	10,356	10,356	1246,237	1246,237(24.1%)
광역시(6)	2,098	12,593	257,999	1547,997(30.0%)
시(58)	275	15,973	36,303	2105,599(40.8%)
군(38)	30	1,154	4,952	188,197(3.6%)
특별자치도(1)	561	561	69,347	69,347(1.3%)

자료: 『상수도 통계』, 2006.

둘째, 대부분의 소규모 상수도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상수도망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후관의 교체와 같은 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수율이 증가하며⁴⁾,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키게 된다⁵⁾. 대한상수도학회(2006)는 연간 누수로 인한 손실이 5천억~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⁶⁾.

셋째, 상수도사업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도시설의 중복·과잉투자가 일어나고 있다. 현재 정수장 이용률의 전국 평균은 62.9%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희가동시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은 인근지역의 정수시설을 공유하기보다 자체적인 지방상수도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한상수도학회(2006)는 일례로 파주시가 일산정수장의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지역 내 생활급수량을 충족시킬 수 있었으나 자체 정수장을 건립하여 361억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음을 지적하였다.

4) 전체 누수율은 16.1%로 외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만성적 적자로 관리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에서 특히 높다.

5)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은 각각 18.1%, 8.4%씩 상승하였다.

6) 행정안전부.



〈표 2〉 지방상수도사업자의 경영성과

(단위: 천원)

지자체(수)	총이익	흑자	적자	결산자료 미공개
특별시(1)	86,118,455	1	0	0
광역시(6)	33,072,232	5	1	0
시(58)	-9,806,208	24	34	0
군(38)	-5,808,776	4	10	24
특별자치도(1)	-13,110,476	0	1	0

자료: 『지방공기업결산 및 경영분석』, 2006.

영세한 규모,
관리능력의 한계 및
중복·과잉투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영세한 규모, 관리능력의 한계 및 중복·과잉투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표 2〉는 104개 지방상수도사업자의 경영성과이다.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순손실을 보이고 있으며, 결산자료가 공개된 개별 지역 가운데 반 이상의 시·군 단위 사업자가 적자를 겪고 있다. 물론 상수도사업은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국가는 공공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관련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지역독점적인 지위에 있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정책을 따르기는 어렵다. 필수적 공공재의 사용을 보편화하기 위해 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책정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적자를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다. 실제로 164개 지역 가운데 성남시, 안산시, 청주시, 청원군을 제외한 160개 지역에서 판매단가가 생산원가보다 낮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요금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⁷⁾ 적자 경영상태가 소규모 시·군 단위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적정수준의 가격책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이들 지역의 높은 생산원가로부터 발생하는 비효율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164개 지역의 판매단가 평균은 672원, 표준편차는 162원이며 생산원가의 평균은 1029원, 표준편차는 412원이다⁸⁾. 수도요금은 공공재 가격으로서 상대적으로 고르게 분포할 수밖에 없는 데 반해, 생산원가는 지역적 편차가 세 배 정도 더 큼을 알 수 있다. 생산원가와 판매단가의 평균 격차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특별시와 광역시는 40원, 시 단위는 371원, 군 단위는 419원이었다.

지방상수도사업체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매년 상당한 양의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이 상수도 운영에 지원되고 있어, 특히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적자경영이 계속되고 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원가가 상승하게 되면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표 3〉을 보면 2006년

7) 2005년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4년 현재 전국의 요금 현실화율은 77.7%로 요금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결손이 총 5,365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8) 2006년 현재 최고판매단가는 정선군의 1277원, 최저판매단가는 과천시 345원이다.



상수도사업의
생산원가 절감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 및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시·군 단위에 4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이 투입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투입된 국고보조금 역시 1조원이 넘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의 원가절감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⁹⁾. 특히 시·군 단위의 광역화에 관하여 지자체에 통합권역(안)을 제시하고 자율결정·추진하도록 하였다.

〈표 3〉 국고보조금 및 시도 보조금 현황

(단위: 천원)

지자체(수)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합계
특별시(1)	0	0	0
광역시(6)	10,254,628	0	10,254,628
시(58)	45,519,841	31,582,011	77,101,852
군(38)	72,664,893	11,347,307	84,012,200
특별자치도(1)	2,550	0	2,550
합계(104)	128,441,912	42,929,318	171,371,230

주: 164개 지역이 아닌, 본 연구에서 고려한 104개 지역에 한하여 정리하였다.
자료: 『상수도 통계』, 2006.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104개 지방상수도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공급 산업의 비용함수를 추정하고 규모의 경제를 측정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광역화 논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상수도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할 때 어느 정도의 비용절감효과가 가능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 생산량 수준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수도사업의 생산원가 절감은 생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보조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지방재정 및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단지 축소형(reduced-form) 비용함수를 상정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구조적 접근(structural approach)에 비해 한계점이 있으나, 현재 상수도사업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최적생산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9) 행정안전부, 2008. 5. 30 보도자료



II. 자료

1. 통계자료 설명

비용함수의 회귀분석을 위하여 2006년 상수도 통계와 2006년 공기업 결산으로부터 104개의 지방상수도사업자 자료를 추출하였다. 전술하였듯이 104개 지역은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58개의 시와 38개 군, 그리고 1개의 특별자치도로 이루어져 있다. 일부 집계된 수치에 있어서 상수도 통계와 공기업 결산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였다. 일관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상수도 통계에서 집계된 수치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상수도 통계에서 개별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자료는 공기업 결산의 사업자별 손익계산서 수치를 사용하였다.

총비용은 가변비용과 고정비용의 합으로 정의하고, 노동비용, 동력비용 및 자본비용을 더하였다. 노동비용과 동력비용은 상수도 통계에 기재된 상수도사업자별 세출자료의 연간 인건비 총액과 연간 동력비 총액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본비용은 공기업 결산자료의 결산상 자본비용 총액으로 사용하였다. 총생산량은 연간 총급수량으로 정의하였다.

비용함수의 추정에는 각각의 생산요소에 대한 단위비용이 필요하다. 노동의 단위비용은 직원 1인당 연간임금(원/1인)으로 정의하고 연간 인건비 총액을 직원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동력의 단위비용은 1kwh당 전력가격으로, 연간 동력비 총액을 연간 전력사용량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다만 104개 표본 가운데 5개 지역의 전력사용량이 공개되지 않아 전력사용량에 대한 추측치가 필요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력사용량을 알고 있는 나머지 91개 표본으로 하여, 전력사용량이 특정 설명변수와 선형관계를 가진다는 가정하에 다양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전력사용량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찾기로 하였다. 분석 결과 총급수량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두 변수로부터 추정된 선형관계를 이용하여 5개 지역의 총급수량에 상응하는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였다. 자본의 단위비용은 사업자별 감가상각비율과 국채이자율을 더한 값으로 정의하였다¹⁰⁾. 상수도망 관로의 길이는 도수관을 제외한 송수관과 급·배수관 길이의 총합을 사용하였다¹¹⁾. 마지막으로 정수장 이용률은 평균 일일생산량을 설계시설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상수도 통계에 집계되어 있는 수치를 그대로 활용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하여
2006년 상수도 통계와
공기업 결산자료를
이용하였다.

10) 소수 지역에 대해서 자료의 부족으로 감가상각비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에는 지역의 평균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하였다.

11) 도수관은 취수원이나 광역상수도로부터 원수 및 정수를 이동시키는 파이프이다.



표본 자료의 기초통계량은
〈표 4〉와 같다.

2. 단순통계량

우선 표본 자료의 기본통계량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 4〉에는 실증분석에 사용한 변수 및 생산비용과 관련이 있는 기타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및 최대값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용함수를 추정하기 전에 생산비용이 지역적 특성 및 시설 운영상의 특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단순회귀분석을 하였다.

$$\ln \frac{C_i}{Q_i} = b_0 + b_{sk}sk_i + b_{np}np_i + b_uu_i + b_m m_i + b_{hr}hr_i + \epsilon_{0i}$$

〈표 4〉 기초 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총비용(천원)	11,474,231	29,691,538	1,180,000	270,590,000
총생산량(천m ³)	49,593,269.2	135,947,807	900,000	1,246,200,000
노동가격(천원)	37,012,538	12,392,851	6,113,000	66,498,000
동력가격(천원)	0.4115	0.9606	0.0065	8.573
자본가격(천원)	8.314	0.681	5.778	10.447
고용량(명)	119	304	4	2,629
동력 소비량(kwh)	11,379,134.6	40,716,310.5	50,000	387,070,000
자본량(천원)	628,625	1,400,973	73,000	13,150,000
관로 길이(km)	1,037.7	1,828.6	82.5	14,004.1
정수장 이용률(%)	62.6	21.3	11.5	149.1
정수 수입률(%)	24.4	33.0	0.0	95.9
가정용 사용자율(%)	60.8	17.3	8.9	100.0
인구밀도(명/km ³)	1,378	2,927	19	17,102

자료: 『상수도 통계』, 2006.

C_i 는 지역 i 의 총생산비용이며 Q_i 는 총급수량으로, $\frac{C_i}{Q_i}$ 는 단위생산비용을 나타낸다. 상수도사업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이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총비용 중 자본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sk_i 를 식에 포함하였다. np_i 는 급수인구 1명당 상수도망 관로의 길이, m_i 는 생산량 중 정수 수입비율, u_i 는 정수장 이용률, hr_i 는 지역상수도 중 가정용 사용자의 비율을 뜻한다. 정수장 이용률은 상수도 통계자료에 따라 일평균생산량을 설계시설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ϵ_{0i} 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i.i.d.라 가정한다. <표 5>에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모든 추정치가 적어도 10% 수준 내에서 유의미한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자본비용의 비율과 단위생산비용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자본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위생산량에 사용되는 가변비용의 지역별 편차가 적다면 고정비용이 많이 투입된 지역의 생산단가가 높아지게 된다.

<표 5>에서 눈에 띄는 값은 관로의 길이에 대한 추정치이다. 상수도사업은 네트워크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급수면적보다 중요한 것이 관로의 길이라 할 수 있다. 관로는 상수도를 정수장으로부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파이프로, 급수지역의 면적이나 인구밀도와 같은 지역적 특성에 크게 의존한다. 인구밀도가 동일할 경우 급수면적이 넓을수록 필요한 관로는 증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급수면적이 동일할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관로가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관로의 길이를 포함시키기보다 급수인구 1인당 관로의 길이를 계산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수도권 지역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는 1인당 관로가 짧으며, 강원도 산간지역같이 인구밀도가 낮은 곳은 1인당 관로가 길다. 추정결과를 보면, 1인당 관로가 길수록 생산단가 역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인당 관로가 길수록 수송비용 및 관리비용이 증가하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수장 이용률은 시설의 가동률로 이해할 수 있다. 가동률이 높을수록 고정비용 대비 생산량이 많다는 것이므로 생산단가는 낮아진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사용자 비율과 생산단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상수도사업은
네트워크 산업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관로의 길이가 중요하며,
1인당 관로가 길수록
생산단가가 높았다.

<표 5> 추정 결과

변수	추정치
b_o	-1.870**(0.313)
b_{sk}	1.821**(0.334)
b_{np}	79.797**(10.574)
b_u	-0.003*(0.002)
b_m	-0.007**(0.001)
b_{hr}	0.005*(0.003)
R^2	0.7632

주: **는 5% 수준에서 유의함, *는 10% 수준에서 유의함.

12) 실제로 상수도사업자는 가정용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영업용, 공업용, 공공부문용 등 구분된 수요계층에게 급수를 공급한다.



상수도 생산이
트랜스로그 비용함수의
형태를 따르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Ⅲ. 모형 및 추정

1. 모형

각 지역의 상수도사업자는 단일한 재화(상수)를 생산하여 급수지역 내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¹³⁾. 상수도의 생산에는 노동, 동력, 자본의 세 가지 생산요소가 투입된다고 하자. 현실적으로는 인건비, 동력비, 자본비 이외에 약품비, 수선비, 원·정수 구입비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약품비와 수선비는 총비용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제외하였다. 원·정수 구입비는 지역별로 집계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 고려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¹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두 개의 변수를 비용함수에 추가하기로 한다. 상수도망의 관로는 상수도 공급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급수인구나 인구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관로의 길이를 생산비용과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정수장 이용률은 상수도사업의 자본집약적 성격을 고려하여 초과설비가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해준다.

상수도공급이 다음과 같은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의 형태를 따른다고 가정하자.

$$\begin{aligned} (1) \quad \ln C = & \alpha_0 + \alpha_q \ln Q + 1/2 \alpha_{qq} (\ln Q)^2 + 1/2 \sum_i \sum_j \gamma_{ij} (\ln P_i) (\ln P_j) \\ & + 1/2 \sum_h \sum_g \gamma_{hg} (\ln N_h) (\ln N_g) + \sum_i \delta_{qi} (\ln Q) (\ln P_i) \\ & + \sum_i \delta_{qh} (\ln Q) (\ln N_h) + \sum_i \sum_h \xi_{ih} (\ln P_i) (\ln N_h) + \epsilon_c \end{aligned}$$

C 는 인건비, 동력비, 자본비를 합한 총비용을 나타내며 Q 는 총생산량이다. P_i 또는 P_j 는 생산요소가 가격으로 i 와 j 는 l (노동), e (동력), k (자본)의 세 가지 경우를 가진다. N_h 또는 N_g 는 개별 특성으로 h 와 g 는 n (상수도망 관로길이), u (정수장 이용률)의 두 가지 경우를 가진다. ϵ_c 벡터의 구성요소들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적이라고 가정한다.

위의 모형에 Shephard's Lemma를 적용하면 각각의 생산요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비율 방정식을 얻게 된다. 벡터 ϵ_{si} 의 구성요소들 역시 정규분포를 따르며 서로 독립적이다¹⁵⁾.

13) 가정용 급수와 영업용 급수, 공업용 급수 등을 수요측면에서 분리하여 이질적 재화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급측면에서 서로 다른 생산과정은 거치는 것이 아니므로 동일한 재화로 고려하기로 한다.

14) 향후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입수할 경우 생산요소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형을 추정할 예정이다.

15) ϵ_c 와 ϵ_{si} 는 독립적으로 분포하지 않을 수 있다.



$$(2) S_i = \beta_i + \sum_j \gamma_{ij}(\ln P_j) + \delta_{qi}(\ln Q) + \sum_h \xi_{ih}(\ln N_h) + \epsilon_{si}$$

X_i 를 생산요소 i 에 대한 요소 수요라 할 때, 생산요소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S_i = \frac{P_i X_i}{C}$$

규모의 경제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Baulmol(1976)과 Willig(1977)를 기본으로 하여 확장해보기로 한다¹⁶⁾.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따른 수익으로서, 단일재화 생산의 경우 비용의 생산탄력성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다. RTS_A 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규모에 따른 수익이다.

$$(3) RTS_A = \frac{1}{\left(\frac{\partial \ln C}{\partial \ln Q}\right)}$$

그러나 상수도사업의 특성상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송하는 상수도망 관로의 증설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상수도망의 길이를 고정시킨 채 생산량 증가의 효과만 고려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현실적으로 살펴보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량과 상수도망의 길이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규모에 따른 수익을 다음과 같이 측정하기로 한다.

$$(4) RTS_B = \frac{1}{\left(\frac{\partial \ln C}{\partial \ln Q}\right) + \left(\frac{\partial \ln C}{\partial \ln N_n}\right)}$$

2. 추정 방법 및 결과

전술한 모형에 따라 1개의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 식과 노동, 동력, 자본에 대한 3개의 요소비율 방정식을 구성하였다. 요소비율 방정식은 비용함수 방정식에서 유도한 것이므로 4개 방정식의 오차항(error term)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요소비율의 합은 항상 1이 되어야 하므로 특이성(singularity)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요소비율 방정식

규모의 경제는 규모에 따른 수익으로서, 단일재화 생산의 경우 비용의 생산탄력성의 역수로 계산할 수 있다.

16) 탄력성의 역수가 아닌 1과 탄력성의 차이의 절대값을 규모의 경제 수치로 보기도 한다.



소규모의 지자체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비용의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도시보다 높은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을 추정에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요소의 선형동차성이 존재하도록 $\sum_i \beta_i = 1$ 의 가정을 추가하고 변수의 대칭성을 위하여 $\gamma_{ij} = \gamma_{ji}$ 의 제약조건을 두었다¹⁷⁾.

이러한 가정하에서 이분산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용함수와 노동비율 방정식, 자본비율 방정식의 세 식을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방식으로 추정하였다. IFGS(Iterative Feasible Generalized Least Squares)을 이용할 경우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⁸⁾. <표 6>에 회귀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추정식에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동분산성(homoskedasticity)을 귀무가설로 하여 LM test를 시행한 결과 1.953의 LM 통계량을 얻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었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변수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elasticity of cost with respect to the other variables)을 계산해 보았다. 결과는 <표 7>에 정리하였다. 표본평균 탄력성은 모든 변수의 평균값을 이용한 수치이다. 생산량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은 예상할 수 있듯이 양(+)의 부호를 보였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생산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표본평균으로부터 계산된 수치와 비교하기 위하여 총급수량이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의 탄력성을 함께 측정하였는데, 표본평균의 탄력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산량이 많을수록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수반되는 비용의 증분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규모의 경제는 서서히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소규모의 지자체가 생산량을 증가시킨다면 비용의 증가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도시보다 높은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소가격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은 동력가격을 제외하고 양(+)의 부호를 보였다. 생산요소 이외의 특성들 역시 생산비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망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감소하며, 정수장 이용률 역시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매개변수에 다양한 제약을 두고 추정함으로써 트랜스로그 비용함수(translog cost function)로부터 콥-더글러스(Cobb-Douglas) 함수나 CRS 함수 등의 제한된 생산함수 형태를 유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단지 생산함수 이론과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필수적인 제약조건만을 모형에 부과하였다.

18) Zellner(1962)



〈표 6〉 비용함수 회귀분석 결과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변수	추정치
α_o	32.433** (4.211)	γ_{lk}	0.011 (0.020)	ξ_{ln}	-0.008 (0.021)
α_q	-2.156** (0.449)	γ_{ek}	0.240 (0.010)	ξ_{lu}	-0.021 (0.026)
α_{qq}	0.078 (0.057)	γ_{nn}	-0.030* (0.135)	ξ_{en}	0.103** (0.052)
β_l	-0.502** (0.216)	γ_{uu}	-0.231 (0.218)	ξ_{eu}	0.114** (0.048)
β_e	0.122 (0.169)	γ_{nu}	0.040* (0.147)	ξ_{kn}	0.012 (0.024)
β_k	1.380** (0.215)	δ_{ql}	-0.090** (0.016)	ξ_{ku}	0.020 (0.029)
γ_{ll}	0.013 (0.018)	δ_{qe}	-0.054** (0.032)		
γ_{ee}	-0.016 (0.025)	δ_{qk}	-0.012** (0.018)		
γ_{kk}	-0.011 (0.062)	δ_{qn}	0.111 (0.077)		
γ_{ne}	0.003 (0.008)	δ_{qu}	0.078 (0.092)		
Log of likelihood		113.296			
표본 수		104			

주: 1. **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함, *는 유의수준 10%에서 유의함을 나타낸다.
2. 표준편차는 괄호 안에 표기하였다.

상수도망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비용은 감소하며, 정수장 이용률 역시 생산비용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비용의 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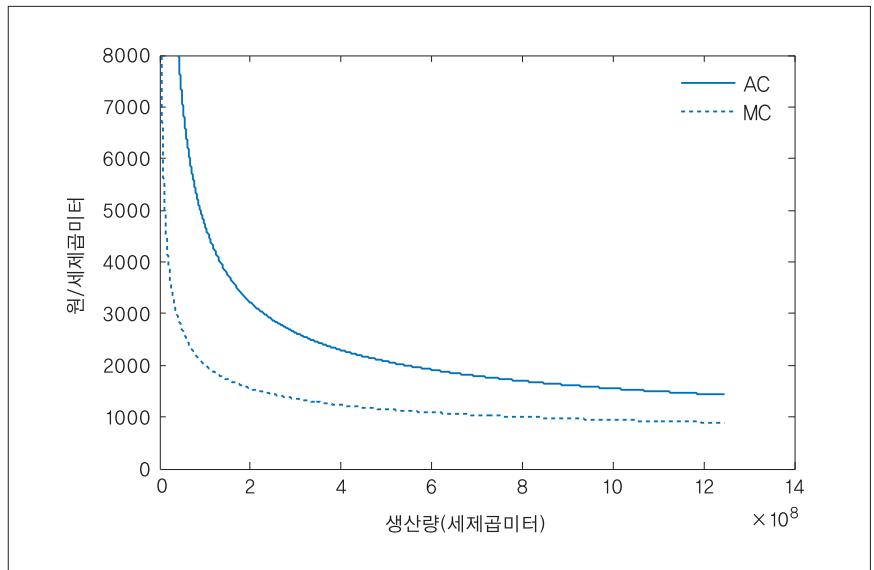
변수	탄력성-전국평균	탄력성-서울특별시
생산량	0.373	0.723
노동가격	0.324	0.509
동력가격	-2.446	-2.235
자본가격	0.615	0.371
관로길이	-1.841	-0.934
정수장 이용률	2.072	1.167



상수도사업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정비용이 투입된 이후에는 평균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생산량에 따른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변화를 대략적으로 추측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관측된 생산량의 범위 내에서 평균비용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을 그려보았다¹⁹⁾. 생산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표본평균을 이용하였다. [그림 1]을 보면, 평균비용과 한계비용 모두 관측된 최대생산량 수준까지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수도사업은 소량이라 하더라도 생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고정비용이 투입된 이후에는 평균비용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그림 1] 한계비용곡선과 평균비용곡선



특히 생산량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2억m³에 이를 때까지 평균비용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 표본에 포함된 사업자들의 크기를 살펴보면 평균급수량이 3천만m³인 시 지역과 400만m³에 불과한 군 지역의 대부분이 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전반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생산원가가 지나치게 높은 구간에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비효율이 발생함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반해 6개 광역시의 평균급수량은 2억 6천만m³로 평균비용의 기울기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지점에서 생산하고 있다. 생산량을 증가할 경우 평균비용의 감소로부터 얻는 효과는 소규모 시·군 단위보다 적겠지만 아직 비용 감소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서울특별시시는 연간 약 12억m³의 급

19) 추정된 비용함수는 축소형이기 때문에 제시한 비용곡선을 어떤 가상의 조건하에서나 관측된 최대 관측량 이상의 생산량 범위에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평균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생산량 규모를 측정하지는 않았다. 표본평균요소 가격의 변화에 따른 요소투입량의 변화와 그로 인한 생산비용의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접근을 통한 모형의 구성과 추정 이 필요하다.



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평균비용과 한계비용의 감소가 거의 둔화되어 있는 생산 수준이다.

규모의 경제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식 (3)과 (4)에서 제시한 식에 따라 규모에 따른 수익을 추정된 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표 8>에 측정결과가 정리되어 있다. 생산규모별로 규모의 경제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규모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 지역적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104개 상수도사업자를 생산량별로 4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²¹⁾. 연간 생산량이 700만³ 미만인 30개 지역은 소량, 2천만³ 미만인 32개 지역은 중-하량, 8천만³ 미만인 26개 지역은 중-상량, 그리고 그 이상인 16개 지역은 대량 그룹에 속하도록 하였다. 각 집단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계산할 때에는 집단의 평균 생산량, 평균 생산요소가격, 평균 관로길이 및 평균 정수장 이용률을 각각 구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표본평균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수치는 표의 마지막 열에 표기하였다.

생산량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을 고정한 다음 생산량 증가에 따른 규모에 따른 수익을 계산한 RTS_A 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규모의 경제를 이와 같이 정의할 때, 모든 규모의 상수도사업장에 대하여 규모의 경제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량생산 그룹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중-하량생산그룹의 열 배에 이르고 있다. 생산규모가 적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높게 측정되었다. 표본평균을 이용한 값에서도 3.961의 높은 값을 얻었다. 이는 생산량 및 다른 변수들의 평균적인 수치를 가지는 정수장을 가정했을 경우, 생산량을 1% 증가시켰을 때 총비용이 약 0.25%밖에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비용의 증가분이 생산량의 증가분보다 적으므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량의 증가는 급수인구나 급수면적의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도망의 증설을 수반해야 한다. 따라서 생산량과 상수도망 관로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표 8>의 마지막 행에 제시된 RTS_B 의 값을 보면, 상수도망 관로의 길이를 고정하여 얻은 규모의 경제 수치보다 규모에 따른 수익이 훨씬 더 작아졌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크기만 작아졌을 뿐 생산규모가 적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소량생산그룹에서는 그 크기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중-하량생산그룹과 중-상량생산그룹에서도 각각 2.818과 1.325의 규모의 경제가 측정되었다. 특이할 점은 규모의 경제를 보이던 대량생산그룹에서 상수도망과 생산량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규모의 비경제를 보이게

생산량과 상수도망 관로의 증가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어느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욱 현실적일 것이다.

20) 네트워크의 증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므로 생산량만으로 광역화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21) 수계권역별로 구분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 단위 상수도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비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생산규모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일부 수도권 시는 상수도사업의 네트워크 산업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최저평균비용에 근접한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표 8〉 규모의 경제

생산량별	지역 수(개)	평균 급수량(천m ³)	평균 관로길이(km)	RTS_A	RTS_B
소량	30	3,645	251.5	85.416	3.841
중-하량	32	11,616	463.0	8.362	2.818
중-상량	26	38,210	1,056.0	4.537	1.325
대량	16	229,507	3,651.6	2.525	0.866
전국평균	104	49,569	1,040.8	3.961	1.315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기업통계를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해 보았다. 추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변수에 대한 비용의 탄력성을 측정하고, 규모의 경제가 얼마나 존재하는지 계산하였다. 특히 생산규모가 다른 사업자별로 규모의 경제를 추정한 결과,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 단위 상수도사업자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비용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량생산지역의 경우 생산량을 1% 증가시킬 때 비용은 0.26%밖에 증가하지 않으며, 중-하량생산지역 역시 생산량 1% 증가에 따르는 비용의 증가가 0.35%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원가는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특정 권역에서 일정한 양의 상수도를 생산한다고 할 때, 그 권역에 속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소규모 상수도사업자들이 생산량을 나누어 담당하는 것보다 하나의 상수도사업자가 대량생산하는 것이 생산비용을 낮추고 효율성의 개선을 가져온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단일사업장의 생산량이 1억m³ 정도에 이르면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다²²⁾.

현재 수계권역²³⁾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20개 이상의 수도사업장들이 운영하고 있다. 이들을 공간적 인접성과 생활권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최대생산량이 1억m³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통합 권역화하고 단일 수도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상당량의 생산비용 절감을 꾀할 수 있다²⁴⁾.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을 포함

22) 규모의 경제는 약 1.1 정도로 여전히 존재하나,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평균비용감소의 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
 23) 취수원 연관성과 지리적 접근성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9개 수계권역으로 나누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강권역, 북한강권역, 남한강권역, 영동권역, 금강북부권역, 금강남부권역, 영산강권역, 낙동강북부권역, 낙동강남부권역.
 24) 추정된 규모의 경제는 통합권역별로 단일한 수도사업장이 운영될 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수도사업자가 단일하다 하더라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수도사업장을 유지하여 복수의 수도사업장을 운영한다면 초과시설이 존재하고 단위고정비용이 절감되지 않으므로 광역화로부터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



하는 낙동강남구권역을 대상으로 비용의 변화를 추정해 보았다. 창원시, 김해시, 진해시, 양산시를 단일구역으로 통합할 때 연간 약 16억원의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진주시, 산청군, 합천군, 함양군을 통합할 경우 연간 약 19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비용이나 상수도 수요량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소규모 상수도 사업장의 통합은 다른 수계권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지역적 편차가 존재하겠지만 소규모 상수도 사업장의 통합은 다른 수계권역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상수도사업의 생산비용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생산범위가 광역화될 경우 얻어질 수 있는 생산비용 절감 차원의 편익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의 광역화에 관한 정교한 논의를 위해서는 관로의 증설이나 관리비용의 변화와 같이 광역화에 따르는 추가비용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규모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논의에 있어서는 생산량만으로 광역화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공간적 인접성과 생활권의 유사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의 분석은 상수도사업의 운영 범위 광역화가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기업의 경영방식이나 소유형태는 현재의 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문기관 위탁이나 민간경영으로 인한 영향은 앞서 서술한 결과로는 고려할 수 없음을 밝혀 둔다. KIPF

<참고문헌>

행정안전부, 『상수도통계』, 2006.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2006.

Baumol, W. J., "Scale Economies, Average Cost, and the Profitability of Marginal Cost Pricing," in *Urban Economics and Public Finance*, Lexington, Mass.: D.C. Heath, 1979, pp. 43~57

Mizutani, F. and Urakami, T., "Identifying Network Density and Scale Economies for Japanese Water Supply Organization," *Regional Science*, 80, 2001, pp. 211~230

Zellner, A.,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ing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s Association*, 57, 1962, pp. 348~368

특 집



2008 세계개편(안)

- 2008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최영록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 2008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손원익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2008년도 세계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재정포럼』에서는 정책담당자의 2008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평가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편집자 주)

2008년 세계개편안의 방향 및 주요내용



최영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I. 2008년 세계개편 배경 및 기본방향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6~7%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4%대로 낮아졌으며, 지난 10년간 경쟁국과 달리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을 하회하는 등 내수 기반도 크게 취약해졌다.

그 결과, 우리 조세부담률은 미국·일본뿐 아니라 중국·대만·홍콩·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변 경쟁국보다도 높은 수준이 되었다. 특히, 2000년대의 빠른 조세부담률 상승이 소비·투자 등 민간 경제 활력의 위축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들어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높은 세부담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위축이 일자리 부족을 심화시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오히려 커졌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2000년대 들어 OECD 국가의 평균 소득세 최고

세율은 4.5%포인트('00년 40.0 → '08년 35.5%) 인 하되었고 법인세율도 6.7%포인트('00년 30.9 → '08년 24.2%) 낮아졌고 캐나다·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상속세까지도 폐지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제 확립 목표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에 기초하여 금년도 세계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정책이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sustainable growth)만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전반적인 세부담 완화와 조세제도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하는 등 기존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低부담 → 高투자 → 高성장"의 선순

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거듭날 수 있는 모멘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마련한 금년도 세계개편(안)의 5대 기본방향은 첫째,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둘째,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셋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넷째,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다섯째,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이다. 본고에서는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기로 한다.

II. 2008년 세계개편(안) 주요 내용

1.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가. 소득세 인하

우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아래 표와 같이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	8,800만원 초과	33%

주: 2009년도에 1%포인트 인하, 2010년도에 1%포인트 추가 인하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되, 근로소득 기초공제를 500만원 이하 구간에 있어 100%에서 80%로 조정하는 한편, 자녀 교육비공제를 대학교

의 경우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유치원·초중고는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나. 유가환급금 지급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에 대해 연 24만~6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경우 2008년 11월에,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3,200만원	18	2,000~2,130만원	18
3,200~3,400만원	12	2,130~2,260만원	12
3,400~3,600만원	6	2,260~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다.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수입원자재 중 할당관세 적용이 가능한 모든 품목에 대해 무세화를 원칙으로 지난 4월 1차로 휘발유, 옥수수 등 82개 품목(69개 무세화), 8월에는 2차로 밀가루, 알미늄피 등 45개 품목(41개 무세화)에 대해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 또한,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는 물가상황 등을 보아가며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라.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을 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여 일용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외

향선원 수준인 월 1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또한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한도를 연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였다.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을 2010년으로 연장하고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일몰을 2011년으로 연장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ETC)의 지급금액을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수급요건을 완화하여 재산 1억원 미만 소규모 1주택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투자 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가.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 조정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투자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낮은 세율을 현행 13%에서 11%(08년 귀속), 10%(10년 귀속)로, 높은 세율은 25%에서 22%(09년 귀속), 20%(10년 귀속)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또한, 과표구간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체법인의 90%(약 32만개 법인)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 지원 확대

먼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간 50%) 대상을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개인이 벤처기업·투자조합 등에 출자시 소득공제(투자금액의 10%)를 2010년까지 일몰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토록 하였다. 경영단계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소득세·법인세 등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공장용

지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OECD회원국 30개국 중 21개국에서 시행하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2010년 시행)하여 경제적으로 결합된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토록 하였다. 다만, 연결범위는 100% 자회사로 한정하였다.

주요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일본 7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을 감안하여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현재 ERP설치 사업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모든 사업자에 대해 선택가능하도록 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시키는 동시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였다.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개선하여 계열사에 재출자한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비과세(지분비율에 따라 30~100%)되도록 하였다.

라. 서비스산업 등 활성화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관광숙박업 등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조세감면 제도가 서비스산업까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201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증부세, 재산세,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한편,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에 음식용역을 추가하였다.

R&D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문화산업을 추가하고

문화접대비 손비인정 특례의 일몰을 2010년까지 연장하는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에너지자원 확보를 지원하고자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대상을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해외투자자로 확대하고 해외 광물자원의 탐사·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세 일몰을 2013년으로 5년간 연장하였다.

마.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하고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100만원 한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감면(50%) 대상을 확대하고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에 대하여 관세감면(50%)에 따른 사후관리를 제외토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고유가 및 자원위기의 시대를 맞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녹색성장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미래의 R&D투자를 위해 매출액의 3%를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여 R&D 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R&D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인상하고 비용지출단계에서 중소기업의 R&D비용 세액공제를 당기 지출분의 15%에서 25%로 확대하는 한편, R&D비용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을 폐지하여 제

도를 영구화하였다.

기업과 대학간 산학협력을 위해 대학에 R&D시설 기부시 R&D시설투자세액공제(10%) 대상에 포함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받기 위해 대학에 맞춤형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R&D 기부금 공제범위를 '09년 소득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하였다.

해외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을 17%에서 15%로 인하하였다.

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가.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①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1세대 1주택에 대해 감면요건을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에서 '3년 이상 보유 및 3년 이상 거주'(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2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1세대 1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1999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에서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로 확대하여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경감하였다.

② 1세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합리화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해 중과되지 아니하는 저가주택기준을 지방 광역시의 경우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하고 중과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취학·장기 요양 등의 경우에는 2

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요건 : 3억 원 이하 주택, 1년 이상 거주 등)토록 하였다.

중과제의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비수도권에 한정)

구분	현행	개정안
임대호수	5호 이상	1호 이상
임대기간	10년 이상	7년 이상
주택면적	85㎡(25.7평) 이하	149㎡(45평) 이하
취득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현행과 동일〉

③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현행		개정안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천만~4천만원	18%	1,200만~4,600만원	15%
4천만~8천만원	27%	4,600만~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주: '09년도에 2%포인트 인하, '10년도에 1%포인트 추가 인하

나.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현행 : '07년 80%, '08년 90%, '09년 100%)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을 전년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분납대상을 1천만원에서 5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분납기간을 2개월(현행 45일)로 연장하였다.

다.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①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2007년 사망자 30만명 중 납세자는 2,600여명(0.7% 수준)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적고 국가간 자본거래와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어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하였다.

현행		개정안*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6%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5억~15억원	15%
10억~30억원	40%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50%	30억원 초과	33%

주: * '09년에는 1%포인트 높은 세율 적용

② 중소기업 가업상속 세 부담 완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상속가액의 20%에서 4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적용요건을 완화하였다.

③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속인이 무주택자로서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 거주한 경우 5억원 한도내에서 주택가액의 40%를 공제토록 하여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지원토록 하였다.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가. 3대 목적세 정비

70년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을 도입하면

서 기본체계를 갖춘 이후 다수의 목적세 신설 등으로 인해 복잡해진 조세체계를 간소화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폐지하고 휘발유·경유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토록 하였다.

교육세 중 개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을 본세에 흡수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분은 폐지하되 금융보험용역 중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용역에 대해 수수료 수입에 부가가치세(10%)를 과세토록 하였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법인세·소득세·관세감면분은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공제율 및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였다. 개별소비세·증권거래세분은 본세에 흡수통합하되, 종합부동산세분은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다. 지방세분은 본세(지방세)에 흡수통합을 유도하고자 한다. 이 경우 지자체에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이양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3대 목적세 정비후 국세체계의 변화

(단위: 개)

구분	현행	개선
일반세	11	11
목적세	3	0
계	14	11


나. 기타 과세체계 정비

기타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34건 중 16건(48%)을 축소·폐지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서화·골동품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소득세 과세 저변을 확대하고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 사업자를 추가하기로 하였다.

III. 향후 추진일정

금번 세제개편안은 9월 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계·학계·언론계·전문가 단체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향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10월초 국회에 세법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법개정안은 국회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소비, 투자 등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능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참고로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총 26.4조원의 세금을 덜 걷게 되지만, 2008~2009년은 과표양성화 등에 따른 세입억력 증대분을 활용하여 감세를 추진하고, 2010년 이후에는 조세부담률을 낮춰가는 동시에 세출구조 조정을 병행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므로 재정건전성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부담 귀착을 보면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되는 만큼 고소득층·재산가에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오해가 불식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8년 세계개편안에 대한 평가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wson@kijp.re.kr)

I. 세계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2009년 기준으로 총 11.7조원에 해당하고 세계 개편이 완료되는 2012년 기준으로 총 21.3조원의 대규모 감세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년 세계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이번 세계개편안의 목표는 저세율 구조의 과세체계를 확립하고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신성장 동력의 기반을 확충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세계개편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크게 다섯 가지 기본방향이 설정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담 완화, 둘째,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셋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넷째, 부동산 과세제도를 조세원리 및 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 다섯째,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과세체계의 정상화이다.

2008년 세계개편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기본방향에 따라 제시된 세계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중·저소득층의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세부담 완화

제시된 개편안에는 소득세율 인하, 유가환급금 지급, 긴급할당관세 시행,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이 중 유가환급금과 긴급할당관세의 경우 이미 조치가 결정된 사항이므로 소득세 인하와 생활밀착형 지원의 내용을 위주로 살펴본다.

소득세율은 각 과표구간별로 2%포인트씩 인하여 8,8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적용되는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이 현행 35%에서 33%로, 1,200만원 이하의 소득에 적용되는 최저 과표구간의 세율도 현행 8%에서 6%로 인하될 예정이다. 종합소득세율의 인하시기는 내년에 1%포인트, 내후년에 1%포인트를 추가로 인하하는 형태로 적용시기가 제시되고 있다.

소득세 공제체계는 1인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였으며, 근로소득 공제율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최하구간에 적용되던 공제율을 현행 100%에서

80%로 축소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소득세 특별공제의 경우에도 교육비, 의료비, 장기주택차입금 이자비용 등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중산층 및 서민층의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생활밀착형 지원제도의 경우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해외건설킨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생계형저축 비과세 특례 일몰 연장, 근로장려금(EITC)지원 확대, 음식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일몰 연장,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 저소득층, 노인 및 장애인, 재해를 겪은 사업자 등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세제개편안이 제시되었다. 그 중에서 가장 파급효과가 큰 것은 법인세율 체계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현재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가 적용되었던 법인세율 체계가 과세표준 2억원을 기준으로 10%와 20%까지 인하될 예정이다. 법인세율의 인하단계에 따라 최저한세율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10%에서 7%로, 일반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은 현행 15%에서 13%로, 1천억원 이하는 현행 13%에서 10%로 인하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금년 말에서 3년간 다시 연장하여 중소기업에 추가로 주어지는 세율인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였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에

게 주어지는 세액감면의 대상에 서비스업도 추가하여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최근 몇 년간 세제개편 때마다 논의되었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으며,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등 녹색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제도를 정비하였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는 등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하는 등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를 정비하였다.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2012년까지 R&D 투자의 GDP 비중을 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의 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상의 유인체계를 준비단계, 투자단계, 비용지출단계, 산학협력단계 등 각 단계별로 확대한 세제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준비단계에서는 지난 세제개편 때 실효성을 이유로 폐지되었던 준비금제도를 재도입하였으며, 투자단계에서는 R&D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다.

비용지출단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대폭 인상하였으며, 그동안 일몰제로 운영해 오던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하는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산학협력단계에서는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R&D 설비와 맞춤형 교육비용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 및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소득의 75%에서 100%로 확대하였으며,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도 연장하였다.

외국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국내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인하하고, 단기거주 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도 축소하는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4. 부동산 과세제도를 조세원리 및 담세력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가장 큰 변화는 과세범위를 현행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하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연 4%, 최대 80% 공제에서 연 8%, 최대 80% 공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며,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감면을 위한 거주요건은 오히려 강화하였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세가 중과되는 것을 배제하는 조치가 포함되었으며, 임대주택의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양도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의 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종합부동산세제의 경우 근본적인 개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의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률이 인상되어 세부담이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를 조정하였으며, 보유세 상한을 하향 조정하였다.

상속·증여세제의 경우 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였으며, 중소기업 기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여 세제가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과세체계의 정상화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3대 목적세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며,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여 목적세를 대폭 축소하는 개편안이 제시되었다.

비과세·감면제도 중 금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34건 중 17건을 축소 및 폐지하고, 개인의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등 기타 과세체계 정비를 위한 여러 가지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협력비용 감축,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세무행정과 관련된 개편안도 포함되어 있다.

II. 세제개편안에 대한 평가

지금까지 2008년 세제개편안의 목표, 기본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절에서는 각 기본방향별로 그 안에 포함된 주요 세제개편안에 대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1. 서민층을 위한 감세

소득세율의 2%포인트 인하와 소득세 공제체계의 조정에 따른 세부담의 변화는 연 소득이 8천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15.5%의 경감효과가 있고, 연 소득이 3천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40.1%의 경감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세부담 인하는 세후 가치분소득을 증가시켜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의 인하를 통해서 경기활성화를 꾀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유가환급금의 지급효과와 이번에 제시된 소득세 인하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민간소비를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외적인 경제환경의 악화로 중·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세부담을 인하하는 소득세제 개편안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세계개편의 결과 면세점이 상향 조정되고, 자영업자의 과세자 비율이 축소되는 것은 아쉬운 상황으로 사료된다.

소득세제와 관련하여 향후 고려해야 할 것은 '물가연동 소득세'의 도입이다. 작년에 있었던 세계개편에서 소득세제의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측면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물가상승 이상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만큼 과표구간과 각종 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인 소득세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2.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감세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등의 조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제시된 개편안 중에서 법인세율의 인하가 과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기업의 투자는 한계유효세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계유효세율은 명목법인세율, 감각상각의 가치, 투자세액공제율의 함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시된 법인세율의 인하 조치는 기업의 한계유효세율 인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물론 세율 인하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인세율의 인하가 있었던 과거의 세계개편 중에서 단기적으로 경제성장률 및 실질설비투자증가율의 증가세가 나타났던 것은 상대적으로 감세규모가 컸던 '83년 세계개편과 '94~'96년 세계개편이었다. 이러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법인세 감세규모가 상당히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이번 법인세율의 인하 효과는 단기적으로도 가시적인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 이론적 또는 실증적 결과 및 예측은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환경에 어떤 나쁜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경제환경이 악화되거나 또는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면 아무리 세제상 큰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기업의 투자촉진은 기대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법인세율의 인하도 있었고, 또 투자세액공제율도 매우 크게 상향 조정되었으나 기업의 투자가 촉진된 뚜렷한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조세

지원 외에도 고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외국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외국기업이 투자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 노사관계, 기업에 대한 정부의 성향, 언어의 원활한 소통 등이 조세지원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보면 기업이 직면한 경제환경이 기업의 투자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다.

3.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R&D투자와 관련된 세제지원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세액공제제도를 영구화한 것이다. 장기적인 연구개발투자의 계획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정 기간 내에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려는 조세지원의 효과는 반감되는 단점도 있다. 본 개편안은 향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추이를 관찰한 후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R&D투자의 준비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준비금제도가 재도입되었다. 본 제도의 효과는 과세를 일정 기간 이연하여 그 기간만큼의 이자소득이 기업에 지원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제도의 적용방식이 경기하강기가 지속되는 시기에는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준비금제도가 다시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제도가 재도입된 것인만큼 준비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제도의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여 유사한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부동산 과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평가된다. '99년 이후의 주택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이며, 특히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거래 잠금효과(lock-in effect)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킨 조치는 '02~'04년에 일치되었던 과세체계가 '05년 종합소득세율의 인하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일치시키기 위한 당연한 개선안으로 이해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 또는 하락하는 상황에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과표적용률을 작년 수준(80%)으로 동결하고 보유세 상한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시장의 변동상황을 잘 반영한 조치라고 평가된다. 향후 종합부동산세의 추가적인 개편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세계개편안 중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는 우량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5. 목적세 정비

목적세에 대한 정비방안은 그동안 수차례 이와 유사한 개편안이 권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3대 목적세가 가지고 있는 재정학적 관점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정부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이해집단이 연계되어 정치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았던 과제였다.

문제는 제시된 개편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경주되어야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의 논의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조정이 병행되어 세출을 감축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전체적인 선순환 구조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KIF**

Ⅲ. 맺음말

2008년 세제개편안은 2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의 세금 감면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를 활성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감세패키지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큰 폭의 법인세율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연장 및 연결납세제도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편안, 중소기업의 기업상속에 대한 세부담 완화 등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기업가 정신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측 및 기대는 재정적자가 심화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세출구



주요국의 조세동향

* 본 자료는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주요국의 조세동향」의 주요 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동향 08-17

요약

- 2008년 7월 31일 미국 대통령은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H.R. 3221(the Housing and Economic Recovery Act of 2008)에 서명
 - 주요한 세제지원 내용은 생애첫주택구입 세액공제 확대, 임대주택 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 증액, 주택과 관련되어 발행되는 비과세 채권한도 증액,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조정 등
- 홍콩의 재무부 장관 陳家強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슬람채권에 대해 일부 세금을 면제하여 줄 계획이라 밝힘
 - 오일머니의 영향력 확대에 따라 아시아 내 이슬람금융 허브 도약이 목표
 - 당분간은 case-by-case 기준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향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영구적인 규정으로 바꿀 계획
- 스페인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부유세(wealth tax) 폐지를 발표

- 법적 폐지절차는 올 연말 이전에 종결될 것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1.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 서브프라임으로 야기된 주택경기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되자, 2008년 2월 하원(House)에서 주택경기 촉진을 위해 발의된 법안(H.R. 3221)이 상원(Senate)에서 7월 11일에 통과된 후 7월 31일에 미국 대통령의 인가를 거침
 - 연방주택공사(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의 개입을 통하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부실채권 금액을 일부 보전해 주는 금융시장 안정장치와
 - 자가소유주택과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관련 채권에 대한 비과세, 최저한세 조정 등의 세제지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방주택공사(FHFA)는 주택가격이 담보대출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담보대출자의 신용위험에 따라 대출금액을 감액 조정
 - 주택담보대출자와 은행의 합의가 있는 경우 최초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90%까지로 조정되고 만기 30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

주요국의 조세동향

- 약 400,000명의 담보대출 이용자가 연방주택공사(FHA)의 자금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적용요건으로는 ① 거주 목적으로 1주택 취득자로 ② 매월 담보대출 상환 금액이 월소득의 31% 이상이며 ③ 대출 당시 고의 또는 사기 목적이 없어야 함

■ 주요 세제지원 내용과 10년 동안의 조세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생애첫주택구입 세액공제(First-time homebuyer credit) 개정(48.5억달러),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신설(15.3억달러), 임대주택 세액공제(Low-income housing credit) 증액(10.8억달러), 주택관련 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세(14.7억달러), 걸프 촉진 지역(Gulf Opportunity Zone: GO Zone)에 대한 세제혜택(10억달러), 최저한세(aAMT) 조정(20억달러) 등이 있음

〈표 1〉 주요 세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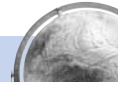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생애첫주택구입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용 주택 구입가격의 10%와 7,500달러(기혼자의 개별신고의 경우 3,740달러) 중 작은 금액을 환급 • 환급된 금액은 주택 구입한 연도의 2차년도부터 15년간 국세청에 분할납부 • 납세의무자는 세액공제 적용시점으로부터 이전 3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비과세되는 주택 담보대출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
주택에 대한 재산세 표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를 항목공제(itemized deduction)뿐만 아니라 표준공제(standard deduciton)로 신설 • 공제금액은 재산세와 500달러(부부합산 신고의 경우 1,000달러) 중 작은 금액
임대주택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 세액공제¹⁾는 저소득자의 거주를 위하여 임대자산을 신축(new construction), 개축(rehabilitation) 등을 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현재가치의 일정비율(9% 또는 4%) 상당액을 10년간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제도임

주택관련 채권 이자에 대한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위하여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됨 • 법 시행으로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한도 금액을 110억달러 증액
최저한세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한세 산정시 비과세되는 채권이자를 배제하고, 최저한세에서 임대주택 세액공제의 차감을 허용 • H.R. 3221에서 제공하는 세제지원이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되는 효과를 최소화
걸프촉진 지역에 대한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손실액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소득세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H.R. 3221 시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 허용

주: 1) 임대주택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의 거주를 위하여 임대자산을 신축(new construction), 개축(rehabilitation) 등을 하는 소유자에게 임대주택 현재가치의 일정비율(9% 또는 4%) 상당액을 10년간 세액공제로 허용하는 제도임

2. 미국 주택경기촉진법 시행

- 홍콩의 재무부 장관 陳家強이 홍콩에서 발행되는 이슬람채권에 대해 일부 세금을 면제하여 줄 계획이라 밝힘
- 중국의 경제신문 더 스탠더드(The Standard)誌가 홍콩의 재무부 장관 陳家強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분간은 case-by-case 기준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주되, 향후에는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영구적인 규정으로 바꿀 계획이라 함
- 구체적인 세금감면 내용이나 입법계획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현재 홍콩에선 홍콩공항공사 등이 주축이 되어 홍콩 최초의 이슬람채권 발행을 추진중에 있음
- 이는 2008년 5월 20일 홍콩통화청과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간에 MOU 체결에 따른 것임
- 국제 유가 상승으로 오일 머니의 위력이 커지면서 홍



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아시아 내 이슬람 금융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이슬람채권의 특징

- 이슬람의 율법에 따르면 이자의 수취, 도박·포르노·주류회사 투자, 주식 공모도 등이 허용되지 않음
-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전통적인 방식의 채권에는 투자가 불가능함
- 이슬람채권이란 이자를 주는 대신 투자금으로 별인 사업에서 나온 수익을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채권을 말함

■ 이슬람채권의 일반적인 발행 구조

- [1단계] A(발행자)가 채권 발행 전에 채권 금액에 상응하는 자산(예를 들면 공항부지)을 B(유동화전문회사)에게 매각
- [2단계] A가 동 자산을 만기까지 리스해서 사용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에게 리스료(사실상 이자) 지급
- [3단계] 만기가 도래하면 A가 동 자산을 환매하여 원금 상환

■ 이슬람채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홍콩의 금융기관들이 세금관련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음

- 이중과세 문제
 - 채권 발행 시점에서 A가 B에게 자산을 매각하는 때 A에게 자본이득 과세 문제 발생
 - 만기 시점에서 A가 채권의 원금을 B에게 지급하고 자산을 환매하는 때 B에게 자본이득 과세 문제 발생
 - 즉, A가 B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때와 B에게 다시 환매하는 때 두 번 자본이득 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됨
- 감가상각 문제

- 채권 발행 시점에서 자산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채권 발행 이후에는 A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홍콩의 금융전문가들은 홍콩이 이슬람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선 조세제도 변경이 필요하며, 단기적인 측면에선 이슬람상품에 대해 case-by-case 기준으로 세금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홍콩 정부 역시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이슬람상품에 한해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3. 스페인 부유세(Wealth Tax) 폐지

■ 스페인의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18일 경제 부흥 패키지(economic stimulus package)와 함께 부유세의 폐지를 발표

- 법적 폐지절차는 올 연말 이전에 종결될 것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
- 부유세의 폐지로 스페인의 조세환경이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

■ 스페인의 부유세 제도

- 납세의무자
 - 스페인의 거주자인 개인은 전 세계의 재산에 대해 부유세 납부의무
 - 비거주자인 개인은 스페인에 소재한 재산 및 스페인 영토 내에서 행사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부유세 납부의무
- 과세대상
 - 매해 12월 31일까지 축적된 납세자의 자산, 권리에

대해 부과

- 자산의 가치 평가는 개별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
- 세율
- 과세소득 금액에 따라 0.2%부터 최대 2.5%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
- 징수한도
- 스페인의 거주자인 개인의 경우 개인소득세와 부유세의 합계는 개인소득세 과세목적상 과세소득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 이를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부유세는 그 금액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징수한도를 적용받더라도 원래 납부했어야 할 총부유세의 20%는 납부하여야 함

■ 다른 유럽 국가와의 비교

- 부유세가 남아 있는 국가
-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¹⁾
- 부유세를 폐지한 국가
- 스웨덴(2007. 1. 1), 핀란드(2006. 1. 1), 룩셈부르크(2006. 1. 1), 네덜란드(2001. 1. 1), 독일(1997. 1. 1), 덴마크(1997. 1. 1)

동향 08-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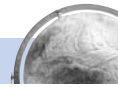
요약

- 중국 세무당국은 15% 우대세율(일반 25%)이 적용되는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관한 세부 요건 발표
 - 발표된 요건에는 제도 이행규정, 승인절차, 핵심적인 지적재산권, 적격 R&D 프로젝트, R&D 비용, R&D 인력, R&D 수입금액 등을 포함
 - 그 중 R&D 관련 사항은 08-19호에서 다룰 예정
- 스위스는 친환경적 석유세 개편을 추진
 - 재생 원재료에서 추출한 생물연료에 대해 석유세 감면(mineral oil tax exemption)을 계획하고, 예산상 균형을 위해 지난 7월 1일 일반 자동차 연료에 대해 부과하는 석유세를 리터당 CHF 0.135까지 인상
- 일본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부양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최종안은 8월 31일 경에 발표할 예정

1. 중국 첨단기술기업 지위에 대한 세부요건(1/2)

- 중국 세무당국은 7월 11일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세부 요건이 포함되어 있는 통지 362(Guo Ke Fa Huo [2008] No.362)를 발표
 - 중국의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서는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일반

1) 스위스의 경우 주(canton) 및 시 차원에서 부과



적인 경우에는 25% 세율 적용)

- 이행규정, 승인절차, 및 핵심지적재산권을 제외한 R&D관련 규정은 다음 호에서 다룰 예정

■ 이행규정

- 2007년 말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되지 않은 기존의 첨단기술기업은 통지 39²⁾에 따라 과도기적 공제를 향유할 수 있음
- 기존의 외자기업소득세법에 따라 2007년 말에 2년간의 소득세 면제 자격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 역시 통지 39에 따라 과도기적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한편 소득세 면제기간이 만료된 후에 15%의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되기 전후에 새로운 첨단기술기업지위를 다시 신청해서 획득해야 함
- 북경 첨단기술제조개발시험단지에 입주하고 있고, 2007년 말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부여받은 외자기업은 기존의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되는 때까지 기존의 세금우대 혜택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된 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다시 신청해서 획득해야 함
- △ 외자기업이 기존의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만료된 후에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갱신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이행기간중에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25%의 표준적인 기업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됨
- 2008년 1월 1일 이후에 5+1 지역(5개 경제특구 및 푸둥(浦東) 신구)에 설립됐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부여받은 기업은 이익이 처음 발생

- 한 연도부터 2년 동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음 2년간의 세금면제 혜택 후에 3년 동안 12.5%의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첨단기술기업 지위가 주어지는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최초 3년간의 첨단기술기업 지위 만료 직전이나 직후에 바로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갱신해야 이후 연도에 세금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승인절차

- 지방 정부가 아닌 성급 기관(과학기술부의 지방분소, 성급 재정부 및 세무원)이 주체가 되어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부여함
- 특정 산업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기술 전문가 패널이 신청서를 검토함
- 회계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법인으로부터 특별 감사를 받게 됨
- 승인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개방적이고 투명하게 승인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국가 차원의 감독 기구를 만들 예정임

■ 핵심적인 지적재산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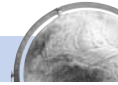
- 이전의 통지 172에서는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이란 중국 기업(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이 등록한 특정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은 직전 3년 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하며, 5년 이상 배타적인 이용권을 갖고 있는 것 역시 지적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됨
- 지적재산권은 기업의 주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핵심적인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함

2)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획득하면 이익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2년 동안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음

- 통지 362에서는 핵심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추가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지적재산권에는 발명품, 새로운 모델, 새로운 외관상의 디자인(단순한 패턴이나 모양의 변화는 포함되지 않음), 소프트웨어 판권, IC 디자인, 새로운 유형의 공장이 포함
 - 특허권이 진실한지 여부는 중국의 국가지적재산권 부문의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권 번호를 통해 확인
 - 소프트웨어 판권은 중국의 판권보호센터의 웹사이트에 있는 판권 심벌(symbol)을 통해 확인
 - 지적재산권은 유효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 기술적인 노하우는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채점표 내에 기술적인 결과의 변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부차적인 요건으로 포함
 - 특히, 통지 362에서는 통지 172에 나와 있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했음
 - 간단히 말해서 배타적인 권리라는 것은 단지 중국 내에서만 100% 사용하기 위한 권리라기보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 세계적인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중국시장을 목표로 진출한 외자기업의 경우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
 - △ 다만, 예외적인 경우로서 외자기업의 모기업이 중국의 자회사에 전세계적인 배타적인 라이선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획득할 수 있음

〈참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첨단기술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비교

	우리나라	중국
조세감면 혜택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의 특혜세율 적용 • 첨단기술기업 지위를 계속하여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특혜세율 적용 가능
첨단기술기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벤처기업으로 승인받기 위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업력에 따라 다음기준 충족필요 △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한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5% 이상으로 업종별로 다름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유해야 함 • 중점지원영역에 해당해야 함 • 과학기술업무 인원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이상 학력의 과학기술업무 종사자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일 것 - 전체 직원의 10% 이상이 R&D 업무에 종사할 것 • 연구개발비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3년치 연구개발비가 직전연도 총수입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것 - 연구개발비 중 중국내 발생 비용이 총 연구개발비의 60% 이상일 것 • 첨단기술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총수입 중 첨단기술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창출된 수입이 60% 이상일 것



2. 스위스 친환경 석유세

- 스위스는 지난 7월 1일 일반 자동차 연료에 대해 부과하는 석유세를 리터당 CHF0.135까지 인상
 - 한편, 재생 원재료에서 획득한 생물연료(biofuel)에 대해서는 석유세를 전액 감면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최종안은 11월 정도에 발행될 예정
 - 이와 같이 생물연료를 생산 및 수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조세혜택은 정부의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평가
- 스위스의 석유세(mineral oil tax)
 - 스위스에서 석유세는 제품종류 및 제품의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³⁾
 - 무연 가솔린의 경우 CHF0.7447/ℓ, 경유는 CHF0.7587/ℓ, 중유는 CHF0.003/ℓ의 세율을 적용
 - 그리고 농업, 산림업, 수산업 또는 인가된 수송회사에 대해서는 면세혜택 부여
- 석유세 감면(mineral oil tax exemption)
 - 재생 원재료에서 획득한 생물연료를 대상으로 석유세 감면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그 자격요건으로는 다음 사항이 고려 중
 - 바이오가스(biogas), 바이오에탄올(bioethanol), 바이오디젤(biodiesel) 및 2003년 5월 8일 EU Directive 2003/30/EC에 열거된 기타 연료로 이산화탄소 감축, 열대산림 보존, 생물학상 다양성 보존 등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
 - 생태학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없는 연료만이 감면 적용 대상

- 석유세수는 스위스 국세 예산 중 대략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일반 자동차 연료에 대해 석유세를 인상함으로써 석유세 감면 조치가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기대
- 한편, 석유세는 자동차 연료를 생산 및 수입하는 법인을 대상으로 징수되는 것이기는 하나 세율 인상은 궁극적으로 높은 가격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

3. 일본 경기부양안 논의

- 지난 8. 11 정부는 물가상승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경기부양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발표
 - 전 세계적인 원가 급등과 경제성장 둔화가 일본의 경기후퇴를 유발할 것을 우려
 - Yasuo Fukuda 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재정 및 조세정책을 사용할 것임을 시사
 -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나 8. 31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

3) http://www.ezv.admin.ch/zollinfo_firmen/steuern_abgaben/00382/index.html?lang=de



| 정책 흐름 |

- 2008년 세제개편(안)
-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 시행

2008년 세제개편(안)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제도약 세제 -

* 이 자료는 2008년 9월 1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서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중 세부 추진내용입니다. <편집자 주>

I. 중·저소득층 민생 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1. 소득세 인하

(1) 소득세율 단계적 2%p 인하(소득법 §5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소득세율 • 1,200만원 이하 : 8% • 4,600만원 이하 : 17% • 8,800만원 이하 : 26% • 8,800만원 초과 :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간별 2%p 인하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33% <p>* '09년도에 1%p 인하, '10년도에 1%p 추가 인하</p>

개정이유 ▶ 중산·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

- 중·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체계 설정 : 최저세율 25%(8→6%), 최고세율 5.7%(35→33%) 인하 효과
- 전 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용시기 ▶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인하 적용

'10.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추

가 인하 적용

(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소득법 §47·5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100% • 총급여 500~1,500 : 50% • 총급여 1,500~3,000 : 15% • 총급여 3,000~4,500 : 10% •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공제액 50만원 인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최하구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80% <p>· (좌동)</p>

* 현행 기본공제 100만원은 '96년에 72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공제체계 개편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는 확대
-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

<독신가구 및 4인가구 실효세율 국제비교('07년 기준,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OECD
독신가구(A)	4.6(29위)	8.1	16.9	22.0	15.9
4인가구(B)	2.1(25위)	4.3	4.1	3.3	10.4
A-B	2.5	3.8	12.8	18.7	5.5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6-2007

()안은 OECD 30개국 중 순위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 조정(소득법 §5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전액 공제 •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 : 전액 공제 • 부양가족 : 연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 한도 : '①+②+③' 합계 연 1,0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연 300만원으로 확대 • 연 800만원으로 확대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 ①, ②의 경우 '①+②'는 300만원 별도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①+②+③' 합계 연 1,500만원으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장례·이사비용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 거주자의 이사 	<p><폐지></p>

개정이유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산·서민층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부담 경감
-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청년층·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지원
-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특별공제 간소화
- 저소득층은 세율 인하·기본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으로 대체

적용시기 '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50·51)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 존속 -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20세 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 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 : 연 100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 연 150만원 추가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 - (좌 등) -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 아동* 추가 *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선정 ■ 경로우대 추가공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 배제

개정이유 인적공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 국민연금 수급 연령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녀간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연령 일치
-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요보호 아동 위탁 양육 활성화 도모
-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경로우대 추가공제 조정

※ 기초노령연금 개요

- 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
- 지급액 : (단독수령) 월 84천원 (부부수령) 월 134천원

* 기초노령연금 총지급액('09) : 3.4조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유가환급금 지급

(1)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조특법)

※기 조치

현행	개정안																												
<p><신설></p> <p>■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급 대상 : '08. 7. 1~'09. 6. 30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지급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근로자</th> <th colspan="2">자영업자</th> </tr> <tr> <th>총급여</th> <th>연간환급금(만원)</th> <th>종합소득금액</th> <th>연간환급금(만원)</th> </tr> </thead> <tbody> <tr> <td>3,000만원 이하</td> <td>24</td> <td>2,0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3,000만~3,200만원</td> <td>18</td> <td>2,000만~2,130만원</td> <td>18</td> </tr> <tr> <td>3,200만~3,400만원</td> <td>12</td> <td>2,130만~2,260만원</td> <td>12</td> </tr> <tr> <td>3,400만~3,600만원</td> <td>6</td> <td>2,260만~2,400만원</td> <td>6</td> </tr> <tr> <td>3,600만원 초과</td> <td>0</td> <td>2,400만원 초과</td> <td>0</td> </tr> </tbody> </table> <p>- '08. 7. 1~'09. 6. 30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p>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만~3,200만원	18	2,000만~2,130만원	18	3,200만~3,400만원	12	2,130만~2,260만원	12	3,400만~3,600만원	6	2,260만~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근로자		자영업자																											
총급여	연간환급금(만원)	종합소득금액	연간환급금(만원)																										
3,000만원 이하	24	2,000만원 이하	24																										
3,000만~3,200만원	18	2,000만~2,130만원	18																										
3,200만~3,400만원	12	2,130만~2,260만원	12																										
3,400만~3,600만원	6	2,260만~2,400만원	6																										
3,600만원 초과	0	2,400만원 초과	0																										

개정이유 >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 계층 지원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교통·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교통법 §2, 교통영 §3의2)

※기 조치

현행	개정안
<p>■ 교통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630 / 472 - 경유 : 454 / 335 탄력세율 한도 : ±30% <p>■ 지방주행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지방세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세의 32%/27% 	<p>■ 교통세를 인하 및 탄력세율 한도 상향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475 / 462 - 경유 : 340 / 328 탄력세율 한도 상향 조정 : ±30% → ±50% <p>■ 유가연동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주행세율 인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세의 36%/30% * 교통세를 인하분만큼 지방주행세율을 인상(전체 유류세 변동 없음)

개정이유 > 유가연동보조금* 재원 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시키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교통세율을 지방세로 이양)

* 경우 사용 운송사업자·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

•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탄력세율 한도 인상

적용시기 > 공포일 이후 출고·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기간 : '08. 7. 1~'09. 6. 30

(3) 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조특법 §111의2)

※기 조치

현행	개정안
<p>■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게 대한 유류세 환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경형 승용차·승합차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기간 : '08. 5. 1~'09. 12. 31 	<p>■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톤 이하 자가용화물차(개인) (좌 등) 기간 : '08. 10~'09. 6월간 지원

개정이유 >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 '08. 10. 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개소령\$2의2)

현행	개정안
<p>■ 난방유 개별소비세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 90원/ℓ • LNG : 60원/kg • 프로판 : 20원/kg 	<p>■ 동절기 3개월('08. 12~'09. 2) 간 난방유 개소세율 30%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유 : 90원/ℓ → 63원/ℓ • LNG : 60원/kg → 42원/kg • 프로판 : 20원/kg → 14원/kg <p>* 탄력세율 활용</p>

개정이유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08. 12. 1일~'09. 2. 28일간 출고·수입분에 적용

3.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1) 물가안정을 위한 1·2차 긴급할당관세* 시행

※기 조치

* 물자의 수급원활·가격안정과 관련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제도)

■ 1차 긴급할당관세('08. 4. 1) : 총 82개 품목, 69개 품목 무세화

• 원유 등 가격인하 효과가 적으면서, 많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무세화

구분	1차 할당관세 품목별 시행내용
신규품목 무세화 (34개)	당밀, 밀기울, 팜박, 면실피, 밀전분, 커피크림용 카세인산염,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대두유, 농약원제, 요소, 무수암모니아, 파라베이스, 주석과, 페로실리콘, 마그네슘잉곳, 오산화바나듐, 재생스테이플섬유(비스코스레이온), 재생스테이플섬유(리오셀), 백금괴, 로듐, 철분, 전극봉, 코크스, 페로크롬 알루미늄박, 정제 동관, 석영유리, 막성장장치(OLED용), 도포기, 원피, 합판제조용 단판, 판유리제조용 성형기, 무늬목

기존품목 무세화 (35개)	유장, 매니옥칩(사료용), 밀(제분용),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걸보리(사료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가공용), 대두(채유및탈지), 사료용 근채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대두박, 면실박, 야자박, 향료, 매니옥칩(주정용), LPG, 유연처리가죽, 맥주맥, 맥아, 브라인슈림프알, 폴리락트산, 생사, 귀금속회, 페로니켈, 니켈분, 산화코발트, 코발트분, 납사제조용 원유, 동박, 니켈괴, 페로실리코망간, 건식식각기, 증착기, 금지금
신규품목 관세인하 (2개)	ABS 합성수지, 폴리스티렌
기존품목 관세인하 (11개)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설탕, 원유, LN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 2차 긴급할당관세('08. 8. 7) : 총 45개 품목, 41개 품목 무세화

구분	할당관세 시행내용
신규품목 무세화 (37개)	밀가루, 종자용 호밀, 사료용 귀리, 팜콘용 옥수수, 콘그리츠용 가공옥수수, 사료용 면실, 사료용 비트펠프, 사료용 주정박, 사료용 알팔파, 코코넛 분말, 코코아 원두, 식물성 경화유지, 조주정, 마그네시아, 형성, 아산화동, 탄산이나트륨, 탄화규소, 파라포름알데히드, DAS-형광염료, 멜라민, 염화시아놀, 가황 고무사, 견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니켈의 봉·선, 유리제 광학용품, 니켈의 판·시트·스트립·박, 알루미늄 괴, 망간, 메탄올, 이소노닐알콜, 이소데실알콜, 2-프로필헥실알콜, 부탄온, 무수트리멜리트산
기존품목 무세화 (4개)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AN)
기존품목 할당수량 증량 (3개)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기존 520천톤 → 875천톤), 향료(1,200톤 → 1,800톤), 농약원제(농약원제의 대상 품목에 화학제품인 포스파미돈, 모노크로토포스와 티람을 추가)
신규품목 관세인하 (1개)	중밀도 섬유판

(2) '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향 등을 보아가며 연장 추진

4.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소득법 §4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 일 8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인상 • 일 10만원

* 현행 공제 8만원은 '03년에 6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도모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영 §1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대상 : 비료, 농약, 사료,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일몰연장 : '11. 12. 31

개정이유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영 §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민박·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 •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액 • 기타 농가부업소득 : 연 1천 200만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 (좌 동) • 연 1천 800만원 이하로 확대

* 현행 한도 1,200만원은 '96년에 800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농가부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소득법 §105 등)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대상 : 비료, 농약, 사료, 농·축·임·어업용 기자재 등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일몰연장 : '01. 12. 31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소득법 §133①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 양도소득세 종합감면 한도 - 1년간 1억원 • 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 - 5년간 1억원* * 8년 자경농지 감면+농지대토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한도 확대 •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 감면에 대해서는 1억원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인정

개정이유 공익 목적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소득법 §88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노인 : 60세(여자 55세) • 한도 : 저축원금 3천만원 • 일몰 : '08. 12. 31까지 가입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 60세로 통일 • (좌 등) • 일몰연장 : '10. 12. 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적용시기 '09. 1. 1부터 적용

(5)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58, 법인법 §5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손실세액공제 • 적용대상 :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 공제액 계산방법 : 납부할 소득·법인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만큼을 공제 * 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확대 : 20% 이상으로 요건 완화 • (좌 등)

개정이유 재해를 겪은 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재해발생분부터 적용

II. 투자축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1. 법인세율 인하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법 §55)

※ 기 조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 과표 1억원 이하: 13% • 과표 1억원 초과: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 과표 2억원 이하 : ('08귀속) 11% → ('10귀속) 10% • 과표 2억원 초과 : ('08귀속) 22% → ('10귀속) 20%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대폭 확대

• 전체 법인의 90.4%가 2010년부터는 낮은 세율 (10%) 적용

* 낮은 세율 적용기업: 약 32만개(전체 35만개 법인의 90.4% 수준)

** 중소기업 법인 수('06신고 기준): 약 29만개

■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높은 세율을 대폭 인하

•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하에서 외자 유치 지원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최저한세를 인하(조특법 §132) ※ 기 조치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최저한세율 • 중소기업 : 감면전 과세표준×10% • 일반기업 -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 ×13% - 감면前 과세표준(1천억원~) ×15%	■ 법인의 최저한세를 인하 • 중소기업 : ('08/'09년) 8%, ('10년~) 7% • 일반기업 - ('08/'09년) 11%, ('10년~) 10% - ('08/'09년) 14%, ('10년~) 13%

* 최저한세제도 :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정이유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적용시기 '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①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세액공제제도 • 배당소득 가산율 (Gross-Up율) : 15% ($= \frac{\text{현행법인세율 } 13\%}{1 - \text{현행법인세율 } 13\%}$) *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 가산액 (배당소득×가산율 15%)]×기본세율-배당세 액공제 (배당소득가산액)	•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09년 소득분부터 : 12% - '11년 소득분부터 : 11%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지점세율
인하(법인법 §98, 소득법 §119)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25% *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 적용 ■ 지점세율 : 25% *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누적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	• 20%로 인하 • 20%로 인하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

적용시기 원천징수 : '09.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
지점세 : '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2. 중소기업 지원 확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지방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3개	•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

개정이유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문화산업 등 추가

적용시기 '09.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조특법 §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감면 : 소득세·법인세의 10~30% (중기업은 5~15%)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11. 12. 31(3년)

*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산감면제도

개정이유 ▶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적용시기 ▶ '09. 1. 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77, 법인법 §64, 상증법 §7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법인세 등 분납 기한 • 소득세 : 45일 • 법인세 : 중소기업은 45일 (일반기업은 1월) • 상속·증여세 : 4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기한 연장 • 2월 • 중소기업은 2월 (일반기업은 1월 유지) • 2월

개정이유 ▶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 '09. 1. 1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 지원 : 양도소득세(법인세) 2년 거치 2년 분할과세 • 사후관리 :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 적용기간 : '09.01~'11. 12(3년) 	

개정이유 ▶ 공장 증설 등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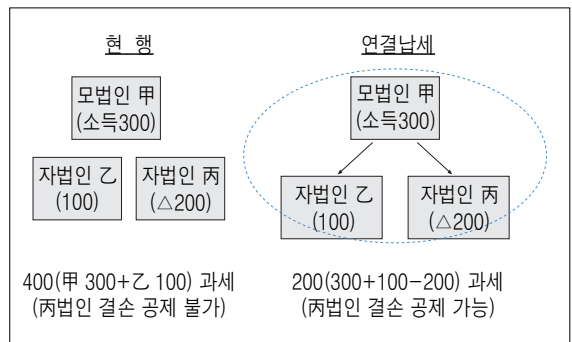
적용시기 ▶ '09. 1. 1 이후 최초로 공장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1) 연결납세제도 도입(법인법)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OECD 국가 중 21개국에서 도입 운용중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범위) 100% 자회사 *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의 경우 지분비율 판정 시 5% 이내 예외 인정 •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 100%자회사는 모두 연결강제 • (적용방법) 기업이 선택하되 5년간 계속 적용 	

개정이유 ▶ 경제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방식 적용

• 기업의 조직형태(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 '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연결과세표준·세액 계산 및 신고·납부

현행	개정안
<신설>	<p>■ 연결과세표준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연결수정*을 하여 수정소득금액(결손금 포함)을 산출하고, 이를 통산하여 연결소득금액 계산 * 연결수정 :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손익 제거 및 기부금, 접대비 재계산 등 연결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조정 •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결손금은 연결 후 해당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제 -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100% 출자관계가 성립한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은 취득후 5년간 해당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p>■ 연결세액의 계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세액에 가산 - 조세특례는 연결법인별로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연결법인세액에서 차감 •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 연결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p>■ 신고·납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의무는 연결모법인이 부담하되, 연결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적용시기 '1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인법 §13·116, 소득법 §45·160의2, 기본법§26의2, §85의3)

현행	개정안
<p>■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손금을 발생 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으로 연장 * 장부·지출증빙 보관 및 부과 제척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5년 ▶ (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 연장 적용받는 해당기간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 주요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일본) 7년, (핀란드·아이슬란드·멕시코) 10년
(미국) 20년, (영국·독일) 무제한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부가법 §4·5)

현행	개정안
<p>■ 부가가치세 과세단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사업장단위과세 • 예외 :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허용 - 적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RP(전사적자원관리) 설치 사업자 ▶ 본점·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 사업자단위 과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 제도 선택시 5년간 포기 제한 	<p>■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 과세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사업자에게 선택 허용 - 폐지 - (좌 동)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부합(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시켜 사업자의 부담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0.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홍보 등 시행 준비 기간(1년)을 감안

(4)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법인법 §18의2·18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지분비율에 따라 30~100%) 비과세 • 다만, 배당지급법인(자회사)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비과세 혜택 일부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 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비과세

개정이유 ▶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 '09.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조특법 §112, 112의2, 104의12) ※ 기 조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2,000원 부과(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19,200원) * 관광진흥기금 3,000원 별도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10년말 일몰) * 교육세, 농특세 및 관광진흥기금도 면제 •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한 중부세 등 과세 • 중부세 : 종합합산(1~4%) • 재산세 : 종합합산(0.2~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존지에 대해 '10년말까지 경감 • 중부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0.8%, 200억원 초과분) • 재산세 : 별도합산(0.2~0.4%) * 지방세법시행령 기 개정('08. 6.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 • 개발지에 대한 재산세 : 4% • 취득세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경감 • 개발지에 대한 재산세 : 2% • 취득세 : 2% * 지방세법 개정사항

개정이유 ▶ 서비스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 (개별소비세)'08. 10. 1 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중부세)'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부가영 §26①5의3) ※ 기 공포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07. 7. 1~'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 적용기한 : '09. 1. 1~'09. 12. 31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 공포일~'09. 12. 31

개정이유 ▶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 공포일('08. 7. 24)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

(3)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① R&D 지원대상에 문화산업 추가(조특영, 조특규칙)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건본품·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등 • 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추가 *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문화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개정이유 ▶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제제를 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시기 ▶ '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136

③)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 일몰: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10. 12. 31

개정이유 문화·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조특법 §11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 대상: 국내제작이 곤란한 53개 디지털TV 방송장비 • 감면: 관세액의 50% • 일몰: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10. 12. 31

개정이유 TV방송(지상파·케이블·위성)의 디지털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보완(조특법 §104의 1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지분출자 - 외국자회사(지분 100%)의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증자·금전대여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동투자 방법 추가 :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 내국인과 공동투자하는 경우 추가 * 3년 이내 광업권·조광권 미 취득시 추정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조특법 §14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저광물자원의 탐사·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세 • 일몰: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13. 12. 31

개정이유 고유가 극복을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1)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①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25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저공해자동차연료공급시설, 방음·방진시설, 우수처리·수질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등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10%로 인상

개정이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25의2) ※ 기 조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일몰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20%로 인상 • 일몰연장 : '09. 12. 31

개정이유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10% 공제율 적용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109)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하이브리드차 *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사용 • 면제한도 : 대당 감면세액 한도 100만원 * 교육세 포함시 대당 한도 130만원 • 일몰 : '12. 12. 31

개정이유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

적용시기 '09. 7. 1 이후 출고·수입분부터 적용

(3) 시험·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개소법 §18 ①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용 및 환자수송전용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택시) • 자동차대여사업용(렌트카)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제 대상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승용자동차

개정이유 연비 제고, 친환경적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4)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감감

①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자재 관세감면 확대(재정부령)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50%) • 대상 :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확대 * 세부품목은 부처 신청을 받아 확정할 계획

개정이유 고유가 등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자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②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 사후관리 제외(관세규칙 §5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감면(50%)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 항공기 제조·수리용 부분품 또는 원재료 • 방산제품 제조·가공용 부분품 및 원재료 • 방산제품 연구·개발용 시험 분석용품 및 견본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 물품 * 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

개정이유 용도 외 사용가능성이 낮은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3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6.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조특법 §121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외국인투자(예:제조업 3,0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 지원내용 : 7년간 법인세 등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절차 간소화 •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는 외투자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지역위원회, 제주종합계획심의회

개정이유 대규모 외국인투자시 감면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

(2) 보세구역 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조특법 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구입한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시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양도시 과세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보관 후 양도시 원천징수 면제 * 자유무역지역 포함

개정이유 인천공항 등의 물류 허브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정비

①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개선(소득법 §17, 소득영 §23, 조특법 §91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p>*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는 동업기업과세제도* 적용 허용 *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원활한 시행 지원

적용시기 '09. 2. 4(자통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간접투자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개선(소득영 §23·4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 매년 1회 이상 결산하여 소득세 과세(배당소득)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천별로 과세시기 달리 적용 • 이자·배당·투자자산 매매차익 : '현행과 동일' • 투자자산 평가차익 :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 중 선택

개정이유 “투자자산 평가차익”의 연도별 변동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시기 선택권을 부여

적용시기 '09. 4. 1 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법인법 §7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폐지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도관으로서의 특성 및 납세편의를 감안

적용시기 '09. 1.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조특법 §117① 3, 4, 5, 10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펀드에 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09. 12. 31

개정이유 간접투자를 통한 증시안정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접대비 개념 명확화

①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신설
(법인영 §19, 소득영 §5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중 -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입비의 경우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 *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줄 수 있는 식별가능 품목 등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범위 명확화를 통한 기업의 세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 등 요건 명확화(법인영 §42, 소득영 §8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명확화 ① 사전약정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 ②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지출 - 정부정책(권고)을 이행하는 경우 등 * 농촌 가스보일러 교체, 신권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금인출기 교체 등

개정이유 판매관리비 및 접대비 등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적용시기 '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현지 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국조법 §18④, 국조영 §36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판매법인(도매업)의 경우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매입요건> • 현지판매법인과 동일지역(동일국가또는EU)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 <매출요건> • 동일지역(동일국가 또는 EU)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제외요건 완화 (삭제) * 동일지역 매입요건 폐지 예) EU판매법인이 중국 제조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EU국가에 판매시에도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제외(좌 등)

* 조세피난처세제 :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유보하는 경우 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실정을 감안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Ⅲ.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1. 준비단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조특법 §9)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준비금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 준비금 익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한 금액은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 날 전액 익금산입 * 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일몰 : '13. 12. 31(5년)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 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투자단계

(1)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 §11)

※ 기 조치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의 10%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비용지출 단계

(1)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조특법 §1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15%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50% ■ 대기업(Max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지출분×(3%+α, 6% 한도) * 매출액 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②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40% ■ 일몰 : '09.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25% • (좌 동) ■ 대기업(Max ① 또는 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적용요건 완화 :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 (좌 동) ■ 영구화(일몰 폐지)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 지원제도를 영구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 단계

(1)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04의1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하여도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허용 * 투자금액의 7% → 10%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학으로 확대

개정이유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09.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 (조특법 §104의1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허용 * 맞춤형 교육 : 기업과 교육기관 간 계약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직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대학으로 확대

개정이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7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 소득금액의 75% * 09년 이후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소득금액의 100%로 확대 ('10년까지)

개정이유 대학의 R&D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부가영 §37)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10. 12. 31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18조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② 17% 단일 특례세율 적용 * 각종 비과세·공제는 적용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① (좌 동) ② 특례세율을 15%로 인하

개정이유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단기거주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소득법 §1·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에 대하여 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 * (거주자 요건)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10년 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세 * 국내원천소득은 모두 과세

개정이유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IV.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 \$154①, \$15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보유 및 2년 거주* *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거주요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 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적용시기

- ①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9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등) ② 1세대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 공제 * 3년 이상 보유시 적용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확대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증과제도(50·60%) 합리화

-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167의5①1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2주택자 증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광역시 : 1억원 이하 * 종과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 포함 •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 종과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 * 종과여부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 (좌 등)

개정이유 다주택자 증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영 §167의3①, 법인영 §92의2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호수 : 5호 이상 • 면적 : 85㎡ 이하 • 의무임대기간 : 10년 •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호 이상 • 149㎡ 이하 • 7년 • (좌 동)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소득영 §167의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② 1년 이상 거주 ③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시 2주택자 중과 배제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요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취학, 장기요양 추가 ② · ③ : (좌 동) ④ 취득시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 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소득법§104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9%	1,200만원 이하	6%
1천만~4천만원	18%	1,200만~4,600만원	15%
4천만~8천만원	27%	4,600만~8,800만원	24%
8천만원 초과	36%	8,800만원 초과	33%
* '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도에 1%p 추가 인하			

* '04년 이전까지 양도세 및 종소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동일
 → '05년 종소세 세율인하 및 '08년 종소세 과표조정에 따라 차이 발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168의14③, 법인영§92의11③)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매수·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정 고시일이 '06. 12. 31 이전인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 *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97④, §101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증여세율 인하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중부법§9②, §14②)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 '06년 : 70% • '07년 : 80% • '08년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적용률 - '07년 수준(80%)으로 동결

개정이유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중부법§10·§15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부담 상한 • 금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세의 300% 초과시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 보유세 산출 방법 - 표준세율 적용+세부담 상한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 적용비율 : 300% → 150%

개정이유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중부법 §20)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기한 • 4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기한 연장 •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대상 •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납대상 확대 •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조특법 신설)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정

개정이유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에 사용하지까지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 확대 및 기간 연장(종부령 §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부세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 (신설) • 비과세기간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주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추가 • 비과세기간 연장 : 5년* * 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개정이유 최근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업의 세 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상속세의 현실화

(1)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 §26)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09 '10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7% 6%
1억~5억원	20%	5억~15억원	16% 15%
5억~10억원	30%	15억~30억원	25%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4% 33%
30억원 초과	50%		
* 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개정이유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

율이 가장 높은 국가

•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15개국)	상속세율>소득세율 (5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국(40%) • 프랑스(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 일(30%) • 터 키(30%) • 벨기에(30%) • 아일랜드(5%) • 네델란드(27%)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 국(50%) • 일 본(50%) • 미 국(45%, '08년) • 덴마크(36.25%) • 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 · 캐나다 · 포르투갈 등

*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 '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포르, 이탈리아, 스페인

* 미국은 '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법 §18, 상증영 §1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 공제한도 : 3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 80%이상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사 취임 • 추정사유(10년간 사후관리) - 가업용자산 20%(5년 10%) 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1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2년*으로 완화 *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 (좌동)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 취임 • 추정사유 보완 • (좌동)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예외 인정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상증법 신설)

현행	개정안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1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요건 -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 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 공제금액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개정이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V.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1. 3대 목적세 정비

(1)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교통세법, 개소법 §1 ②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유류세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경유 • 개별소비세 : 여타 유종 • 교통세·개별소비세에 교육세 15% 부과 * LNG·LPG프로판 제외 ■ 유류세율 현황*(원/ℓ)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유가대책에 따른 개정세율 (6월 국회제출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류세 체계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개별소비세에 통합 • 교육세 폐지, 본세 통합 ■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 인상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교통세/개소세</th> <th>교육세</th> <th>주행세</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휘발유</td> <td>475 (462)</td> <td>15%</td> <td>30%</td> <td>670</td> </tr> <tr> <td>경유</td> <td>340 (328)</td> <td>15%</td> <td>30%</td> <td>476</td> </tr> <tr> <td>등유</td> <td>90</td> <td>15%</td> <td>-</td> <td>104</td> </tr> <tr> <td>중유</td> <td>17</td> <td>15%</td> <td>-</td> <td>20</td> </tr> <tr> <td>부탄</td> <td>210 (147)</td> <td>15%</td> <td>-</td> <td>169</td> </tr> <tr> <td>프로판</td> <td>12</td> <td>-</td> <td>-</td> <td>12</td> </tr> <tr> <td>LNG</td> <td>35</td> <td>-</td> <td>-</td> <td>35</td> </tr> <tr> <td>부생유</td> <td>66</td> <td>15%</td> <td>-</td> <td>76</td> </tr> </tbody> </table>		교통세/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합계	휘발유	475 (462)	15%	30%	670	경유	340 (328)	15%	30%	476	등유	90	15%	-	104	중유	17	15%	-	20	부탄	210 (147)	15%	-	169	프로판	12	-	-	12	LNG	35	-	-	35	부생유	66	15%	-	76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개소세</th> <th>주행세</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휘발유</td> <td>550 (549)</td> <td>22%</td> <td>670</td> </tr> <tr> <td>경유</td> <td>391 (390)</td> <td>22%</td> <td>476</td> </tr> <tr> <td>등유</td> <td>104</td> <td>-</td> <td>104</td> </tr> <tr> <td>중유</td> <td>20</td> <td>-</td> <td>20</td> </tr> <tr> <td>부탄</td> <td>242 (169)</td> <td>-</td> <td>169</td> </tr> <tr> <td>프로판</td> <td>12</td> <td>-</td> <td>12</td> </tr> <tr> <td>LNG</td> <td>35</td> <td>-</td> <td>35</td> </tr> <tr> <td>부생유</td> <td>76</td> <td>-</td> <td>76</td> </tr> </tbody> </table>		개소세	주행세	합계	휘발유	550 (549)	22%	670	경유	391 (390)	22%	476	등유	104	-	104	중유	20	-	20	부탄	242 (169)	-	169	프로판	12	-	12	LNG	35	-	35	부생유	76	-	76
	교통세/개소세	교육세	주행세	합계																																																																														
휘발유	475 (462)	15%	30%	670																																																																														
경유	340 (328)	15%	30%	476																																																																														
등유	90	15%	-	104																																																																														
중유	17	15%	-	20																																																																														
부탄	210 (147)	15%	-	169																																																																														
프로판	12	-	-	12																																																																														
LNG	35	-	-	35																																																																														
부생유	66	15%	-	76																																																																														
	개소세	주행세	합계																																																																															
휘발유	550 (549)	22%	670																																																																															
경유	391 (390)	22%	476																																																																															
등유	104	-	104																																																																															
중유	20	-	20																																																																															
부탄	242 (169)	-	169																																																																															
프로판	12	-	12																																																																															
LNG	35	-	35																																																																															
부생유	76	-	76																																																																															

* 괄호안은 탄력세율

개정이유 복잡한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

적용시기 '10. 1. 1 이후 제조장 반출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2)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교육세법)

현행	개정안
<p>■ 교육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 - 자동차분 : 개별소비세액*의 30% <p>* 1,000~2,000cc : 5%, 2,000cc 초과 : 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 금융보험업자* 수익금액의 0.5% * 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농·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미등록대부업자, 환전업자 	<p>■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에 통합 -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FTA 발효시 협정에 따라 세율 조정 <p>* 1,000~2,000cc : 6.5%, 2,000cc 초과 : 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에 통합 • 주세에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 금융), 수출입은행을 과세대상에 추가 •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업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자산운용·신용카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

개정이유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

* 과세형명 측면에서 증권·카드·여신전문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0. 1. 1 이후 과세원인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금융보험업 대상 확대는 '09. 1. 1 이후부터 적용

(3)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농어촌특별세법)

현행	개정안
<p>■ 농어촌특별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감면분 - 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액의 20%(저축은 10%) - 조특법상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 -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 • 증권거래세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 양도가액의 0.15% • 개별소비세분 - 고급가구·모피·골프용품 등 물품 및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10% (골프장은 30%) • 종합부동산세분 - 종부세 납부세액의 20% • 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 -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 (취득세율) 2.0%, 6.0%, 10.0% * (레저세율) 10% 	<p>■ 농어촌특별세 본세 흡수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세 흡수통합 - 공제율 및 감면을 하향조정 • 본세 흡수통합 -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을 0.3%로 인상 • 본세 흡수통합 • 본세 흡수통합대상에서 제외 * 과도한 높은 세율(통합 4.8%) 시정 • 본세(지방세)로 흡수통합 * 지방세분 농특세(약 1조원)는 지자체에 이양하는 효과 발생 * (취득세율) 2.2%, 6.6%, 11.0% * (레저세율) 12%

개정이유 독자적 세원이 없는 Sur-tax 방식의 과세 구조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10. 1. 1 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2. 기타 과세체계 정비

(1)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폐지(34건 중 17건, 50%)

조세감면 내용	이유
<폐지대상> 11건	
①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상가 등 일반관리 용역과 형평성
②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 농협중앙회 등은 70%(일반 50%)	• 실효성이 낮은 감면한도 축소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 거주자가 출자시 투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정책목적 달성 • 소득공제 취지에 배치
④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50% 감면	• 목적달성, 외환위기 시 한시적 도입
⑤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 '00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김포매립지) 양도시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	• 목적달성 • 매각완료
⑥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 철도청으로부터 포괄승계받은 고속철도 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	• 목적달성 • '08. 1기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 완료
⑦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 대체선박의 취득에 사용한 종전 선박 양도차익 상당액을 대체선박 감가상각때까지 과세이연	• 통제도입으로 지원 실익 감소
⑧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지식기반 인적회사(합명·합자회사)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비과세	• 동업기업(partnership) 과세특례제도 도입으로 대체
⑨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 투자자산의 90% 이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분리과세	• 실제 운용사례 없음
⑩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 양도 후 대체취득하는 경우 개인 50% 감면, 법인 3년 분할	• 지원실적 미미
⑪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 경감 : 운전기사 복지재원으로 사용	• 과세형평 저해

조세감면 내용	이유
<축소대상> 6건	
⑫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9%저율 분리과세 적용대상 저축 가입한도 (20세 이상) 2천만원 → 1천만원 (노인·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 6천만원 → 3천만원	• 계층간 과세형평 저해
⑬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 액면가액 3억원 이하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 5% 분리과세	•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⑭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 5% 분리과세 : 액면가 3억원 이하 → 1억원 • 14% 분리과세 : 액면가 3억원 초과 → 1억원	• 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⑮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 기간 확대(1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	• 고액자산가에 혜택
⑯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08년까지) 액면가액 3,000만원 ('09년이후) 액면가액 1,800만원	• 당초 일정대로 축소
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 투자원금 3억원 이하 ('08년까지) 비과세 ('09-'11년까지) 5% 분리과세	• 당초 일정대로 축소

(2)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부가영 §28~3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필품, 교육·의료·금융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 • 미가공식품, 수돗물, 대중교통운송용역 • 교육용역, 의료·보건용역 • 금융·보험용역 • 도서·신문·방송, 예술창작품, 문화·예술 인적용역 • 주택임대 등 * 세부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전환 •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 *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금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

개정이유 EU 등 선진국에 비해 넓은 면세범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

* 예시 :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무도학원 등) 등

적용시기 '09. 7.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

(3)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12·14·21, 소득영 §41·87)

현행	개정안
<p><신설></p>	<p>■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 (양도가액-필요경비)×원천징수세율 20% 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회화·대생 등 미술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비과세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골동품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박물관·미술관에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의제 필요경비 공제 * (10년 미만) 양도가액의 80%, (10년 이상) 90%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국제 과세기준 부합

※ 외국의 개인 미술품 과세제도

(미국, 일본) 종합소득세 (영국) 자본이득세 (프랑스) 거래세

적용시기 '10. 1. 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개소법 §1①⑤·§4·§8①)

현행	개정안
<p><신설></p>	<p>■ 카지노 사업자 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대상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과세표준 : 순매출액(총매출액 - 상금 지급금액) 세율 : 20%* * 현행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은 폐지

개정이유 신규세원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등 고려

•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내외의 세율 부과

구분	세율
미국(미시간)	순매출액의 24%
미국(미주리)	순매출액의 20%
캐나다(온타리오)	순매출액의 20%
영국	순매출액의 2.5% ~ 40%
네덜란드	순매출액의 33.33%
마카오	순매출액의 35%

적용시기 '09. 1. 1 이후 매출액부터 적용

Ⅶ.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1. 납세자 권익보호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기본법 §48)

현행	개정안								
<p>■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경정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p> <p>•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납부시 가산세액의 50% 감면</p>	<p>■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table border="1"> <thead> <tr> <th>법정신고기한 경과 후</th> <th>가산세 감면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6개월 이내</td> <td>50%</td> </tr> <tr> <td>6개월 초과~1년 이내</td> <td>20%</td> </tr> <tr> <td>1년 초과~2년 이내</td> <td>10%</td> </tr> </tbody> </table> <p>•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포함 *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20%	1년 초과~2년 이내	1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가산세 감면 비율								
6개월 이내	50%								
6개월 초과~1년 이내	20%								
1년 초과~2년 이내	10%								

개정이유 납세자의 자기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 신고 유도

적용시기 '09. 1. 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국조법 §13, 국조영§2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다음의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 상호합의에서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방법 추가 • (좌 등) •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입증자료를 보관·비치한 경우로서, - 동 산정방법의 선택·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과실 없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3) 조세불복제도 보완

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기본영 §63의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 세무조사결과 서면 통지 •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 (좌동) •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적용 범위 확대

개정이유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예고통지부터 적용

②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기본법 §81의1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기결정신청제도 신설 • (좌 등)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개정이유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

적용시기 '09. 1. 1부터 적용

③ 국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기본법 §56·64·66·81의1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소관 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소관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설치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09. 1. 1부터 적용

④ 관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관세법 §45·118·324)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소관 위원회 • 관세심사위원회 •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관세포상심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 • (좌 등) •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 (단, 세관소속 위원회는 존치) • 폐지 (단, 세관소속 위원회는 존치) • 폐지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09. 1. 1부터 적용

(3)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①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완화(징수법 §7②)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 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 다만, 천재·지변·화재 기타 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 인정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허사업 제한 완화 •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 예외 예외 인정

개정이유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09. 1. 1 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②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징수법 §61④)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제한사유 •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제한사유 확대 • (좌 동) •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를 추가

개정이유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 방지

적용시기 '09. 1. 1 이후 공매분부터 적용

(4)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①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관세법 §22)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 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매제한사유 확대 • 5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과 일치)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분 및 기발생분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부터 적용

② 관세 납부기한 연장제도 개선(관세영 §2①)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1년 미만) • 천재·지변 •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 • 사업에 현저한 손실 •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 사후경정·수정신고에 의한 세부담의 현저한 증가

개정이유 세관의 일괄추징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분부터 적용

2. 납세협력비용 감축

(1) 신고·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① 개별소비세 신고·납부횟수 축소(개소법 §9①, ④,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납부기한 및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신고납부 - 익월 말일 • 폐업시 : 폐업일로부터 10일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횟수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5, 7. 25, 10. 25, 익년 1. 25 *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 폐업일로부터 25일내* *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09. 1. 1 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② 상속·증여세신고납부기한 조정(상증법 §67·68)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 증여세 : 증여일로부터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③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납부기한 통일(증권거래세법 §10①)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거래세 : 다음달 10일까지 •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납부기한 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09.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납부 허용(증권거래세법 §10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증권회사 사업장별(본점, 지점 각각)로 신고·납부 • 예외 : 국제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일괄납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괄 신고·납부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괄 신고·납부 허용 * 사업장별 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도모

적용시기 '09. 1. 1 이후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적용

(2)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85의3)

현행	개정안
<p>■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p>	<p>■ 장부·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 실물보관의무 면제 *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변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09. 1. 1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영 §186, 법인영 §115)

현행	개정안
<p>■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외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 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납부 허용 	<p>■ 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근로소득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 1. 1 이후 신청하여 승인·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4)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기본법 §47의3)

현행	개정안
<p>■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 부당과소 : 40% 	<p>■ 다음의 경우 상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 평가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경우 • 배우자공제 등 상속·증여공제를 잘못 적용하여 신고한 경우 •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상속·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시가 적용 차이 등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상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인법 §115·76)

현행	개정안
<p>■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 터 6월 이내에 제출 •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 가산세 부과 	<p><삭제></p>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소득영 §16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 및 종교재단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05. 1. 4 이전에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의 소유로 보아 종부세 신고가능 • 종부세 납부기간(12. 1~12. 15) 중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 * 실무상 재단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6~9. 30 기간중 제출

개정이유 양도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7)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조특영 §104의13)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교 및 종교재단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를 '05. 1. 4 이전에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개별 향교 및 종교단체의 소유로 보아 종부세 신고가능 • 종부세 납부기간(12. 1~12. 15) 중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 * 실무상 재단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 16~9. 30 기간중 제출

개정이유 향교재단 등의 납부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부가법 §16·20·22, 조특법 신설)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p><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 공제방법 : 세액공제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10년부터 시행

(2)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①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조특영 §121의5)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 대상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 • 신고기한 : 거래일부 1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업종으로 확대 • 1개월로 확대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법 §20의2, 부가영 §67의2)

현행	개정안
<p>■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15개업종*) *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 <p>· (좌 동)</p>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9.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③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 (소득법 §81 · §160의5)

현행	개정안
<p>■ 사업용계좌 개설 · 신고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전문직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 *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p>■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 · 신고기한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p>■ 가산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금액의 0.5% · 미개설가산세 :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p>■ 가산세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2%로 완화 · 0.2%로 완화
<p>■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 · 보관 의무</p>	<p>■ 거래명세서 작성 · 보관 의무 폐지</p>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09. 1. 1 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09. 1. 1 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 외 거래명세서는 '09. 1.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④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연장(조특법 §122)

현행	개정안
<p>■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수입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 전년 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 일몰 : '08.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일몰연장 : '10. 12

개정이유 과표가 양성화되는 성실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09.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귀금속산업 세원양성화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조특영 §106의9①)

현행	개정안
<p>■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물품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에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을 추가 *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

개정이유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제도 합리화 :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제한 (농림특례 §15①2호)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 • 농업용 난방기의 종류 - 직화식 온풍난방기 -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 온수 보일러 • 면세유 공급유종 :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경유는 제외

개정이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유종을 제한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9. 7. 1 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 (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09. 7. 1 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4)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관세법 §4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산세 • 부속세액의 10% • 가산세 상한 : 세액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가산세제도 개선 • 부당한 방법*의 경우 부속세액의 40%로 강화 *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작성·수취, 장부·기록의 파괴, 재산은닉 등 • 가산세 상한 폐지

개정이유 악의적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납세 기반 조성(내국세 가산세제도와 일치)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국가균형발전 지원

(1)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조세법 §121의9)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달러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비 1억달러 이상 • 감면내용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 감면내용 - 국내기업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개정이유 외국인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조세특정 §116의21)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요건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달러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천만달러 • 내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물류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요건 완화 -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2백만달러 이상 - 기타업종 : (좌 동) -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좌 동)

개정이유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60·61·63·63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 :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11.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시 소득·법인세 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 일몰 : '0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연장 : '11.12.31

개정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 '09.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행복도시 등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 (조특법 §85의2)

현행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내 본사·공장 등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이전시 세제지원 •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5년 거치 5년 분할과세 - 개인 : 과세이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동) • 이전 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 50% 감면

개정이유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 사업전환 및 지방 창업시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시기 ▶ '09. 1. 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 이 자료는 2008년 9월 1일 세제실 조세분석과에서 발표한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08. 9. 1일 오전 고위당정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반영한 세수효과 및 세부담귀착 변동사항

1. '08년 세제개편 세수효과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① 이번 고당협의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결과

- '09년 기준 세수효과는 당초안(△14.2조원)보다 2.5조원 감소한 △11.7조원(소득세 △4.6조원, 법인세 △2.8조원, 상증세 △0.6조원, 개소세 △0.7조원, 관세 △0.8조원 등)

(단위 : 억원, '09년 누적기준)

	당초안	수정안	차액
◇ 합계	△14조 2,350	△11조 6,850 ¹⁾	+2조 5,500
• 법인세율(높은세율) 인하 1년 연기	△5조 3,970	△2조 5,730	+2조 8,240
• EITC 확대	-	△1,200	△1,200
• 기타 세수효과 조정 ²⁾	-	-	△1,540

주: 1) 유가환급금 등 일시적 감세효과(△3.6조원) 포함

2) 가용한 최신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존 세수효과를 일부 수정

<주요 수정 내용>

① (법인세 높은세율 인하 1년 연기)+2.8조원

② (EITC 확대) △1,200억원

* 지급금액 확대 : 최대 80만원 → 120만원

* 신청자격 완화 : 무주택자 → 1주택자(공시가격 5천만원 이하)

② '08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 : 총 △21.3조원

(단위 : 조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감세효과	△1.9	△6.2	△9.8	△3.3	△0.1	△21.3

주: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010억원(고유가대책, '08. 7~'09. 6월)은 별도

※ 세목별

(단위 : 조원)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개별소비세	관세	기타	계
△5.8	△9.8	△0.9	△0.6	△0.8	△3.4	△21.3

2. '08년 세제개편 세부담귀착 변동사항(고위당정협의 결과 반영)

- 세부담 귀착 : 전체 감세의 58%가 중산서민층·중소기업에 귀착

구분	합계	비중(%)
① 중산서민층 ¹⁾	△5조 1,330	43.9
- 근로자	△3조 1,650	27.1
- 자영자	△1조 9,680	16.8
② 중소기업	△1조 6,650	14.3
③ 대기업	△1조 8,710	16.0
④ 기타 ²⁾	△3조 160	25.8
◇ 합계	△11조 6,850	100.0

주: 1) 소득세는 과표 8,800만원 이하만 중산서민층에 배분

2) 기타 :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양도세,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분 등)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

- 대상인원 139만명, 환급금액 711억원 -

* 이 자료는 2008년 9월 5일 국세청 소득세과에서 발표한 「신고하지 않은 세금까지도 국세청에서 찾아드립니다」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I. 세정 역사상 처음, 영세사업자 일괄 「세금 찾아주기」 시행

- 국세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줌으로써,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은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해 초과납부한 세금을 찾아가지 못한 납세자에게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 되돌려 주는 것임

※ 대상인원 : 139만명, 환급금액 : 711억원

- 주요 대상자는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업자들임
- 이번 「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임

- 앞으로,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II. 환급대상자 및 환급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대상자

- 환급대상자는 139만명, 환급건수는 175만건임

귀속연도	합계	'05귀속	'06귀속	'07귀속
환급건수(천건)	1,745	547	601	597

* 환급대상자는 연도별 중복인원을 제외한 것으로, 연도별 환급건수의 합계와는 차이가 남

- 환급대상자의 주요업종은 화장품 · 서적 · 정수기 등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임

* 해당 사업자들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사업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수입금액의 3%)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되는데, 이 원천납부한 소득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되는 것임

■ 환급규모

- 최근 3개년('05귀속~'07귀속) 동안 실제 부담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사업소득 원천납부세액으로, 약 711억원임

귀속연도	합계	'05귀속	'06귀속	'07귀속
환급세액(억원)	711	251	238	222

III. 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급금통지서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이번 환급대상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송하였음

* 귀속연도별 10만원 이상 환급자는 등기우편에 의해, 10만원 미만 환급자는 일반우편에 의해, '08. 9. 1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음

- 받으신 국세환급금통지서 중앙 좌측의 「환급내용」란에 환급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 국세환급금통지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조회계산⇒국세환급금 찾기에서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 가능

* 이번 환급대상자에게는 제외되어 있으나, 원천납부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음

- 환급금액은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 국세환급금통지서의 「환급내용」에 기재된 금액은 실제 부담할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것으로, 실제 환급액임

소득세 환급금 계산

$$(수입금액^1 \times 소득률^2 - 소득공제^3) \times 세율 - 기납부세액^4 = 소득세환급금$$

*1 : 지급받은 사업소득 총액으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포함함

*2 :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1-단순경비율)×배율 또는 (1-기준경비율)이 소득률임

*3 : 소득공제는 가족 수·국민연금보험료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4 : 기 납부세액은 원천징수세액 및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임

IV. 환급금은 환급계좌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①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 계좌이체(1)

- 국세환급금통지서의 「환급금수령방법」란에 계좌가 기재되며, 환급금이 9월 1일 계좌이체방식으로 입금되었음

②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우체국에서 수령(2)

- 국세환급금통지서의 「환급금수령방법」란에 우체국에서 지급된다는 내용이 기재되며, - 9월 8일 이후 수령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음

③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 - 계좌개설 후 이체(3)

- 우체국을 방문하시기 곤란한 경우에는
 - ① 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 입금요구서 겸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보내시거나,
 - ②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로 계좌를 신청하시면 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조회계산 ⇒ 국세환급금 찾기 ⇒ 환급금 조회 ⇒ 환급신청(은행, 계좌번호, 연락처 기재)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재해취약지역의 사전 예방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

* 이 자료는 2008년 9월 4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발표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 예고」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특별교부세에 사전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 마련, 특별교부세 시책 수요 신설 및 2008년 기간이 만료되는 도로보전분 교부세를 2011년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5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특별교부세로 재해예방사업을 지원하여 각종 재해·재난에 사전 대비하고, 특별교부세 시책 수요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점시책 및 국가와 지방의 정책연계사업 등을 중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도로보전분 교부세의 지원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특별교부세에 재해예방사업 지원근거를 마련

- 재해예방사업비는 국고에서 우선 사용토록 하되, 재해대책수요분 특별교부세의 집행잔액이 남을 경우 재해예방사업에 지원

* 현행 재해대책수요분 특교세의 경우 재해로 인한 사후 복구 소요 예산으로 교부, 재해취약지역의 긴급한 사전 예방사업의 지원에 한계

② 현행 특별교부세 지역현안 수요를 일부 축소, 시책 수요 신설

- 지역 역점시책, 국가·지방 간 시급한 연계 협력

사업 및 국가적 장려사업 등을 중점 지원하여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 추구

* 지역현안 수요 일부를 축소(현안: 50%→현안: 30%, 시책: 20%)

현행	재해대책 (50/100)	→	현행	재해대책 (50/100)
	지역현안 (50/100)			지역현안 (30/100)
				시책수요 (20/100)

③ 도로보전분 교부세 지원기간을 당초 4년(2005~2008년)에서 7년(2005~2011년)으로 3년 연장 - 지방양여금 폐지 당시 이미 계획된 도로사업을 마무리하고, 노후·위험교량 개·보수, 국가기반 시설 연계도로 건설 등 새로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지역SOC의 안정적 구축

* 도로보전분 교부세란 지방도로 정비사업 재정지원 방식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에서 지방교부세로 변경됨에 따라 - 이미 계획되어 시행중인 도로정비사업의 완공 및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05~'11년까지 매년 8,500억원을 지방교부세 재원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재원임

■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부처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 개정안을 확정된 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 시행

- 명확한 세법 해석 ⇒ 세무문제 불확실성 제거 ⇒ 신속한 의사결정 ⇒ 기업투자 활성화 -

* 이 자료는 2008년 9월 17일 국세청 법규과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도입 · 시행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국세청은 세법 해석과 관련 세무문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기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 납세자가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해 사전(법정신고 기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오는 10월 1일부터 도입 · 시행하기로 하였음
 - * 특정한 거래 : 이미 개시되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개시될 것이 관련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거래
-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세법 해석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누락 · 왜곡하거나 가 · 차명으로 질의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한 측면이 있었으며
 - 답변을 하더라도 실제 거래내용과 다른 경우가 있어 그대로 과세 여부를 결정짓기가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음
- 앞으로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되면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세법 해석을 통해 과세전 단계부터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며
 -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 주요내용

① 제도 개요

-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는 과세관청이 세법 해석의 적용에 대해 명확히 답변한 경우, 답변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구속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따라서, 납세자가 세법 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하였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무문제로 인한 기업애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임

② 신청인

- 특정한 거래와 직접 관련 있는 사업자(장래의 거래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자를 포함)가 신청함
 - * 사업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또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상 사업자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

③ 신청대상

- 신청인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에 대한 세법 해석을 신청대상으로 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신청대상이 아닌 사항

- 신청인에 대한 세법 적용과 관련 없는 사항
- 가정의 사실관계 및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
- 신청에 관련된 거래 등이 법령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조세회피 또는 탈루 목적의 신청에 해당되는 경우 등

4 신청방법

- 사업자가 정형화된 신청서에 실명을 기재하여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한정하여 위임 가능
- 신청시 사실관계 확인 및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래 거래인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이어야 함

5 신청기한

- 신청은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하여야 함
- 다만,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기한(즉,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간 개시일의 전일(즉, 당해 과세연도의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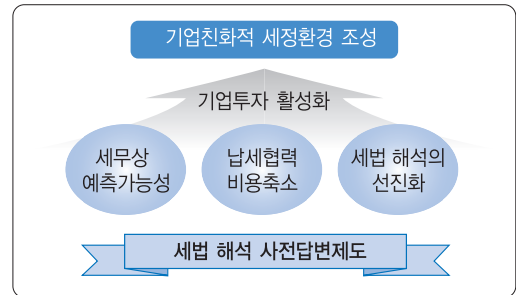
6 답변의 신뢰보호

- 납세자가 답변의 내용을 정당하게 신뢰하고 전제 사실대로 특정한 거래 등을 이행한 경우 과세관청(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당해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을 할 때에 답변내용을 따르도록 하여 사전답변을 받은 납세자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함

7 대외공개

- 답변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
- 다만, 공개 연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
- 공개시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사업상의 비밀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함

『세법 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기대효과



- 기업활동에 세무상 예측가능성 제고
- 명확한 세법 해석으로 기업활동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법 해석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함
-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 축소
- 가정의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 등 질의의 남용 억제 및 불복청구나 조세소송 감소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및 부실과세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함



재정통계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2005~)
-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1995~2005)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현황(2005~)

(단위: 명, 백만원)

연도	2005		2006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총수입금액	-	-	2,736,478	527,546,785
필요경비(-)	-	-	2,427,215	464,722,232
배당소득가산액(+)	-	-	19,943	532,223
이월결손금(-)	-	-	38,065	649,294
결손소득(+)	68,586	1,785,507	71,784	2,293,667
과세소득(=)	2,210,911	54,103,314	2,664,694	65,001,149
소득공제(-)	-	13,239,909	-	15,931,497
공제부족액(+)	-	875,342	-	1,109,378
실제소득공제	-	12,364,567	-	14,822,119
과세표준(=)	1,948,395	41,738,747	2,335,106	50,179,030
산출세액	1,948,395	8,634,924	2,335,106	10,463,106
세액공제(-)	-	857,000	-	859,695
감면세액(-)	-	340,733	-	371,058
결정세액(=)	1,929,663	7,437,191	2,307,828	9,232,353
가산세(+)	-	72,390	-	86,620
추가납부세액(+)	392	552	423	769
총결정세액(=)	1,944,604	7,510,133	2,323,506	9,319,742
기납부세액(-)	-	4,703,053	-	5,566,828
중간예납	692,692	1,873,577	696,710	1,979,363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454	13,971	566	22,452
토지등매매차익예정고지	20	913	17	425
수시부과세액	837	3,393	801	6,819
원천징수세액	648,321	2,811,199	799,414	3,557,769
환급할세액(+)	485,934	374,500	537,878	401,569
차가감 납부할세액(=)	1,458,670	3,181,580	1,785,628	4,154,483
분납할 세액(-)	32,490	657,784	42,929	914,399
무납·과소 납부세액(-)	199,411	300,600	223,738	364,236
자진납부한 세액	1,259,259	2,223,196	1,561,890	2,875,848

주: 2005년 이후 「국세통계연보」의 통계표시 형식이 변경됨에 따라 통계수치의 불일치로 확정신고 현황을 위와 같이 집계함. 이전자료는 '1-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현황(1995~2005)'을 참조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1-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1995~2005)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신고인원	인원구성비	결정세액	세부담구성비
1995	합계	1,334,947	100.0	3,335,888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395,282	29.6	2,491,827	74.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15,866	23.7	2,370,223	71.1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25,449	1.9	64,999	1.9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53,967	4.0	56,605	1.7
	추계신고	939,665	70.4	844,061	25.3
1996	합계	1,225,740	100.0	3,395,547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460,568	37.6	2,559,917	75.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52,983	28.8	2,396,224	70.6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38,310	3.1	90,657	2.7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69,275	5.7	73,036	2.1
	추계신고	765,172	62.4	835,630	24.6
1997	합계	1,274,659	100.0	3,689,842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504,933	39.6	2,771,130	75.1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61,544	28.4	2,579,531	69.9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44,856	3.5	96,985	2.6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98,533	7.7	94,614	2.6
	추계신고	769,726	60.4	918,712	24.9
1998	합계	1,212,995	100.0	2,858,254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495,045	40.8	2,166,580	75.8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32,179	27.4	1,990,622	69.6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53,342	4.4	85,239	3.0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	109,524	9.0	90,719	3.2
	추계신고	717,950	59.2	691,674	24.2
1999	합계	1,342,153	100.0	3,557,819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572,904	42.7	2,516,715	70.7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41,092	25.4	2,260,596	63.5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56,678	4.2	99,473	2.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175,134	13.1	156,646	4.4
	추계신고	748,762	55.8	797,595	22.4
	비사업자	20,487	1.5	243,509	6.8
2000	합계	1,616,244	100.0	4,803,125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679,536	42.0	3,238,624	67.4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369,258	22.8	2,856,232	59.4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55,295	3.4	119,977	2.5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254,983	15.8	262,415	5.5
	추계신고	856,124	53.0	998,457	20.8
	비사업자	80,584	5.0	566,044	11.8

1-1. 종합소득세 신고유형별 현황(1995~2005) <계속>

(단위: 명, 백만원, %)

연도		신고인원	인원구성비	결정세액	세부담구성비
2001	합계	1,782,369	100.0	5,537,259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790,224	44.3	3,908,692	70.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409,631	23.0	3,424,775	61.8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63,592	3.6	144,647	2.6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317,001	17.8	339,270	6.1
	추계신고	950,665	53.3	1,066,551	19.3
	비사업자	41,480	2.3	562,016	10.1
2002	합계	2,010,363	100.0	5,745,486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918,803	45.7	4,024,494	70.0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462,719	23	3,535,608	61.5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81,652	4.1	156,246	2.7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374,432	18.6	332,640	5.8
	추계신고	1,023,137	50.9	1,039,498	18.1
	비사업자	68,423	3.4	681,494	11.9
2003	합계	2,114,527	100.0	6,288,663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1,018,068	48.1	4,389,805	69.8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514,187	24.3	3,914,421	62.3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84,328	4.0	152,209	2.4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419,553	19.8	323,175	5.1
	추계신고	1,012,943	47.9	1,076,701	17.1
	비사업자	83,516	4.0	822,157	13.1
2004	합계	2,235,905	100.0	6,943,835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1,143,900	51.2	4,833,127	69.6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542,249	24.3	4,292,873	61.8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77,714	3.5	146,419	2.1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523,937	23.4	393,835	5.7
	추계신고	989,294	44.2	1,101,128	15.9
	비사업자	102,711	4.6	1,009,580	14.5
2005	합계	2,279,497	100.0	7,437,191	100.0
	장부, 증빙에 의한 신고	1,230,024	54.0	5,152,292	69.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583,163	25.6	4,597,246	61.8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80,784	3.5	148,285	2.0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	566,077	24.8	406,761	5.5
	추계신고	965,662	42.4	1,213,156	16.3
	비사업자	83,811	3.7	1,071,743	14.4

주: 2005년 이후 『국세통계연보』의 통계표시 형식의 변경으로 더 이상 이 유형으로 통계를 제공하기 어려움.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세액공제합계	배당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사업소득세액 공제 ²⁾	근로소득세액 공제 ³⁾	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공제	국외근로 소득세액공제
1983	21,004	8,106	4,534	4,399	1,369	921	196	450
1984	24,278	6,843	7,612	4,880	1,155	1,139	581	735
1985	31,675	8,146	11,989	5,440	1,010	1,079	589	718
1986	39,875	6,608	16,115	5,609	1,070	1,262	587	725
1987	43,728	7,809	18,347	6,970	1,281	1,608	869	849
1988	50,001	10,407	21,464	7,491	1,715	2,062	871	752
1989	58,270	17,803	28,275	-	-	2,449	1,136	790
1990	105,074	21,678	39,566	-	19,660	3,451	1,705	1,081
1991	166,981	62,456	47,153	-	16,335	2,121	1,978	1,174
1992	197,298	84,968	54,320	-	20,709	1,711	3,233	1,781
1993	251,275	86,595	72,511	-	42,646	3,757	4,702	3,775
1994	298,038	128,443	80,212	-	43,121	3,171	4,341	3,312
1995 ¹⁾	205,131	131,295	-	-	39,055	589	2,995	2,752
1996 ¹⁾	231,247	166,142	-	-	41,004	-	1,893	-
1997	252,827	145,231	-	-	55,806	-	3,529	-
1998	260,591	161,633	-	-	53,930	-	4,643	-
1999	440,177	278,396	27,094	-	52,633	-	5,004	-
2000	531,537	286,015	38,353	-	96,009	-	7,552	-
2001	591,724	332,351	44,538	-	73,958	-	11,440	-
2002	674,202	405,041	44,414	-	58,715	-	9,375	-
2003	686,905	475,220	37,209	-	74,621	-	12,164	-
2004	838,684	515,531	40,264	-	92,320	-	15,328	-
2005	895,598	575,758	38,306	-	93,034	-	18,404	-
2006	875,411	514,672	44,048	-	118,361	-	34,237	-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세액공제 현황 <계속>

(단위: 백만원)

재해손실세액 공제	매매차익세액 공제	납세조합징수 공제	임시투자세액 공제	수입금액증가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기타공제
189	-	-	-	-	-	840	-
623	-	-	-	-	-	710	-
310	-	-	-	-	-	2,394	-
304	-	-	-	-	-	7,595	-
648	-	-	-	-	-	5,347	-
288	-	-	-	-	-	4,951	-
515	-	-	-	-	-	7,292	10
414	-	-	-	-	-	17,451	68
697	-	-	-	-	-	34,216	851
403	-	-	-	-	-	28,341	1,832
372	-	-	-	-	-	33,670	3,247
498	-	-	-	-	-	29,158	5,782
606	-	-	-	-	-	22,653	5,186
431	-	-	-	-	-	16,228	5,549
321	-	-	-	-	-	42,294	5,646
432	-	-	-	-	-	33,536	6,417
456	-	-	-	-	-	65,368	11,226
657	-	-	-	-	-	84,529	18,422
1,035	-	-	-	-	-	123,720	4,682
914	-	-	-	-	-	151,941	3,802
840	-	-	-	-	-	78,434	8,417
1,340	-	-	-	-	-	145,368	28,733
755	-	-	-	-	-	157,729	11,612
642	1,443	17,664	70,860	36,924	13,925	-	22,635

주: 1) 소득세신고 납세제 시행으로 기장세액공제 삭제
 2) 1989년에 폐지됨
 3) 1989년에 폐지되었다가 1990년에 재신설됨
 4)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국외근로소득공제 세법개정으로 삭제
 5)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2006년부터 모두 표시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 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합계	4,108,710	2,344,710	4,807,591	2,720,604	6,725,900	5,924,382	6,970,576	6,222,429	7,059,938	6,201,706	7,973,048	7,012,155
인적공제계	4,025,946	2,296,543	4,673,780	2,634,780	4,962,113	4,752,775	5,350,637	5,117,064	5,250,580	4,981,476	5,767,187	5,426,625
기초공제	1,266,489	911,872	1,356,606	976,756	-	-	-	-	-	-	-	-
배우자공제	967,633	522,522	1,054,947	569,671	-	-	-	-	-	-	-	-
부양가족공제	1,529,338	734,082	1,942,575	932,436	-	-	-	-	-	-	-	-
장애자공제	17,398	9,395	22,081	11,924	-	-	-	-	-	-	-	-
경로우대공제	227,917	109,400	278,257	133,563	-	-	-	-	-	-	-	-
부녀자세대주공제	17,171	9,272	19,314	10,430	-	-	-	-	-	-	-	-
기본공제	-	-	-	-	4,532,563	4,532,563	4,868,784	4,868,784	4,696,609	4,696,613	5,067,908	5,067,913
추가공제	-	-	-	-	394,582	197,291	437,290	218,645	508,686	254,345	651,292	325,646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	-	-	34,968	22,921	44,563	29,635	45,285	30,518	47,987	33,066
기부금특별공제	25,345	21,105	32,478	27,798	-	-	-	-	-	-	-	-
특별공제	-	-	-	-	180,623	221,073	210,914	259,623	227,183	274,585	232,097	326,225
표준공제	-	-	-	-	1,449,592	869,755	1,291,058	774,624	1,454,288	872,560	1,609,968	965,996
연금보험료공제	-	-	-	-	-	-	-	-	-	-	-	-
퇴직연금소득공제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	57,419	27,062	101,333	58,026	133,572	80,779	117,967	71,118	127,887	73,085	363,796	293,309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소득공제 현황 <계속>

(단위: 명,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0,240,923	8,969,168	10,373,693	9,420,062	11,217,240	10,715,003	12,605,515	12,579,228	13,871,384	14,444,696	-	13,239,909	-	15,931,497
7,162,284	6,706,644	7,539,627	7,012,397	8,070,376	7,797,099	8,138,760	7,842,905	8,962,006	8,852,361	-	7,465,021	-	8,660,3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20,536	6,220,540	6,448,860	6,448,860	6,806,545	6,806,339	6,744,919	6,744,911	6,965,695	6,965,695	5,722,612	5,722,591	6,551,559	6,551,559
871,153	435,572	1,012,354	506,164	1,160,239	911,128	1,268,974	1,002,405	1,843,600	1,768,879	1,578,449	1,626,942	-	1,950,551
70,595	50,532	78,413	57,373	103,592	79,632	124,867	95,589	152,711	117,787	148,342	115,488	200,422	158,257
-	-	-	-	-	-	-	-	-	-	-	-	-	-
505,015	753,532	436,898	738,001	540,709	1,040,960	638,839	1,330,057	775,516	1,681,859	-	1,711,455	-	2,280,291
1,926,393	1,155,866	2,135,288	1,281,166	2,330,131	1,398,055	2,383,719	1,430,214	2,543,238	1,525,944	2,275,094	1,488,725	2,729,729	1,797,385
-	-	-	-	-	-	1,147,531	1,417,021	1,258,037	1,721,185	1,310,908	1,925,668	1,519,955	2,265,232
-	-	-	-	-	-	-	-	-	-	1,334	1,563	1,507	2,006
647,231	353,126	261,880	388,498	276,024	478,889	296,666	559,031	332,587	663,347	299,351	647,477	-	926,216

주: '05년, '06년의 소득공제합계액과 인적공제계 등의 인원은 『국세통계연보』에서 공표하지 않았고 단순합산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추가공제 등의 인원이 공표되지 않아서 실질적 의미가 없음을 따라 미표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4.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5	합계		1,337,787	100.0	20,131,635	100.0	3,773,497	100.0
	4백만원 이하	5	548,430	41.0	1,854,607	9.2	49,223	1.3
	4백만원 초과	9	266,338	19.9	2,025,833	10.1	93,044	2.5
	8백만원 초과	18	234,547	17.5	3,129,716	15.5	274,045	7.3
	1천6백만원 초과	27	166,494	12.4	4,094,312	20.3	627,392	16.6
	3천2백만원 초과	36	83,936	6.3	3,918,339	19.5	874,506	23.2
	6천4백만원 초과	45	22,108	1.7	1,776,512	8.8	537,761	14.3
	1억원 초과	45	15,154	1.1	2,536,339	12.6	967,917	25.7
	5억원 초과	45	749	0.1	793,125	3.9	348,287	9.2
	부동산매매업	-	31	-	2,852	-	1,322	-
1996	합계		1,216,106	100.0	24,059,588	100.0	3,981,860	100.0
	1천만원 이하	10	786,184	64.6	5,636,204	23.4	285,881	7.2
	1천만원 초과	20	326,278	26.9	7,949,872	33	977,632	24.6
	4천만원 초과	30	69,125	5.7	4,109,688	17.1	771,497	19.4
	8천만원 초과	40	11,301	0.9	1,060,546	4.4	240,041	6.0
	1억원 초과	40	20,013	1.6	3,104,705	12.9	884,385	22.2
	3억원 초과	40	1,829	0.2	686,487	2.9	241,744	6.0
	5억원 초과	40	1,376	0.1	1,512,086	6.3	580,680	14.6
1997	합계		1,254,019	100.0	26,264,766	100.0	4,414,253	100.0
	1천만원 이하	10	800,669	63.9	5,797,218	22.1	258,277	6.5
	1천만원 초과	20	335,126	26.7	8,160,898	31.1	999,831	22.7
	4천만원 초과	30	76,568	6.1	4,586,469	17.4	837,896	19.0
	8천만원 초과	40	13,415	1.1	1,259,220	4.8	272,883	6.2
	1억원 초과	40	24,312	1.9	3,817,571	14.5	1,052,850	23.8
	3억원 초과	40	2,244	0.2	858,338	3.3	293,000	6.6
	5억원 초과	40	1,685	0.1	1,785,052	6.8	672,516	15.2
1998	합계		1,166,323	100.0	21,323,909	100.0	3,352,983	100.0
	1천만원 이하	10	772,297	66.4	5,590,273	26.2	273,945	8.2
	1천만원 초과	20	303,069	26	7,353,237	34.5	894,064	26.7
	4천만원 초과	30	56,616	4.8	3,361,996	15.8	642,828	19.2
	8천만원 초과	40	8,545	0.7	800,447	3.8	192,617	5.7
	1억원 초과	40	13,329	1.1	2,025,857	9.5	611,298	18.2
	3억원 초과	40	834	0.1	314,609	1.5	113,454	3.4
	5억원 초과	40	408	0.0	396,560	1.8	152,956	4.5
		금융소득신고자	-	11,225	0.9	1,480,930	6.9	471,821

4.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9	합계		1,266,548	100.0	24,557,098	100.0	4,101,421	100.0
	1천만원 이하	10	835,608	66.0	6,079,351	24.8	297,129	7.2
	1천만원 초과	20	239,742	26.0	8,009,776	32.6	971,954	23.7
	4천만원 초과	30	67,739	5.4	4,057,341	16.5	777,347	19.0
	8천만원 초과	40	11,091	0.9	1,044,753	4.3	251,047	6.1
	1억원 초과	40	19,281	1.5	3,032,626	12.3	921,092	22.5
	3억원 초과	40	1,728	0.1	662,650	2.7	237,925	5.8
	5억원 초과	40	1,359	0.1	1,670,601	6.8	644,927	15.7
2000	합계		1,528,649	100.0	32,018,932	100.0	5,444,841	100.0
	1천만원 이하	10	969,847	63.5	7,068,340	22.1	341,609	6.3
	1천만원 초과	20	426,796	27.9	10,898,466	34.0	1,301,870	23.9
	4천만원 초과	30	87,541	5.7	5,293,224	16.5	999,302	18.4
	8천만원 초과	40	14,373	0.9	1,363,151	4.3	324,983	6.0
	1억원 초과	40	25,886	1.7	4,102,266	12.8	1,238,089	22.7
	3억원 초과	40	2,296	0.2	887,861	2.8	316,425	5.8
	5억원 초과	40	1,910	0.1	2,405,624	7.5	922,563	16.9
2001	합계		1,669,182	100.0	36,209,526	100.0	6,402,319	100.0
	1천만원 이하	10	1,087,227	65.1	7,933,868	21.9	383,433	6.0
	1천만원 초과	20	426,836	25.6	10,710,499	29.6	1,268,015	19.8
	4천만원 초과	30	97,088	5.8	5,982,225	16.5	1,121,381	17.5
	8천만원 초과	40	18,331	1.1	1,753,940	4.8	408,384	6.4
	1억원 초과	40	34,131	2.0	5,449,915	15.1	1,600,211	25.0
	3억원 초과	40	3,058	0.2	1,183,339	3.3	411,162	6.4
	5억원 초과	40	2,511	0.2	3,195,740	8.8	1,209,733	18.9
2002	합계		1,841,553	100.0	41,836,681	100.0	6,694,286	100.0
	1천만원 이하	9	1,195,334	64.9	9,103,319	21.8	388,987	5.8
	1천만원 초과	18	469,998	25.5	12,022,886	28.7	1,247,126	18.6
	4천만원 초과	27	109,530	5.9	6,881,380	16.4	1,141,945	17.1
	8천만원 초과	36	21,074	1.1	2,048,798	4.9	424,201	6.3
	1억원 초과	36	38,792	2.1	6,217,819	14.9	1,631,329	24.4
	3억원 초과	36	3,744	0.2	1,466,120	3.5	460,160	6.9
	5억원 초과	36	3,081	0.2	4,096,359	9.8	1,400,538	20.9
	금융소득신고자 ¹⁾	-	(35,331)	-	(3,642,331)	-	-	-
2003	합계		1,904,672	100.0	44,789,086	100.0	7,253,745	100.0
	1천만원 이하	9	1,236,659	64.9	9,398,762	21	391,302	5.4
	1천만원 초과	18	481,451	25.3	12,623,400	28.2	1,289,221	17.8
	4천만원 초과	27	114,801	6.0	7,321,969	16.4	1,194,633	16.5
	8천만원 초과	36	22,079	1.2	2,170,557	4.8	443,404	6.1
	1억원 초과	36	41,812	2.2	6,809,146	15.2	1,774,500	24.4
	3억원 초과	36	4,243	0.2	1,666,754	3.7	520,996	7.2
	5억원 초과	36	3,627	0.2	4,798,498	10.7	1,639,689	22.6

4.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4	합계		1,942,719	100.0	48,434,339	100.0	7,925,937	100.0
	5백만원 미만	9	907,334	46.7	5,600,087	11.6	168,854	2.1
	5백만원 이상	9	349,369	18.0	4,246,928	8.8	226,741	2.9
	1천만원 이상	18	290,505	15.0	5,931,926	12.2	477,905	6.0
	2천만원 이상	18	126,395	6.5	4,096,168	8.5	443,120	5.6
	3천만원 이상	18	73,157	3.8	3,173,756	6.6	390,394	4.9
	4천만원 이상	27	47,257	2.4	2,529,759	5.2	355,519	4.5
	5천만원 이상	27	31,394	1.6	2,007,161	4.1	319,184	4.0
	6천만원 이상	27	22,534	1.2	1,677,234	3.5	287,888	3.6
	7천만원 이상	27	17,209	0.9	1,459,337	3.0	264,958	3.3
	8천만원 이상	36	23,063	1.2	2,293,963	4.7	458,198	5.8
	1억원 이상	36	14,116	0.7	1,694,106	3.5	376,664	4.8
	1.2억원 이상	36	23,403	1.2	3,794,928	7.8	959,065	12.1
	2억원 이상	36	7,968	0.4	2,018,656	4.2	574,138	7.2
	3억원 이상	36	4,681	0.2	1,847,598	3.8	561,479	7.1
5억원 이상	36	4,334	0.2	6,062,732	12.5	2,061,830	26	
2005	합계		1,948,395	100.0	53,230,006	100.0	8,634,924	100.0
	5백만원 미만	9	848,992	43.6	5,406,569	10.2	148,090	1.7
	5백만원 이상	9	360,740	18.5	4,407,292	8.3	208,559	2.4
	1천만원 이상	18	306,503	15.7	6,267,816	11.8	460,888	5.3
	2천만원 이상	18	133,695	6.9	4,346,637	8.2	436,207	5.1
	3천만원 이상	18	79,059	4.1	3,453,865	6.5	395,084	4.6
	4천만원 이상	27	51,574	2.6	2,787,126	5.2	365,898	4.2
	5천만원 이상	27	34,573	1.8	2,227,154	4.2	332,816	3.9
	6천만원 이상	27	24,917	1.3	1,864,579	3.5	303,102	3.5
	7천만원 이상	27	18,786	1.0	1,599,137	3.0	275,635	3.2
	8천만원 이상	36	14,426	0.7	1,376,237	2.6	253,579	2.9
	9천만원 이상	36	11,339	0.6	1,199,253	2.3	237,403	2.7
	1억원 이상	36	16,061	0.8	1,936,747	3.6	413,636	4.8
	1.2억원 이상	36	10,670	0.5	1,502,607	2.8	345,859	4.0
	1.4억원 이상	36	7,431	0.4	1,197,674	2.2	291,130	3.4
1.6억원 이상	36	5,196	0.3	944,689	1.8	239,478	2.8	
1.8억원 이상	36	3,916	0.2	790,867	1.5	206,718	2.4	
2억원 이상	36	9,565	0.5	2,430,823	4.6	671,089	7.8	
3억원 이상	36	5,768	0.3	2,271,980	4.3	670,539	7.8	
5억원 이상	36	3,262	0.2	2,277,624	4.3	715,971	8.3	
10억원 이상	36	1,922	0.1	4,941,330	9.3	1,663,243	19.3	

4. 과세표준 계급별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계속>

(단위: %, 명, 백만원)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6	합계		2,335,106	100.0	63,957,786	100.0	10,463,106	100.0
	1천만원 이하	9	1,464,648	62.7	11,473,520	17.9	418,086	4.0
	1.2천만원 이하	18	107,800	4.6	1,796,619	2.8	103,806	1.0
	3천만원 이하	18	405,599	17.4	10,653,246	16.7	941,232	9.0
	4천만원 이하	18	92,171	3.9	4,065,075	6.4	461,646	4.4
	4.6천만원 이하	27	39,596	1.7	2,081,331	3.3	262,731	2.5
	6천만원 이하	27	62,610	2.7	3,912,437	6.1	564,412	5.4
	7천만원 이하	27	29,440	1.3	2,212,416	3.5	355,566	3.4
	8천만원 이하	36	22,348	1.0	1,910,818	3.0	325,567	3.1
	8.8천만원 이하	36	14,041	0.6	1,332,380	2.1	240,683	2.3
	1억원 이하	36	16,709	0.7	1,753,305	2.7	340,880	3.3
	2억원 이하	36	53,934	2.3	8,004,825	12.5	1,866,959	17.8
	3억원 이하	36	12,536	0.5	3,192,784	5.0	878,208	8.4
	5억원 이하	36	7,272	0.3	2,857,305	4.5	841,864	8.0
	10억원 이하	36	4,092	0.2	2,863,779	4.5	897,065	8.6
10억원 초과	36	2,310	0.1	5,847,946	9.1	1,964,401	18.8	

주: 1. 과세표준이 없는 자는 제외하고 작성

2. '금융소득신고자'는 2003년도 『국세통계연보』부터 추가된 부분임

3. 연도별 과세표준계급의 구간이 세율변경(2007년 귀속분부터) 및 통계연보 내의 체계의 변경으로 통계연보에 수록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여, 연도간 구간의 차이가 존재

4. 통계연보에서 세율 정보를 2005년 이후에는 공표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연도에서도 세율과 계급 간 약간의 불일치(4천만원 이하와 4천만원 초과 등)가 발생함

1) 금융소득신고자의 () 의 인원 및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 중 금융소득이 있는 자의 인원 및 소득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 편집자 주 -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부동산 투기 잡는 데 세금 쓰면 곤란”

세계정책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장으로 지난 3일 임명된 원윤희 원장(51).



원윤희 | 한국조세연구원장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원 원장은 부담을 느끼면서도 오랜 세월 세계 연구에 몸담은 학자답게 세계 개편 방향에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무엇보다 세금을 부동산투기 등 특정한 목적에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 원장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세제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도구로 사용됐다”며 “이 과정에서 보유세가 3배 늘어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세제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오히려 세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다.

그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면 그 영향은 일정 시간이 지나야 나타난다”며 “제도를 만들 당시와 제도가 영향을 발휘하는 시점에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이로 인해 세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대적인 감세안에 대해 그는 “감세는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으로 감세는 기업에는 투자 여건을 마련해주고 국민에게는 소비 여력을 만들어 주는 구실을 한다는 것이

다. 다만 그는 “감세만 한다고 해서 바로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 투자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이어져야 비로소 감세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 원장은 조세제도는 사회 변화상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 그는 “조세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런 측면에서 조세제도는 살아 있는 생물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지론”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원 원장은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을 지낸 바 있는 세계전문가로 기획재정부 세계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 분과위원장, 한국재정학회회장 등을 지냈다.

〈매일경제 2008년 09월 10일자〉

“무리한 누진과세 성장 해쳐”

한, 감세정책 토론회 개최

무리한 누진과세가 분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성장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형수 기획조정실장은 10일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가 주최한 <감세, 민생살리기인가 부자편들기인가?>토론회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과세 베이

스가 협소한 경우에는 고한계세율의 자원배분 왜곡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개방된 자본소국의 경우 자본과세는 노동이나 토지에 전가될 수 있다”며 “이 경우 과세 효율과 형평을 함께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박 실장은 또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는 각종 조세지원을 감안해도 기업이 부담하는 노동비용과 근로자가 받는 세후 임금의 격차를 확대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결국 조세는 실물자본에 대한 투자 이외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소득세율 인하와 소득세 공제확대, 유가환급은 민간의 가처분소득을 증대시켜 민간소비를 늘릴 것”이라며 “정부의 2008년 세계개편안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연 평균 GDP가 0.09%포인트 올라간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면 투자는 6조2천억원 늘어나고 11만4천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주대 경제학과 현진권 교수도 “개방화로 인해 자본과 노동의 국제간 이동에 제약이 없게 됐다”며 “조세정책을 통해 형평성을 달성하려는 정책의도를 실현할 수 없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법인세 감세가 투자에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사회를 양극화시키는 전략”이라며 “객관적인 결과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맹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강석훈 교수는 “감세는 개인과 기업의 가용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와 투자를 늘린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다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질서 확립, 투자환경 개선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2008년 09월 10일자〉

26兆 감세로 경기부양 ... 뚜렷해진 MB색깔

‘2008 세계개편안’은 ‘저세율’과 ‘합리적 과세’를 모토로 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을 낮추고, 이념적 편향에 따라 왜곡된 조세체계는 합리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모든 세목에 걸쳐 관철됐다. 한나라당과의 당정협에서 법인세율 인하 시기가 일부 연기됐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명박 정부가 자기 색깔을 분명히 드러낸 개편안이라는 평가다.

◆ 표류하던 실용정부, 정면승부로 선회

“하고 싶은 건 다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관을 뚜렷하게 담았다. 주요 세목을, 그것도 뼈대 부분을 남김없이 건드렸다. 비과세 감면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땀질’식 처방만 해온 여느 세계개편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소득세율을 전격 인하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도 과감하게 수정했다. 종부세는 향후 있을 추가 발표에서 전반적인 조정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해놓았다. 특히 ‘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난이 나올 게 뻔한데도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했고, 상속·증여세율도 인하하는 강공책을 썼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두고 있다”며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 흐름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 경제를 위해 지금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하고 세계개편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개편안뿐 아니라 조만간 내놓을 내년도 예산안에도 실용정부의 경제철학을 뚜렷하게 담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촛불시위 이후 여론의 눈치를 많이 보던 이명박 정부가 자기 정책으로 정면승부를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감세규모와 경제효과

총 감세 규모는 26조4010억원(고유가 대책 포함)에 달

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9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소득세 5조8000억원, 상속·증여세 9000억원, 관세 8000억원, 개별소비세 6000억원, 기타 3조4000억원 등의 순이다. 2009년 한 해 기준 감세액은 14조2350억원으로 추정된다.

2008년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효과

(단위: 조원)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계
감세효과	△1.9	△6.2	△9.8	△3.3	△0.1	△21.3

※일시적 감세효과 △ 5조 1,010억원(고유가대책, '08. 7~'09. 6월)은 별도

세목별 감세효과

(단위: 조원)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개별소비세	관세	기타	계
△5.8	△9.8	△0.9	△0.6	△0.8	△3.4	△21.3

감세가 예정대로 실행되면 조세부담률은 작년 말 22.7%에서 2009년 22.3%로 0.4%포인트 낮아진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미국(20.6%) 일본(17.3%)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포르(13.0%) 등 주변 경쟁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세제개편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된 연구 결과가 없지만 정부 분석으로는 성장률이 0.7~0.8%포인트 상승하고 소비는 0.5%포인트, 국내 투자는 7%포인트 늘어난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적 효과는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만큼 판단하기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이 투자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데 시차가 있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 재정건전성에 문제 없나

2009년 세수감소 규모 14조2350억원을 기준으로 놓

고 볼 때 일시적인 감소액 3조5840억원을 뺀 항구적 감소액은 10조6510억원에 달한다. 이 정도 감소액은 세수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다.

과세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 증가 등에 따른 항구적 세수증가 규모는 매년 8조~9조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5조3000억원 더 걸렸고, 올해 세수도 10조원 이상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세출을 적절히 통제한다면 크게 적자가 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이어서 각종 공약사업을 집행해야 할 텐데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가 관심”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실장은 “감세가 시장활성화와 소비·투자증가, 경제성장, 세수증대로 이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세수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되지 않는다”며 “감세가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경제 2008년 09월 10일자〉

2008 세계개편안

향후 5년간 세금 26조원 감면...“바꿀건 다 바꿨다”

상속세 12년만에 완화 등 모든 세목 조정
침체된 경제 활성화 위해 대대적 감면 시도

정부가 소득·상속·법인세 세율을 낮추고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올해 세계개편안을 내놓았다.

양도세, 법인세, 상속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친 조정은 감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세계개편에 따른 5년간 감세 규모가 26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감세 폭탄’이라 불릴 정도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계개편은 특정 계층에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며 ‘부자를 위한 개편’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 “바꿀 건 다 바꿨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재도약 세계’를 표방한 이번 개편안은 조정 범위가 광범위하고 크다.

부동산세제의 근간을 이루며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양도세는 물론 법인세,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등 거의 모든 세목에 걸쳐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특히 상속세 손질은 1999년 세율이 강화된 이후 9년 만이고, 상속세 완화는 1996년 이후 12년 만이다.

개편안에 따른 세수 효과만 봐도 감세를 위한 개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000억원, 내년 6조2000억원, 2010년 9조원 등 2012년까지 21조3000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정부 방안이 확정된 유류세 환급 등 일시적 감세(5조1000억원)까지 합하면 5년간 무려 2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규모는 소득세 과표기간 조정을 골자로 한 지난해 세계개편에 따른 향후 6년간 감세규모 추정치 3조5000억원의 7배에 이른다.

◆ 본격화하는 MB노믹스의 감세정책

정부가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세계개편에는 감세를 통해 경제 활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이 진정한 복지”라며 “신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켜야 일자리 창출을 담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감세를 통해 우리 경제의 틀을 ‘투자 및 소비 확대→경제성장→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2%포인트 인하하면 민간의 가치분소득은 연간 3조6000억원이 늘고, 법인세율이 5%포인트 내리면 0.6%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 세계개편은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세 부담을 꾸준히 늘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조세정책 패러다임을 뒤바꾸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정부는 감세에 따른 부족 재원은 과표 양성화에 따른 세입여력 증가를 활용하는 한편 예산절감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강부자 세계개편’ 비판도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세계개편 효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된다면 ‘강부자(강남의 땅부자) 세계개편’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상속세 인하 효과가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서 22년째 PB로 일해온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 재산 형성 과정이 투명하지 못한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하면 부자를 위한 개편, 부자 프렌들리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사망자 30만명 중 상속세 납세대상이 2600여명, 0.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번 상속세제 개편은 부유층을 위한 개편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양도세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 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바뀌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729만가구 중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의 주택 18만가구(2.5%)가 혜택을 보게 된다.

〈연합뉴스 2008년 09월 10일자〉

평균 은퇴연령 점점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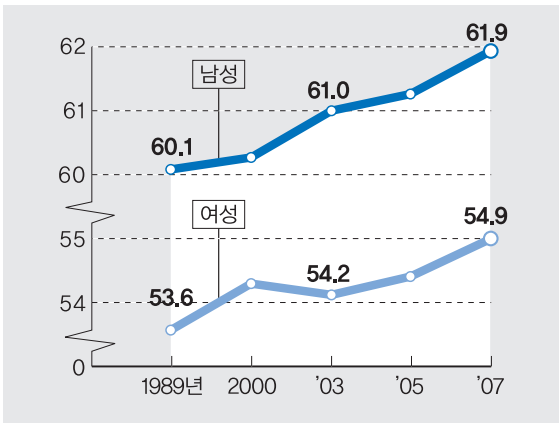
男 61.9 · 女 54.9세...18년새 1.8 · 1.3세 늘어

“나이 먹고 병 들어도 쉬지 못해...”

한국인의 통계학상 평균 은퇴연령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를 먹고 몸이 힘들어도 노동시장에서 떠나지 못하고 생계 유지 등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셈이다.

평균 은퇴연령

(단위: 세)



자료: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재정포럼 8월호에서 한국인의 평균 은퇴연령을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평균 은퇴연령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

균 은퇴연령은 장기 추세선상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남성은 61.9세, 여성은 54.9세로 산출됐다. 이는 지난 1989년의 평균 은퇴연령이 남성은 60.1세, 여성은 53.6세였던 것을 감안할 때 18년만에 남성은 1.8세, 여성은 1.3세 정도 높아진 것이다.

전병힐 초청연구위원은 “주어지는 변수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장기 추세선상에서 1989~2007년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간이생명표를 이용해 평균 은퇴연령을 추정했다”며 “은퇴가 시작되는 최초연령을 40세로 보고, 70세에 이르면 노동시장에서 모두 떠난다는 조건에 사망요인을 대입했다”고 밝혔다.

평균 은퇴연령은 사회에서 개인이 은퇴하는 시점의 나이가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 변화에 따라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해주는 지표로 사용된다. 전 연구위원은 “연금개혁 전후의 평균 은퇴연령을 비교해 보면 연금개혁이 개인의 근로의욕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개략적 분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평균 은퇴연령이 높아진 이유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정규직 은퇴 이후에도 연금 혜택이 충분하지 못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구직단념자의 숫자도 최근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1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5%(1만6100명) 증가했다. 구직단념자 수는 지난해 2월에 전년 동월대비 3000명 증가에서 3월엔 1300명 감소로 줄어들었고, 이후 올해 4월까지 감소세를 지속했다. 하지만 5월 7500명, 6월 1만8300명, 7월 1만6100명 등 3개월 연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구직단념자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 중 지난 1년간 구직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의미한다.

〈문화일보 2008년 08월 21일자〉

기업 납세준비비용 줄인다

기업이 세금을 낼 때 실제 부과된 세금 외에 이를 산정, 납부하느라 들어간 눈에 안 보이는 세금, 즉 '납세협력비용'이 올해부터 실제로 측정된다.

국세청은 15일 조세연구원에 의뢰해 납세협력비용 측정모델을 개발 중이며 이를 토대로 연내 기업들의 실제 부담을 산정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세협력비용은 증빙의 수취·보관,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이외의 경제적·시간적·심리적 비용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세정당국이 세금을 징수할 때 드는 징세비용은 측정돼 왔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납부 세금 외에 얼마나 추가 부담을 지게 되는지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

다만 조세연구원이 356개 법인과 301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올 2월 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소득세의 납세협력비용이 법인은 납부세액의 3% 수준, 개인사업자는 6.8%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이미 납세협력비용의 측정이 이뤄지고 있는 유럽 몇몇 나라의 사례 등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어 기업들을 범주별로 나눠 실제 납세협력비용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모델 완성과 함께 첫 측정이 이뤄지면 이를 주기적으로 살펴 납세협력비용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 2008년 08월 15일자)

재정포럼

2008년 9월호 통권 제147호

-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발행인 /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 성명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집위원 / 김우철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원종학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병hil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 편집·제작 / 최병규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장)
최윤용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월간 재정포럼

2008년 9월 16일 발행 / 제13권 제9호(통권 제147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라 10107
발행처 / 한국조세연구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TEL : 02)2186-2130 · 3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 선 디자인 02)2269-2234
- 인쇄 / 고려문화사 02)2277-1509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시 두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 · 전화 · FAX · E-mail을 이용하셔서 받아보실 분의 주소 · 이름 · 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 (02)2186-2133
- FAX : (02)2186-2139
- E-mail : pub@kipf.re.kr
- 주소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죽말길 28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출판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 지로이용 : 본원 소정의 지로용지나 은행 비치 지로용지(지로번호 6923437)를 이용하십시오.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 가락중앙지점
· 계좌번호 : 441-05-000011
· 예금주 : 한국조세연구원